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03-10

수탁보고 2023-08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이재희·이정원·권미경·조미라·김자연·최은경·윤소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03-10

수탁보고 2023-08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연구책임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 은 경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윤 소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203-10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 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전 화 044-202-3398
팩 스 044-202-3966
인 쇄 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보건복지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Ⅰ. 서론 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2.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내용 4
3.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추진 방법 5
4. 본 사업의 추진체계 11

Ⅱ. 산후조리원 평가 유사 사례 분석 13

1. 의료기관 평가인증 15
2. 어린이집 평가 21
3. 유치원 평가 26
4. 소결 32

Ⅲ. 산후조리원 정책 최신 동향 35

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및 추이 37
2.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입법 동향 40
3.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및 관련 규정 51

Ⅳ.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59

1. 컨설팅 사업 준비 61
2. 컨설팅 사업 수행 64
3.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 75
4. 공공산후조리원 부모교육 자료 지원 102
5. 요약 및 시사점 106

Ⅴ. 2023년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사후 관리 109

1.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111
2. 만족도 조사 및 사후간담회 결과 119

3. 컨설팅 참여 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기공모 ····· 129
4. 요약 및 시사점 ····· 137

Ⅵ.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개선방안 ····· 141

1. 산후조리원 평가 ····· 143
2.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개선방안 ····· 146
3. 향후 산후조리원 정책 추진 사항 ····· 152

참고문헌 ····· 155

부록 ····· 161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 163
2.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기관용 신청서) ····· 260
3.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조사표(기관용) ····· 264
4. 산후조리원 자체평가지(기관용) ····· 268
5.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컨설턴트용) ····· 270
6.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 310
7. 산후조리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 329
8. 컨설팅 참여 기관 만족도 조사 ····· 332
9. 2022~2023년 평가기준집 비교 ····· 334

표 목차

〈표 Ⅰ-3-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간담회, 연구진 협의 개최 일정 및 내용 ····· 6
〈표 Ⅰ-3- 2〉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 8
〈표 Ⅰ-4- 1〉 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협력기관 및 협력내용 ····· 11
〈표 Ⅱ-1- 1〉 의료기관평가 인증 관련 법 ····· 15
〈표 Ⅱ-1- 2〉 의료기관평가인증 평가 기준 ····· 17
〈표 Ⅱ-1- 3〉 의료기관 평가등급 ····· 19
〈표 Ⅱ-1- 4〉 컨설팅 유형 ····· 21
〈표 Ⅱ-2- 1〉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평가 조항 ····· 21
〈표 Ⅱ-2- 2〉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 23
〈표 Ⅱ-2- 3〉 어린이집 평가등급 ····· 24
〈표 Ⅱ-2- 4〉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 24
〈표 Ⅱ-2- 5〉 어린이집 연도별 평가 현황 ····· 26
〈표 Ⅱ-3- 1〉 유치원 평가 추진의 법적 근거_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3항 ····· 27
〈표 Ⅱ-3- 2〉 유치원 평가 추진의 법적 근거_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 27
〈표 Ⅱ-3- 3〉 유치원 평가 추진 절차 ····· 28
〈표 Ⅱ-3- 4〉 2023 유치원 평가 지표 ····· 29
〈표 Ⅱ-3- 5〉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 예시 ····· 31
〈표 Ⅱ-3- 6〉 2023 유치원 평가 요약 ····· 32
〈표 Ⅲ-1- 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표 ····· 37
〈표 Ⅲ-1-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 ····· 38
〈표 Ⅲ-2- 1〉 산후조리원 관련 발의된 법안 내용(2022. 1. 1.~2023. 12. 19.) ····· 40
〈표 Ⅲ-2- 2〉 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관련 법안: 정일영 의원안(2022. 6. 29. 발의), 김영주 의원안(2022. 9. 14. 발의), 김영선 의원안(2023. 4. 3.) ····· 42
〈표 Ⅲ-2- 3〉 산후조리원 인력 관리 관련 법안(1): 백혜련 의원안(2022. 12. 29.), 강대식 의원안(2023. 4. 20.), 안병길 의원안(2023. 11. 15.) ····· 44
〈표 Ⅲ-2- 4〉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법안: 소병훈 의원안(2022. 12. 26.) ····· 46
〈표 Ⅲ-2- 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법안(1): 김학용 의원안(2022. 6. 30.), 전용기 의원안(2022. 7. 19.), 정점식 의원안(2022. 9. 30.), 소병훈 의원안(2022. 12. 26.) ····· 47
〈표 Ⅲ-2- 6〉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관련 법안(2): 최혜영 의원안(2023. 2. 20.), 김영선 의원안(2023. 4. 3.), 김원이 의원안(2023. 9. 4.), 김영배 의원안(2023. 9. 7.) ····· 48
〈표 Ⅲ-2- 7〉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 정보 관련 법안: 소병훈 의원안(2022. 12. 26.) ····· 50
〈표 Ⅲ-3- 1〉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피해구제 관련 약관 ····· 52

〈표 Ⅲ-3- 2〉 한국소비자원의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신청 규모 (2022~2023년) ····· 53
〈표 Ⅲ-3- 3〉 한국소비자원의 산후조리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례 (2건) ····· 56
〈표 Ⅳ-1- 1〉 컨설턴트 자격 기준 ····· 62
〈표 Ⅳ-1- 2〉 컨설턴트 교육 일정 및 참석자 수 ····· 63
〈표 Ⅳ-1- 3〉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 ····· 64
〈표 Ⅳ-2- 1〉 1~3차 컨설팅 사업 신청 및 취소 기관 수 ····· 64
〈표 Ⅳ-2- 2〉 1~3차 컨설팅 취소 사유 ····· 65
〈표 Ⅳ-2- 3〉 1~3차 컨설팅 완료 기관 수 ····· 65
〈표 Ⅳ-2- 4〉 1~3차 컨설팅 월별 진행 기관 수 ····· 65
〈표 Ⅳ-2- 5〉 1~3차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 66
〈표 Ⅳ-2- 6〉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 69
〈표 Ⅳ-2- 7〉 소그룹 컨설팅 사업 신청 및 취소 기관 수 ····· 72
〈표 Ⅳ-2- 8〉 소그룹 컨설팅 완료 기관 수 ····· 72
〈표 Ⅳ-2- 9〉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 73
〈표 Ⅳ-3- 1〉 1차, 3차 시범평가 점수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 ····· 79
〈표 Ⅳ-3- 2〉 1차, 3차 시범평가 결과 요약 ····· 80
〈표 Ⅳ-3- 3〉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 83
〈표 Ⅳ-3- 4〉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 87
〈표 Ⅳ-3- 5〉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 88
〈표 Ⅳ-3- 6〉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 90
〈표 Ⅳ-3- 7〉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 92
〈표 Ⅳ-3- 8〉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 93
〈표 Ⅳ-3- 9〉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고충사항 언급 키워드 ····· 95
〈표 Ⅳ-3-10〉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 99
〈표 Ⅳ-3-11〉 'Ⅱ. 시설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 99
〈표 Ⅳ-3-12〉 'Ⅲ. 운영 및 고객관리'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 100
〈표 Ⅳ-3-13〉 'Ⅳ. 감염예방관리'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 101
〈표 Ⅳ-3-14〉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 101
〈표 Ⅳ-3-15〉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 102
〈표 Ⅳ-4- 1〉 2023년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104
〈표 Ⅴ-1- 1〉 2023년 1~3차 컨설팅 전·후 차이 검증 결과 ····· 112
〈표 Ⅴ-1- 2〉 2019~2023년 1~3차 컨설팅 사전·사후 차이 검증 결과 ····· 115
〈표 Ⅴ-1- 3〉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 ····· 118
〈표 Ⅴ-1- 4〉 차수 별 평균 평가점수(가중치 적용) ····· 118
〈표 Ⅴ-1- 5〉 컨설팅 통합 평가 점수 등급별 분포 ····· 119
〈표 Ⅴ-2- 1〉 2019~2023년도 1~3차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 120
〈표 Ⅴ-2- 2〉 2023년도 1~3차 컨설팅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 ····· 121

〈표 Ⅴ-2- 3〉 적절한 컨설팅 주기와 컨설팅 횟수 ····· 122
〈표 Ⅴ-2- 4〉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 124
〈표 Ⅴ-2- 5〉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회차별) ····· 124
〈표 Ⅴ-2- 6〉 컨설팅 참여 기관 사후간담회 ····· 125
〈표 Ⅴ-2- 7〉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 127
〈표 Ⅴ-3- 1〉 2019년~2022년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 129
〈표 Ⅴ-3- 2〉 부모교육 강의용 PPT 주제 및 제목(영아부모) ····· 134
〈표 Ⅴ-3- 3〉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 ····· 135
〈표 Ⅵ-1- 1〉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개정안 ····· 143
〈표 Ⅵ-1- 2〉 산후조리원 본 평가제도 안(등급제) ····· 144
〈표 Ⅵ-1- 3〉 산후조리원 인증제(안) ····· 145
〈표 Ⅵ-2- 1〉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 146
〈표 Ⅵ-2- 2〉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 147
〈표 Ⅵ-2- 3〉 'Ⅲ. 운영 및 고객관리'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 148
〈표 Ⅵ-2- 4〉 'Ⅳ. 감염예방관리'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 149
〈표 Ⅵ-2- 5〉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 150
〈표 Ⅵ-2- 6〉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 151
〈표 Ⅵ-3- 1〉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7조(의사활동) 내용 ····· 153

그림 목차

[그림 Ⅰ-3- 1] 2023년도 1~3차 컨설팅 운영 절차 ····· 9
[그림 Ⅰ-3- 2]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 운영 절차 ····· 10
[그림 Ⅱ-1- 1] 의료기관인증 운영체계 ····· 17
[그림 Ⅱ-1- 2] 의료기관인증 현황 ····· 19
[그림 Ⅱ-1- 3] 의료기관 컨설팅 서비스 과정 ····· 20
[그림 Ⅱ-2- 1]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 22
[그림 Ⅱ-3- 1] 유치원 평가의 이해 ····· 28
[그림 Ⅲ-3- 1] 분기별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 (2022~2023년) ····· 54
[그림 Ⅲ-3- 2] 판매유형에 따른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 (2022~2023년) ····· 55
[그림 Ⅲ-3- 3] 청구이유에 따른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 (2022~2023년) ····· 55
[그림 Ⅳ-1- 1] 2023년 컨설턴트 위촉식 및 컨설턴트 교육 ····· 63
[그림 Ⅳ-2- 1]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건강관리 인력 근속 연수 ····· 67
[그림 Ⅳ-2- 2]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전)건강관리 인력 근속 연수 ····· 67
[그림 Ⅳ-2- 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원장(대표자) 인력 근속 연수 ····· 68
[그림 Ⅳ-2- 4]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 70
[그림 Ⅳ-2- 5]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율 비율 ····· 70
[그림 Ⅳ-2- 6]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 71
[그림 Ⅳ-2- 7]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 73
[그림 Ⅳ-2- 8]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유 비율 ····· 74
[그림 Ⅳ-2- 9]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 75
[그림 Ⅳ-3- 1] 1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 76
[그림 Ⅳ-3- 2] 1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 76
[그림 Ⅳ-3- 3] 1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 77
[그림 Ⅳ-3- 4] 3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 78
[그림 Ⅳ-3- 5] 3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 78
[그림 Ⅳ-3- 6] 3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 79
[그림 Ⅳ-3- 7]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8.1 손 위생' 영역 ····· 96
[그림 Ⅳ-3- 8]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영역 ····· 97
[그림 Ⅳ-3- 9] 텍스트 분석 과정 ····· 97
[그림 Ⅳ-3-10]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 98
[그림 Ⅳ-3-11] 'Ⅱ. 시설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 99
[그림 Ⅳ-3-12] 'Ⅲ. 운영 및 고객관리'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 100
[그림 Ⅳ-3-13] 'Ⅳ. 감염예방관리'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 100
[그림 Ⅳ-3-14]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 101
[그림 Ⅳ-3-15]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 102

[그림 Ⅳ-4- 1] 2023년도 공공산후조리원 대상 부모교육 자료 지원 절차 ····· 103
[그림 Ⅳ-4- 2] 부모교육 매뉴얼 책자 ····· 105
[그림 Ⅳ-4- 3] 부모교육 주제, 교육내용, PPT 예시(영아, 아버지, 가족특성별) ····· 105
[그림 Ⅳ-4- 4]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 책자 ····· 106
[그림 Ⅳ-4- 5]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 책자 ····· 106
[그림 Ⅴ-1- 1] 2019~2023년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점수 추이 ····· 114
[그림 Ⅴ-3- 1] 낙상예방 포스터(산모용, 신생아용) ····· 131
[그림 Ⅴ-3- 2] 산모 손 위생 포스터 ····· 132
[그림 Ⅴ-3- 3] 부모교육 소책자 표지 및 목차 ····· 133
[그림 Ⅴ-3- 4] 부모교육 매뉴얼 표지 및 목차(영아부모) ····· 134
[그림 Ⅴ-3- 5] 부모교육 강의용 PPT(영아부모) ····· 135
[그림 Ⅵ-1- 1]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체계 ····· 145

I

서 론

0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2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내용

03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추진 방법

04 본 사업의 추진체계

Ⅰ. 서론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로 대부분의 산모가 이용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모아애착을 비롯한 신생아 돌봄, 모유수유, 산모 건강관리, 부모교육 등 부모 준비활동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산모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재희 외, 2022: 3). 이러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관리 요구가 대두되었으며 관련하여 2015년도에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이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규정 입법 이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만들어 시범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이재희 외, 2022). 개발된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2017년도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2년에 걸친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 현장이 아직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도가 부족하였고 시범평가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낮은 평가 점수를 기록하였다(이정림 외, 2018).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를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현장의 준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9년도에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5년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17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한 상황이고,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어져오고 있다.

2023년도에도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와 산후조리원 내 감염·소방·시설 안전을 위해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모와 신생아 돌봄, 모아애착, 부모교육 및 감염예방 영역에서의 적정성 확보 및 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을 시행한다.

둘째, 산후조리원에서의 집단 돌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소방·시설 안전 분야의 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셋째,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과 더불어 건강한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한다.

다섯째, 산후조리원 내에서 이뤄지는 이용 산모와 가족 대상의 부모교육 강화 및 지원을 통해 부모됨의 준비 및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여섯째, 산후조리원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본 평가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내용

2023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지표에 관한 평가기준집, 평가 지표의 달성 여부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한다.

둘째, 표준화된 방식과 내용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컨설턴트 교육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한다.

셋째, 산후조리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준비 단계로서의 컨설팅 사업 대상 산후조리원 모집 및 선정,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을 시행한다.

넷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3차에 걸친 개별 산후조리원에 대한 심층 컨설팅과 최근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산후조리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소그룹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섯째, 컨설팅 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컨설팅 이전과 이후의 평가 지표 점수 변화를 분석한다.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및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유형별로 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후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던 컨설팅 대상 기관과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등을 통하여 컨설팅 사업에 관한 현장 의견과 반응, 요구 등을 분석한다.

여섯째, 2023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수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터 및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일곱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부모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 특성상 취약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 등을 배포한다.

3.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추진 방법

가.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발간

1) 2023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규정 및 서식사례집 발간

2018년도 확정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컨설턴트 및 현장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정하였다. 올해는 2022년도 컨설팅 제공 과정 및 사후간담회를 통한 컨설턴트 및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학계와 현장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평가지표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후조리원 평가지표는 2022년까지 9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올해는 지표수가 92개(필수 40, 정규 51, 시범 1)로 감소하였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과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책자와 파일 형태로 컨설턴트와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에 제공하였다.

2) 2023년 컨설턴트 매뉴얼 발간

평가지표 변경을 반영하여 2023년도 컨설턴트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였다. 간담회 및 서면 검토 등을 통해 컨설턴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컨설턴트 매뉴얼을 기초로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2023년도에는 심층(1~3차) 컨설팅 기관 20개소와 소그룹 컨설팅 기관 60개소를 목표로 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하였다. 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을 위해 2023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받아 산후조리원 컨설팅 기관 모집 공문과 함께 컨설팅 수요조사지를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발송하였다. 또한, 한국산후조리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실어 홍보하였다.

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간담회 개최

산후조리원 컨설팅 방법을 개선하고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규정 및 서식사례집, 컨설턴트 매뉴얼, 사후 관리 방안, 산후조리원 평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관련 전문가, 산후조리원 컨설턴트와의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도에 개최되었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간담회 일정 및 내용은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간담회, 연구진 협의 개최 일정 및 내용

구분	일자	참석자	회의 내용
컨설팅 준비	4.10	전문가 1인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공유 및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4.13	한국보육진흥원 정책기획본부 본부장 1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소개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운영 관련 자문회의
	4.2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1인,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 착수보고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6. 5	전문가 1인, 컨설턴트 1인	• 감염예방관리 평가기준에 대한 자문회의
	6.22	전문가 1인	• 소그룹 컨설팅 진행 방안 공유 및 논의
	6.30	컨설턴트 3인	• 소그룹 컨설팅 진행 방안 공유 및 논의
	7. 3	컨설턴트 3인	• 소그룹 컨설팅을 위한 표준강의안 제작 관련 논의
컨설팅 운영	7.1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현황 보고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8.23	연구진 회의	•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행 현황 및 결과 공유
	8.25	전문가 1인	• 산모 건강평가 지표 관련 논의
	9.25	전문가 1인	• 산후우울증 연구개발 회의
	10. 5	전문가 1인	• 산후우울증 관리 모델 관련 회의
	10.24	컨설턴트 1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현장 상황 공유 및 의견 수렴
	10.26	컨설턴트 1인, 산후조리원 원장 1인	• 산후조리원 1~3차 컨설팅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10.27	컨설턴트 1인, 산후조리원 원장 1인	• 산후조리원 1~3차 컨설팅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11. 6	컨설턴트 2인	• 컨설턴트 간담회 진행 준비를 위한 평가지표 관련 의견 공유
	11.21	전문가 2인	• 산후조리원 및 산후우울 관리 시스템 개발 자문회의
	11.22	컨설턴트 1인, 산후조리원 원장 1인	• 산후조리원 1~3차 컨설팅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12. 7	전문가 1인	• 산후조리원 정책 관련 대응방안 논의
	12.2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1인,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 최종보고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11.13	보건소 2인, 공공산후조리원 원장 1인, 공공의료원 2인	•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지원 관련 자문회의
	12. 5	공공산후조리원 원장 1인, 건강관리책임자 1인	•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지원 관련 자문회의
사후간담회 관련	11.17~ 11.18	컨설턴트 22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청취 및 경험 공유
	11.30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인, 출산정책과 과장 1인,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산후조리원 5개 기관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의견 청취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라.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1)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모집은 2018년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19년~`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차 모집을 하고, 한국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를 통해 컨설턴트를 추천받았다. 2023년도에는 총 26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였다.

2)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산후조리원 컨설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간 편차 감소,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컨설턴트 교육을 진행하였다. 컨설턴트 교육 강사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팀장 경험이 많았던 컨설턴트가 수행하였다. 교육은 5월 17일, 20일에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은 컨설턴트 매뉴얼을 중심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와 컨설턴트 역할에 대한 내용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그룹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2023년도 신규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기본 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참관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본 사업의 컨설턴트가 수행하였던 컨설팅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컨설팅 중에 발생하는 민원과 지표와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컨설팅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연구진은 컨설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턴트 전용 온라인 모임 밴드를 개설하였다. 밴드를 통해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관련 현장의 주요 문의사항 공유, 산모·신생아 감염·돌봄 관련 이슈, 산후조리원 정책 기사 등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밴드에 공유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였다.

컨설턴트에게 코로나 감염지침을 공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현장 방문 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에 관한 준수 여부를 컨설턴트별로 관리하였다. 보건 분야의 컨설턴트로 구성된 특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등을 엄격하게 잘 지켰고,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표시해서 제출하는 일정도 잘 지켰으며, 백신 예방접종도 일반인들에 비해 빠르게 완료한 상태였다.

마.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 제공

2023년 진행된 산후조리원 컨설팅은 예년과 다르게 심층(1~3차) 컨설팅과 소그룹 컨설팅으로

진행하였다. 1~3차 컨설팅은 2019년부터 계속 진행하던 컨설팅 유형으로 컨설턴트가 3회 방문에 걸쳐 지표에 대한 점검·피드백을 진행하여 지표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소그룹 컨설팅은 지역별로 한 장소에서 하루 동안(6시간) 소그룹 교육을 진행하였다. 소그룹 컨설팅은 컨설팅에 관심은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산후조리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표 Ⅰ-3-2〉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소그룹 컨설팅	주요 내용	·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 · 산후조리원 평가 취지 및 배경 ·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 평가준비 방향성 설정		
심층 컨설팅 (1~3차)	주요 내용	1차 · 시범평가 실시 · 개선목표 도출 · 컨설팅 진행계획 논의	2차 · 개선과제에 대한 컨설팅 수행 및 중간점검 · 개선사항 추가/보완사항 도출	3차 · 최종 평가 실시 · 최종점검 및 향후 관리방안 컨설팅 · 최종점검 및 향후 관리방안 컨설팅
	컨설턴트	2인 1조 (팀장, 팀원)	1인(팀장)	1인(팀장)

1) 심층(1~3차) 컨설팅 제공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은 1차 컨설팅 시작 전에 컨설팅 사무국에 간편형 자체평가지와 운영현황조사표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 자체평가지는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중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시설 적정성, 손 위생, 신생아 확인,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부모교육을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산후조리원 담당자는 자체평가지를 기준으로 현재 산후조리원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운영현황 조사표와 자체평가지는 〈부록 3〉과 〈부록 4〉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1차 컨설팅은 2명(팀장-팀원)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진행한다. 팀장과 팀원 컨설턴트는 산후조리원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기본적인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와 컨설팅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후 1차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영역에 대해 산후조리원과 협의하여 개선 계획을 세웠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서 목표로 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방문했던 2명의 컨설턴트 중 팀장이 수행하였다. 팀장은 1차 컨설팅에서의 개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이 어려울 시 보완책 등을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3차 컨설팅까지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3차 컨설팅도 팀장 1명이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컨설팅 개선 달성 사항을 점검하고, 1차 컨설팅 시에 비해 3차 컨설팅 시 산후조리원 평가 점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평가를 다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후조리원 원장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유지 방안을 계획하고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마무리하였다. 컨설팅 이후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Ⅰ-3-1] 2023년도 1~3차 컨설팅 운영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계획 및 홍보	•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컨설턴트 위촉 및 교육 • 컨설팅 사업 수요조사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 보건소/지자체 협조
⇩		
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 컨설팅 운영체계 안내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선착순으로 20개 기관 선정
⇩		
1차 컨설팅	• 시범평가 시행과 컨설팅 병행 •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과 전문가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부분 점검	컨설턴트 2명이 컨설팅 수행
⇩		
2차 컨설팅	• 중간점검 및 피드백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		
3차 컨설팅	• 본 평가에 준하여 시범평가 진행	컨설턴트 1명이 시범평가 수행
⇩		
결과보고	• 컨설팅 만족도 조사(정성평가) • 컨설팅 진행 및 결과보고	향후 사업에 활용

출처: 이재희 외(202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1. 그림 Ⅰ-3-2를 토대로 2023년도 운영 절차를 재구성하였음.

2) 소그룹 컨설팅 제공

소그룹 컨설팅은 지난 4년간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컨설팅 방법이다.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1일 방문 컨설팅의 경우 투입비용대비 효율성이 낮고, 많은 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1~3차 컨설팅 개소수를 2022년보다 다소 늘리고 소그룹 컨설팅을 통해 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설계하였다. 소그룹 컨설팅은 산후조리원협회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1일 집체 교육식 컨설팅으로 운영하였다. 산후조리원 운영 일정상 전체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중심으로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등(6개 대영역, 14개 중영역, 30개 소영역)에 대한 설명과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평가 준비를 위한 방향 설정, 해당 산후조리원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대안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Ⅰ-3-2]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 운영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계획 및 홍보 제반 준비	•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컨설턴트 위촉 및 교육 • 컨설팅 사업 홍보(수요조사)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 보건소/지자체 협조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협조
⇩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선정 및 통보	신청 기관 중 선정
⇩		
소그룹 컨설팅	• 지역별로 6회에 걸쳐 진행 •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 준비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안내	교육강사(컨설턴트) 1명이 소그룹 컨설팅 수행
⇩		
결과보고	• 컨설팅 진행 및 결과보고	향후 사업에 활용

바. 컨설팅 효과 분석

컨설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심층 컨설팅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와 3차에 실시한 시범평가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시범평가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에 소개되어 있는 92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지표 점수에 대한 1~3차 컨설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컨설팅 수료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컨설팅 사후만족도 조사 내용은 컨설팅 내용, 컨설팅 횟수, 컨설팅 주기, 컨설팅 소요 시간, 규정 및 서식사례집, 컨설턴트 역량/전문성에 관하여 4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소그룹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컨설팅 내용, 교육 시간, 교육 장소 및 환경, 컨설턴트 역량/전문성에 관하여 5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와 심층 컨설팅을 수료한 산후조리원 원장 및 건강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후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사후간담회를 통해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선사항, 지표에 대한 의견, 컨설팅 절차, 최근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컨설팅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 컨설팅 사후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심층(1~3차)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우선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소책자를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료 기관에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낙상예방 포스터 등 이전 산후조리원 컨설팅에서 인센티브로 활용하였던 포스터도 배포하였다. 또한, 올해는 부모교육 자료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부모교육 책자와 강의 자료(PPT, 영상) 등을 배포하였다.

추가적으로 1~3차 컨설팅 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컨설팅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1~2페이지 정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수기공모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4. 본 사업의 추진체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시도·보건소의 협력 및 연계로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성과 평가를 받고 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2019년도부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을 토대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에서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기관 모집 및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의견을 전달해주고 있다. 한국모자보건학회에서는 컨설턴트 교육, 지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신생아간호사회와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소속 간호사가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엄격한 기준에 맞춰 컨설턴트를 추천하고 있다.

〈표 Ⅰ-4-1〉 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협력기관 및 협력내용

구분	협력기관	협력내용
컨설팅 총괄 및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방향 설정, 컨설팅 과정 점검 및 사후 평가
	시도보건소	• 컨설팅 수요조사, 컨설팅 사업 진행 협조
	육아정책연구소	• 컨설팅 총괄 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홍보, 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컨설턴트 모집 및 선정,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규정 및 서식사례집 제작, 컨설턴트 매뉴얼 제작, 컨설팅 사업 관리
협력기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 컨설팅 기관 모집 및 평가기준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한국모자보건학회	•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협의
	병원신생아간호사회	• 컨설턴트 교육 참여 및 교육 수행,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매뉴얼 검토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 컨설턴트 교육 참여,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매뉴얼 검토

출처: 이정림 외(2021).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9. 표 Ⅰ-4-1의 표를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Ⅱ

산후조리원 평가 유사 사례 분석

01 의료기관 평가인증

02 어린이집 평가

03 유치원 평가

04 소결

Ⅱ. 산후조리원 평가 유사 사례 분석

1. 의료기관 평가인증

가. 법적 근거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1]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 달리 의료기관 인증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를 가진 제도이고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1]

의료기관 인증은 모자보건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르면 등록한 의료기관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이 된다.

〈표 Ⅱ-1-1〉 의료기관평가 인증 관련 법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3.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3. 4.〉 [전문개정 2010. 7. 23.]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koiha.or.kr/web/kr/assessment/accditation.do (2023. 12. 1. 인출)

	호스피스전문기관 [본조신설 2020. 9. 4.]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개정 2018. 9. 28., 2020. 9. 4.〉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2.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3. 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4. 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5.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6.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7.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8.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9.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0. 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② 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9. 4.〉 [전문개정 2011. 1. 24.]

나. 의료기관 인증제도 사업 개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1) 평가 운영 체계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다. 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증조사 시작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증조사 진행과정은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그림 Ⅱ-1-1] 의료기관인증 운영체계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Step.do (2023. 12. 5. 인출)

2) 평가 지표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틀은 의료기관이라면 환자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과정을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질 향상 및 감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양질의 환자나 진료를 지원하는 기능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2: 3). 요양병원의 평가기준 구성을 살펴보면 3개의 영역, 11개의 장, 55개 기준, 273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1-2〉 의료기관평가인증 평가 기준

장 (Chapter)		기준 (Standard)		조사항목(Measurable Element)			
				계	필수	정규	시범
3		55		273	33	233	7
Ⅰ. 기본가치체계		3		15	14	1	
1. 환자안전 보장활동		1.1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	5	5		
		1.2	낙상 예방활동	6	5	1	
		1.3	손 위생 수행	4	4		
Ⅱ. 환자진료체계		27		135	4	129	2
2.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	진료 전달체계	2.1.1	외래환자 등록 절차	3		3	
		2.1.2	입원환자 등록 절차	3		3	
		2.1.3	환자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4		4	
		2.1.4	퇴원 및 전원 절차	4		4	
	환자평가	2.2	입원환자 초기평가	6		6	
	검사체계	2.3.1	검체검사체계	7		7	
		2.3.2	영상검사체계	6		6	
		2.3.3	검사실 안전관리	3		3	

장 (Chapter)		기준 (Standard)		조사항목(Measurable Element)			
				계	필수	정규	시범
3. 환자 진료	환자 진료체계	3.1.1	입원환자 치료계획	6		6	
		3.1.2	통증관리	4		4	
		3.1.3	영양관리	4		4	
		3.1.4	용창관리	4		5	1
		3.1.5	생애말기환자 관리	6		4	
		3.1.6	결핵 예방·관리	4		3	
		3.1.7	한방 서비스	3		4	
	고위험 환자 진료체계	3.2.1	심폐소생술 관리	4		4	
		3.2.3	수혈환자 관리	7		7	
		3.2.3	신체보호대 관리	7		7	
4. 의약품관리		4.1	의약품 보관	8		8	
		4.2	처방 및 조제	7		7	
		4.3	투약 및 모니터링	9		8	1
5.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해당사항 없음〉					
6.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6.1	환자권리존중	4		4	
		6.2	취약환자 권리보호	7	3	4	
		6.3	불만고충처리	4		4	
		6.4	의료사회복지체계	3		3	
		6.5	동의서	3		3	
		6.6	편의 및 안전시설	5	1	4	
Ⅲ. 조직관리체계		25		123	15	103	5
7.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7.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4		4	
		7.2	환자안전사건 관리	8		7	1
		7.3	질 향상 활동	6		3	3
		7.4	의료서비스 만족도 관리	3		3	
8. 감염관리		8.1	감염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5	
		8.2	의료기구 감염관리	4		4	
		8.3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8		8	
		8.4	환경관리	3		3	
		8.5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6		6	
		8.6	급식서비스 감염관리	5		5	
9. 경영 및 조직운영		9.1	합리적인 의사결정	4		3	1
		9.2	의료기관 운영방침	3		3	
10. 인적자원관리		10.1	인사정보 관리	5		5	
		10.2	직원교육	4		4	
		10.3	의료인력 법적 기준	5	1	4	
		10.4	직원안전 관리 활동	6	5	1	
		10.5	폭력 예방 및 관리	3		3	
11. 시설 및 환경관리		11.1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4		4	
		11.2	설비시스템 관리	5		5	
		11.3	위험물질 관리	5		5	
		11.4	보안관리	4		4	
		11.5	의료기기 관리	4		4	
		11.6	화재안전 관리활동	9			
12. 의료정보 / 의무기록관리		12.1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5		5	
		12.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5		5	

출처: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2022: 4~5). 기준의 구성

3) 평가 등급 및 결과공표

가) 평가 등급

의료기관평가 등급은 인증과 불인증, 조건부 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점수가 8점 이상, 각 기준의 조사항목 평균 점수 5점 이상, 각 장의 조사항목, 평균 점수 7점 이상, 필수 조사항목 중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한다(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2: 12).

〈표 Ⅱ-1-3〉 의료기관 평가등급

등급	1. 필수항목	조사항목 평균 점수			비고
		2. 전체	3. 기준별	4. 장별	
인증	무 또는 하 없음	8점 이상	모든 기준 5점 이상	모든 장 7점 이상	1~4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불인증	무 또는 하 1개 이상	7점 미만	5점 미만 3개 이상	7점 미만 1개 이상	1~4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면 불인증
조건부 인증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으면서, 조사항목 평균 점수(전체, 기준별, 장별)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출처: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2022: 12). 인증등급 판정 기준

나) 결과공표

의료기관평가 인증 대상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Status.do)를 통해 공개된다. 지역과 병원 유형 등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인증을 받은 병원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1-2] 의료기관인증 현황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Status.do (2023. 12. 20. 인출)

다. 의료기관 평가 후 관리

1) 인증주기 및 사후관리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하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1] 다만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유효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원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1] 24개월~36개월 사이에는 현장조사를 진행한다.[1]

2) 의료기관 컨설팅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인증제도 참여를 촉진하고 인증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2] 컨설팅은 희망일로부터 8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은 본조사일부터 8주 전까지 시행된다.[2]

[그림 Ⅱ-1-3] 의료기관 컨설팅 서비스 과정

컨설팅의 종류는 인증준비 컨설팅, 모의조사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web/kr/eduConsult/mediConsStep.do (2023. 12. 20. 인출)

〈표 Ⅱ-1-4〉 컨설팅 유형

유형	내용
인증준비 컨설팅	• 인증 준비 시작단계부터 접근,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시설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증 준비를 지원합니다. (본조사 6~9개월 전 시행)
모의조사 컨설팅	• 인증 본조사와 유사한 방식의 모의조사(Mock Survey)를 의료기관 현장에서 수행하여 사전 준비 정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인증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조사 2~3개월 전 시행)
맞춤형 컨설팅	• 의료기관의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해 요구도에 맞는 특정 주제를 선택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본조사 4~6개월 전 시행) (예, 규정제정, 환자안전 및 질 향상, 감염관리, 시설관리 등)

출처: 의료기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web/kr/eduConsult/mediConsKinds.do (2023. 12. 20. 인출)

2. 어린이집 평가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한다(보건복지부, 2023: 263).

〈표 Ⅱ-2-1〉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평가 조항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 · 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3)]

나. 어린이집 평가 사업 개요

어린이집 평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과정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 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참여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1) 평가 운영 체계

어린이집 평가 준비에서 대상의 선정과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 점검, 현장 및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표, 평가 후 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Ⅱ-2-1]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23. 12. 5. 인출)

3)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kcpi/business/childcarecentaccredcourse.do (2023. 12. 5. 인출)

2) 평가 지표

어린이집 평가 지표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의 4개 영역에 18개 평가지표, 5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에 대한 필수 지표를 포함한다. 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매해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구성하여 안내하고 있다.

〈표 Ⅱ-2-2〉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평가영역(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3. 건강·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4. 교직원(12)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23. 12. 5. 인출)

3) 평가 등급 및 결과공표

가) 평가 등급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적용한 평가 후 평가등급은 4개 등급(A, B, C, D)으로 구분한다. 어린이집이 받은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주기에 차이를 두어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 주기를 부여한다.

〈표 Ⅱ-2-3〉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급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23. 12. 5. 인출)

나) 결과공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결과(A~D등급)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 정보를 포함하여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

〈표 Ⅱ-2-4〉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평가 결과 A~D 등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신규개원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23. 12. 5. 인출)

다. 어린이집 평가 후 관리[4)]

어린이집 평가 후 평가 주기 동안 어린이집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관리·지원한다.

1) 연차별 자체점검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 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4)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p.275-280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2) 사후방문지원

사후 방문지원은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실행과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후 방문지원은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이 의무참여하도록 한다.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3) 평가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한다.

4) 확인점검

확인 점검은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 수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점검의 대상은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등이다.

5)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만약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한다. 상세한 조정절차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안내한다.

6) 평가 주기 조정관리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변경인가 등 평가 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어린이집 평가 현황

어린이집 평가는 2019년 6월 이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의 연도별 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2-5〉와 같다.

출생아 수의 감소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어린이집의 수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수는 29,014개이다. 이 중 평가제 시행 이전 평가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955개소(13.6%)이며, 평가제 시행

('19. 6.) 이후 평가를 받아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집은 23,828개소(82.2%)이다.

〈표 Ⅱ-2-5〉 어린이집 연도별 평가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9
전체 어린이집	37,371	35,352	33,246	30,923	29,014
인증유지 어린이집	30,061	23,909	18,618	9,897	3,955
평가결과 확정 어린이집	2,070	6,844	12,069	19,571	23,828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 (2023. 12. 5. 인출)

3. 유치원 평가[5)]

유치원 평가란 교육공동체가 평가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유치원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을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을 통해 진단하여 개선하는 실천적 과정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3b: 6).

서울시 유치원 평가는 2008년 제 1주기('08년~'10년)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를 시작으로 제 2주기('11년~'13년)를 거쳐 제 3주기('14년~'16년) 자체평가와 서면 및 현장평가로 평가방법을 수정하였다. 제 4주기('17년~'19년)를 거쳐 제 5주기('20년~'22년)에는 자체평가 및 서면평가 실시로 평가방법을 수정하며 평가절차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2023년 유치원 평가에서는 전면 자체평가로 평가방법을 전환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교직원, 학부모)를 통한 자율평가 운영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3년 유치원 평가는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유치원 평가의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면서 유치원 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으며, 시설 및 설비, 생활 안전 등의 내용과 함께 학대 예방 등 유아 및 교직원 권리 증진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치원 평가를 통해 유치원 자율운영체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간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유치원 자치문화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성 강화로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가. 유치원 평가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는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5) 본 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표 Ⅱ-3-1〉 유치원 평가 추진의 법적 근거_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제1항, 제3항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a).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기획연구과. p. 1.

〈표 Ⅱ-3-2〉 유치원 평가 추진의 법적 근거_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a).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기획연구과. p. 1.

나. 유치원 평가의 목적

유치원 평가는 크게 4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의 목적으로는 첫째, 자율적인 유치원 교육 활동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둘째, 유치원 교육공동체 참여·소통·협력을 기반한 자율과 책임의 자치 문화 조성, 셋째, 유치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유치원 환경 조성, 넷째, 유치원 교육의 '계획-실천-평가-환류'의 자율운영체제 확립에 목적이 있다.

[그림 Ⅱ-3-1] 유치원 평가의 이해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b). 2023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유치원 평가 가이드북. p. 6. 그림 인출.

다. 유치원 평가 추진 체계 및 절차

유치원 평가 추진 체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평가 기획 총괄을 진행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평가 지원을, 교육지원청에서 평가 결과 환류를, 유치원에서는 평가 실행 및 환류를 진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3b: 8).

유치원 평가 추진 절차는 크게 자체평가 – 평가 결과 보고서 수합 – 결과 공시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체평가 단계에서 유치원은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유치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유치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유치원 평가를 위한 담당자 연수 참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치원 평가 자료 수집 및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자체평가를 거친 뒤 유치원은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 결과서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유치원 평가 결과는 유치원 홈페이지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공유되며, 이러한 결과는 다음 연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유치원 평가 추진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3-3〉 유치원 평가 추진 절차

자체평가		평가 결과 보고서 수합		결과 공시
유치원		교육지원청 ·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유치원 평가 계획 수립 · 유치원 평가 담당자 연수 · 유치원 평가 컨설팅 실시 · 유치원 평가 실시	⇨	· 유치원 평가 결과서 제출 (유치원 → 교육지원청)	⇨	·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 유치원 정보공시 공개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a).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기획연구과. p. 7.

라. 2023 유치원 평가 지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3 유치원 평가 지표는 크게 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유치원 운영, Ⅲ. 유치원의 건강과 안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있으며, 2019 개정 누리과정 구성 방향 및 건강·안전영역 강화, 유치원 자치문화 조성 등 유치원 평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영역 및 지표를 살펴보면 제5주기('20~'22년) 평가지표에서는 3개 영역, 11개,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2023년에는 3개 영역, 12개 지표, 57개 문항으로 구성이 수정되었다. 무엇보다 제5주기('20~'22년) 평가지표와 구별되는 점으로는 '3-4.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보장과 권리증진'이라는 지표가 새롭게 신설된 부분을 꼽을 수 있다.

평정 방식을 살펴보면 Ⅰ, Ⅱ 영역의 경우 평가 문항에 대해 5단계 평정척도로 평가한 뒤 우수한 점 및 개선사항 등을 작성하는 방식이며, Ⅲ 영역의 경우 평가 문항에 대해 유/무를 체크한 뒤 보완점을 기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2023 유치원 평가 지표 및 평가문항의 내용 및 자체평가에 대한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3-4〉 2023 유치원 평가 지표

영역	평가지표	평가 문항(예시, 지표별 2문항 선택, 수정 가능)
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유치원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한다. • 유아의 성별,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으며, 차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배려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존중하며, 유아 주도적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점검한다. •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지원과 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편성·운영한다.
	유아·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일과 운영 전반에 나타난 유아의 흥미와 놀이 모습에 근거하여 특성 및 변화, 발달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 다양하고 적합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유아 이해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유아, 교육과정)를 실시한다. • 참여,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유아 놀이 실천-평가-환류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 교사의 놀이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교사는 유아 놀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성적 사고를 실천한다. • 연수, 장학, 연구 활동 등 다양한 과정에 활발히 참여한다. • 교원학습공동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활동 경험과 어려움, 정보 등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토의·토론이 지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원장(원감)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한다
	돌봄과 쉼이 있는 방과 후 과정	• 유아의 발달, 정서적 안정감, 체력 등 개별적 요구를 고려하여 놀이와 쉼을 기반으로 하는 방과후 과정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영역	평가지표	평가 문항(예시, 지표별 2문항 선택, 수정 가능)
		•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 개선 및 관리, 담당 인력 등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유치원 운영	유아가 주도하는 교육환경	• 유치원 하루 일과 운영에 유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 실내·외 교육환경 구성 시 유아가 불편함이 없도록 유아의 발달 및 권리를 고려한다. • 유아의 요구에 따라 실내외 교육환경의 결합 및 재구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유아의 주도적 놀이가 가능하도록 실내ㆍ외 교육환경 구성에서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유아가 놀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놀이에 적절한 자료를 스스로 선택한다.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공동체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유치원 비전과 목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비전과 목표가 유치원 교육에 적극 반영된다. • 학부모가 유치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다. •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한다. • 유치원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방안 및 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참여를 지원한다.
	소통중심의 교직원 교육자치	• 교직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행정업무 경감 등의 노력으로 교사가 놀이지원과 유아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교직원을 위한 시설 및 직무공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교직원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교직원 처우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 소통중심의 교직원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직원은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Ⅲ. 유치원의 건강과 안전	시설 및 환경의 청결과 안전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전기·가스·소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한다. • 현관문 및 출입문, 창문에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 유아의 안전 및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CCTV를 설치 및 관리한다. • 위험요소가 있는 공간(예: 조리실, 보일러실)과 유아의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예: 전선, 블라인드 줄, 콘센트, 냉·난방기, 선풍기 등)에 유아가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 놀이터와 같은 실외 놀이 공간, 놀이시설, 놀잇감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 수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점검표를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실내·외 쾌적한 환경이 조성·유지되고 있으며 오염도 검사기관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보관한다. • 승강기 설치 업체에 의해 정기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 검사 성적서를 보관한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급·간식 환경	• 급식지도점검 및 급식과 관련된 관리체계에 대해 점검을 받고 있다. • 유아의 연령 및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수립하고 있으며, 식단에 따른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 보존식 보관규정에 따라 보존식 기록표를 작성하고 보존식을 보관한다.

영역	평가지표	평가 문항(예시, 지표별 2문항 선택, 수정 가능)
	유아 및 교직원을 위한 건강증진	• 교사는 유아의 질병 및 상해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 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준수한다. • 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보장과 권리증진	• 유아의 안전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매뉴얼을 준수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여 진행한다. • 유아의 안전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에 참여하거나 관련 이수증을 보관한다. • 유아의 신체·정서·성적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교직원의 주기적인 자가점검이 이루어진다. • 교원의 안전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등·하원	•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유아의 등·하원시 보호자 인계절차와 방안이 수립된 귀가동의서를 구비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아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관리 및 운행한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a).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기획연구과. p. 12-14.

〈표 Ⅱ-3-5〉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 예시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유치원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수한점		개선할 점 및 향후 추진 계획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a).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기획연구과. p. 16.

2023년 유치원 평가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평가영역은 총 Ⅰ, Ⅱ, Ⅲ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 중 Ⅰ, Ⅱ 영역은 평가지표의 경우 수정이 불가하지만 문항은 자율 구성이 가능한 형태이다. 반면 Ⅲ 영역의 경우 평가지표 및 문항수정이 불가한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방법 또한 상이하며 평가 결과는 추후 공개된다.

〈표 Ⅱ-3-6〉 2023 유치원 평가 요약

평가영역	평가지표 및 문항	평가방법	평가위원	결과 공개
Ⅰ Ⅱ	• 평가지표 수정 불가 • 문항 자율 구성	• 자체 설문지 • 5점 평정척도	•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 (학부모 2명 이상, 원장·원감 중 1명 포함, 5-11명 이내 구성)	• 유치원 홈페이지 • 정보공시
Ⅲ	• 평가지표 및 문항 수정 불가	•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 증빙서류 유무 평가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b). 2023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유치원 평가 가이드북. p. 14.

4. 소결

본 장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사한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 유치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내용을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조리원의 평가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질 관리에 긍정적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부터 정책 성과분석을 수행된 연구들(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육아정책연구소, 2013)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가 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수준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며, 현장 교사들도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가 높았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과정과 환경, 교직원의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질적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박미경·조민효, 2019).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도 초기에는 정착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는 인증제도를 통해 진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많은 질 관련 지표들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질 향상 효과는 환자 만족도 및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서영준 외, 2019: 205).

둘째,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200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의무화 조항이 없어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9년 의무화 조항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역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산후조리원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의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지자체 지원의 근거가 된다.

셋째, 평가에 앞서 산후조리원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검토되고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보았듯이 현장에서 평가 받을 준비를 하며 평가 지표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점검한다. 평가의 지표는 질적 수준 관리의 기준점이 된다.

넷째,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후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인력 이동이 매우 빈번한 편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제점검표 제출, 사후관리를 위한 방문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Ⅲ

산후조리원 정책 최신 동향

0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및 추이

02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입법 동향

03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및 관련 규정

Ⅲ. 산후조리원 정책 최신 동향

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및 추이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12개소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475개소로 2016년도 대비 137개소가 감소하였다. 2022년도 기준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47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116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지역은 26개소 이하였다(이재희 외, 2022: 56). 전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산후조리원 개소 수가 증가하였다. 세종시는 인구유입으로 산후조리원이 개설이 늘어난데 비해 전라남도의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인해 개소수가 증가하였다.

〈표 Ⅲ-1-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표

시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2016
전국	612	598	548	518	501	492	475	-137
서울시	157	150	143	132	124	121	116	-36
부산시	29	29	27	28	25	24	23	-6
대구시	30	32	26	24	24	22	22	-8
인천시	33	32	30	30	27	26	24	-9
광주시	9	9	8	8	7	6	6	-3
대전시	19	19	14	12	11	11	10	-9
울산시	8	9	8	7	7	8	8	0
세종시	1	2	6	5	6	7	6	5
경기도	185	179	163	154	153	154	147	-38
강원도	17	16	16	16	17	17	17	0
충청북도	13	13	11	11	11	10	10	-3
충청남도	17	18	16	16	14	14	13	-4
전라북도	18	17	16	15	14	13	11	-7
전라남도	10	10	11	11	12	12	14	4
경상북도	23	21	16	13	12	13	13	-10
경상남도	33	33	29	27	29	28	26	-7
제주도	10	9	8	9	8	6	8	-2

출처: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산후조리원 명단을 근거로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임.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469개소(휴업·폐업 제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6. 기준) 자료), 2023년 12월 기준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9개소였다.

〈표 Ⅲ-1-2〉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의 혜택을 받는 경우 2주간 이용금액이 무료인 곳에서부터 타 지역 주민인 경우 275만원까지 그 폭이 다양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평균 이용요금은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요금이 326만원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할 수 있다(메디컬투데이, 2023. 10. 11). 저렴한 비용과 잘 갖추어진 시설, 취약계층 할인 등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그에 대한 수요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속초, 태백, 영월, 홍천, 양양 등의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경향신문, 2023. 09. 18). 전남 지역 또한 저출생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5호점 운영에서 나아가 9호점까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확대할 계획에 있다(노컷뉴스, 2023. 10. 16). 구체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

번호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		이용요금(만원)[1]	
						시설	산모실[5]	지역주민	타지역주민
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13. 3	위탁	서귀포의료원	1층 단독건물	11	154	
2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 건강증진 센터산후조리원	’14. 3	위탁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센터 내 지상 3~5층	27	190	209
3	전남 해남군	전남공공 산후조리원	’15. 9	위탁	해남 종합병원	해남종합병원 4층	10	154	
4	강원 삼척시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6. 2	위탁	삼척의료원	병원 별관 3층	13	본원출산: 162 타병원출산: 180	
5	전남 강진군	전남공공 산후조리원 2호점	’18. 5	위탁	강진의료원	별관, 지상 1층 단독건물	11	154	
6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9. 5	위탁	경기도 의료원	지상 2층 단독건물	13	168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	
7	전남 완도군	전남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	’19. 6	위탁	완도대성병원	지상 2층 단독건물	10	154	
8	강원 철원군	강원철원 공공산후조리원	’20. 3	위탁	철원병원	지상 3층 단독건물	10	89.6 또는 53.7[2]	179.2
9	강원 양구군	양구 공공산후조리원	’20. 7	위탁	성심의료재단	지상 2층 단독건물	8	180	
10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1	위탁	울진의료원		8	182	
11	전남 나주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20.12	위탁	빛가람 종합병원	병원 내 지상 2층 단독건물	16	154	

번호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		이용요금(만원)[1]	
						시설	산모실[5]	지역주민	타지역주민
12	울산 북구	울산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1. 7	위탁	세나 요양병원	지상 3층 단독건물	28	189	226
13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2. 1	위탁	화천군 보건의료원	의료원 별관 2~3층	5	180 또는 무료[3]	
14	충남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2. 2	위탁	홍성의료원	병원 내 별관 지상 1층	8	182	
15	전남 순천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22. 3	위탁	순천현대 여성아동병원	병원 내 3층	10	154	
16	경남 밀양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22. 5	위탁	제일병원	별관, 지상 2층	8	160	
17	경기 포천시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3. 5	위탁	경기도의료원	지상 2층	20	168	
18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23.11	위탁	㈜청솔트러스트	지하 1층, 지상 4층	12	125 또는 200 또는 250[4]	275
19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2.10	위탁	김천의료원	지상 2층	12	168	

주: 1) 이용요금은 2주 일반실 기준
2) 강원 철원군: 기본요금: 179.2만원, 철원군 1년 이상 거주: 53.7만원, 철원군 1년 미만 거주: 89.6만원
3) 강원 화천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중인 경우 2주간 무료이용 가능
4)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주민 중 우선입소 대상자의 경우 50% 감면(125만원), 일반인의 경우 20% 감면(200만원), 1년 미만 거주 주민의 경우 250만원임.
5) 산모실 개수의 경우 연구진이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담당자와 유선을 통해 확인하였음.

출처: 1) 이재희·이정림·엄지원·김희선(2020).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pp.102-103의 〈표 Ⅳ-2-3〉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최신 현황 기준으로 업데이트함.
2) 전남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www.hdhosp.co.kr/public/bbs/content.php?co_id=service_guide (2023. 11. 20. 인출)
3)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chppcc.or.kr/ (2023. 11. 20. 인출)
4)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pocheon-mom.or.kr/ (2023. 11. 20. 인출)
5)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홈페이지. https://www.sdm-mom.or.kr/ (2023. 11. 20. 인출)
6)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www.xn—ob0ba50hi02atqiilds8ibodr8m8o0a.kr/ (2023. 11. 20. 인출)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현황.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 6.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7835 (2023. 11. 20. 인출)
8) 스포츠서울(2023. 8.). 화천군, 출산여성 평균 연령 30.9세로 전국 최저!.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44013?ref=naver (2023. 12. 1. 인출)
9) 전국매일신문(2023. 11. 27.). 서대문구, 서북권 유일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 가득’ 개원. ttps://blog.naver.com/seouldesks/223275807711 (2023. 12. 1. 인출)
10) 경상남도블로그. 행복한 출산환경, 금줄 주렁주렁 경남 1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2022.12.12.). https://blog.naver.com/gnfeel/222953107350 (2023. 11. 20. 인출)
11)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홈페이지. https://www.hdhosp.co.kr/public/ (2023. 11. 20. 인출)
12) 경향신문(2022. 1. 26.). 화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1년 이상 거주 시, 2주 이용료 100% 감면. https://www.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201261553001 (2023. 11. 20. 인출)
13)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http://mom.songpa.go.kr/careCenter/guide.asp (2023. 11. 20. 인출)
14) 강원도삼척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www.ksmc.or.kr/page/guide/page_06.php (2023. 11. 20. 인출)
15) 완도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health/support/childbirth/carecenter (2023. 11. 20. 인출)
16)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chw-mom.org/sub10.html (2023. 11. 20. 인출)
17)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jjsmc.or.kr/board/gcontent/contentview.php?content_id=gonggongsanhu (2023. 11. 20. 인출)
18)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gypc.or.kr/?WS=420 (2023. 11. 20. 인출)
19) 양주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yg-ppc.org/theme/yanggu/sub/info2.php (2023. 11. 20. 인출)
20)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com (2023. 11. 20. 인출)
21)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홈페이지. http://www.bitgaramhospital.co.kr/bbs/board.php?bo_table=table65&wr_id=8 (2023. 11. 20. 인출)
22)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홈페이지. https://www.gjmed.or.kr/bbs/content.php?co_id=care1 (2023. 11. 20. 인출)

2.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입법 동향

이하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산후조리원 관련 법안의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각 주제와 관련해 발표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6]. 해당 기간에 국회에서 발의된 산후조리원 관련 법안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보면 아래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산후조리원 관련 발의된 법안 내용(2022. 1. 1.~2023. 12. 19.)

연번	제안일 (의안번호)	제안자	키워드	주요내용	처리상태
1	22.6.29 (2116204)	정일영 의원 등 15인	산후조리원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	- 현행 모자보건법상 지원되는 산후조리 정책은 산후조리 도우미에 국한되어 있고 출산가구 다수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의23 신설	위원회 심사
2	22.6.30 (2116217)	김학용 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수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위원회 심사
3	22.7.19 (2116513)	전용기 의원 등 18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위원회 심사
4	22.9.14 (2117341)	김영주 의원 등 14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취약계층 이용자의 감면금액을 지원하도록 함 ⇒ 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3항 신설	위원회 심사
5	22.9.30 (2117652)	정점식 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가능하도록 하며, 이때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위원회 심사
6	22.12.9 (2118864)	백혜련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 ·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 규정하고자 함 ⇒ 안 제15조의2	위원회 심사
	22.12.26 (2119126)	소병훈 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함	위원회 심사

6) 주요하게 2023년 11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장례·산후조리'를 검토하였음.

연번	제안일 (의안번호)	제안자	키워드	주요내용	처리상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운영	- 현재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 ⇒ 안 제23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의17제2항, 제15조의20, 제26조제1항제4호	
7	23.2.20 (2120118)	최혜영 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비지원	-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위원회 심사
8	23.4.3 (2121101)	김영선 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비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 -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위원회 심사
9	23.4.20 (2121507)	강대식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자체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 안 제1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10	23.9.4 (2124199)	김원이 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비지원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위원회 심사
11	23.9.27 (2124850)	김영배 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안 제15조의17	위원회 심사
12	23.11.15 (2125421)	안병길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관리(지원) 강화	- 현행법은 처분효과에 대한 승계규정이 있어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도 승계되고 있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임, 제2023-612호). 이에 산후조리원의 상속인·양수인(또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산후조리원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안 제15조의12	위원회 접수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의 정보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함. (2023. 12. 19. 인출)

가. 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관련

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정일영 의원과 2022년 9월 김영주 의원 그리고 2023년 4월 김영선 의원이 모자보건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23의 신설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 등의 산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김영주 의원은 제15조의17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통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설치비에 더해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 김영선 의원은 제15조의17제1항과 제2항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제3항과 제4항의 신설을 통해 시도의 조례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비용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감면은 지자체별로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같이 등 수혜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보건복지위원회, 2023: 16~17).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11월 27일 '산후조리원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산모의 건강회복뿐 아니라 산후우울증에 대한 관리, 양육방법의 습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관련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후조리원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산후우울증 관리, 신생아돌봄 등의 신규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3: 12).

〈표 Ⅲ-2-2〉 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관련 법안: 정일영 의원안(2022. 6. 29. 발의), 김영주 의원안(2022. 9. 14. 발의), 김영선 의원안(2023. 4. 3.)

현행	정일영의원안	김영주의원안	김영선의원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정일영의원안	김영주의원안	김영선의원안
〈신 설〉		③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와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3(산후관리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산후관리비용"이라 한다)을 임산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관리비용 지원 금액·기준·방법 및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1)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2S0O6P2Y2S1G3M0J5E0V8K7A8V6 (2023. 12. 19. 인출)
2)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S2O0A8H2T6T0K9J1Y9E4S2Y9L0O3 (2023. 12. 19. 인출)
3)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F2J1B1T2X9Z1Z4M5B9G5N3U8I9L1 (2023. 12. 19. 인출)

나. 산후조리원 인력 관리 관련

산후조리원 인력 관리와 관련해선 2022년 12월 백혜련 의원, 2023년 강대식 의원, 2023년 안병길 의원이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중 백혜련 의원은 형법개정으로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의 징역, 금고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적용되는데 현행 모자보건법은 연동되어 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어 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제도상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23: 18~19).

또한, 강대식 의원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정보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교부하는 지자체장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신질환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기관 및 개인정보의 제공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23: 25~26).

안병길 의원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가 승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산후조리원의 상속인·양수인(또는 법인)이 산후조리원의 상속·양수 또는 합병시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후조리원 인력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11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재 산후조리원의 인력기준[7]에 대해 수요자는 자격기준의 강화를 요구하고 공급자는 간호사의 부족 등으로 기준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괴리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인력수급 현황과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3: 11). 또한 현재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상태이지만 의료진의 방문진료에 대한 요건 및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후조리원 의사의 회진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 12).

〈표 Ⅲ-2-3〉 산후조리원 인력 관리 관련 법안(1): 백혜련 의원안(2022. 12. 29.), 강대식 의원안(2023. 4. 20.), 안병길 의원안(2023. 11. 15.)

현행	백혜련의원안	강대식의원안	안병길의원안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7. (생 략)	제15조의2(결격사유) ----------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의 ---------- 6.·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결격사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	

7) 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하며, 간호사와 영유아의 비율은 1:7, 간호조무사와 영유아는 1:2.5의 비율로 고용의무를 가진다(소수점은 올려서 산정). 근무번마다 1명이상의 간호사가 상시근무해야 하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의 내용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백혜련의원안	강대식의원안	안병길의원안
		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효과를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동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동의(피상속인은 제외한다)를 얻어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출처: 1)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V2C1T2T0V5G1F4T2W6C5U6Q5P9U1 (2023. 12. 19. 인출)
2)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V3U0S4U1C2A1Z1A3Z0H3F2E8D9Z3 (2023. 12. 19. 인출)
3)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S3R1P0Y3W0X1W2U0Q5P0O0P4N5C7 (2023. 12. 19. 인출)

다.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산후조리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에 소병훈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권고조항에서 '매해 평가하여야 한다'의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2023년 11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복지부가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후조리원 대상 사내표준 작성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에는 인센티브[8]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3: 13).

\

〈표 Ⅲ-2-4〉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법안: 소병훈 의원안(2022. 12. 26.)

현행	소병훈 의원안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 ---------- ----------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 ----------공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J2X0J8E1Y6B1Z5K2G3A0L9C5X3F3 (2023. 12. 19. 인출)

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2년과 2023년 사이 김학용, 전용기, 정점식, 소병훈, 최혜영, 김영선, 김원이, 김영배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기존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국가)로까지 확대하는 것과[9] 인구감소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학용 의원안과 소방훈 의원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2항 신설을 통해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전용기

8) 인센티브의 예로 산후조리원 인력 대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용의 지원, 산후조리업자 법정 의무 교육 비용의 지원, 육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 13)

9) 애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모자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12월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되었다(모자보건법, 2021. 12. 21., 일부개정(제15조의17), 시행 2022. 6. 22.)

의원안의 경우 제15조의17제1항의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과 제21조의 경비의 보조 부문에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2/3 이내’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안에는 국가의 산후조리원 지원에 있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것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부대비용의 1/2 이내를 보조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선 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조항을 포함하되,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국가가 우선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김영배 의원안은 특정요건에 대한 언급 없이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의무화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지역별 수요공급 실태와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고유사무로 보고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직접적 설치운영보다는 초기 양육비용 지원(첫만남이용권) 등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이 낫고 산후조리서비스와 관련해 국가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2023: 12~14).

〈표 Ⅲ-2-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법안(1): 김학용 의원안(2022. 6. 30.), 전용기 의원안(2022. 7. 19.), 정점식 의원안(2022. 9. 30.), 소병훈 의원안(2022. 12. 26.)

현행	김학용의원안	전용기의원안	정점식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외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공공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김학용의원안	전용기의원안	정점식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1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2분의 1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출처: 1)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G2E0S6Z2R7N1H4N5R3O4U6T8X2N2 (2023. 12. 19. 인출)
2)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E2W0F6U2O8L1I6U4A0D3C5W9I8E6 (2023. 12. 19. 인출)
3)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X2W0T9E2Y1N1E4A2U1H3N4D4E8W4 (2023. 12. 19. 인출)
4)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J2X0J8E1Y6B1Z5K2G3A0L9C5X3F3 (2023. 12. 19. 인출)

〈표 Ⅲ-2-6〉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관련 법안(2): 최혜영 의원안(2023. 2. 20.), 김영선 의원안(2023. 4. 3.), 김원이 의원안(2023. 9. 4.), 김영배 의원안(2023. 9. 7.)

현행	최혜영의원안	김영선의원안	김원이의원안	김영배의원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최혜영의원안	김영선의원안	김원이의원안	김영배의원안
〈신 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용비용 및 부대비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1)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H3G0F2N0M2J1S5M4S5S4Q1Z2Y7X6 (2023. 12. 19. 인출)
2)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F2J1B1T2X9Z1Z4M5B9G5N3U8I9L1 (2023. 12. 19. 인출)
3)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M3B0Z8A1Y7Z1X0F0G1E0F6D4C2C3 (2023. 12. 19. 인출)
4)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G3O0N4M1N4L1U0S5Q8P0Q9Z6X5F1 (2023. 12. 19. 인출)

마.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 정보 관련

산후조리원·산후조리서비스 정보 관리 및 공유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소병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산후도우미 제공업체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과 연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3: 13).

〈표 Ⅲ-2-7〉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 정보 관련 법안: 소병훈 의원안(2022. 12. 26.)

현행	소병훈 의원안
〈신 설〉	제23조의2(임신 · 출산 · 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 · 출산 · 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 · 출산 · 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 · 보유 · 이용 · 제공 · 연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 3.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 · 산후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 5.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 6.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7.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에 관한 정보 8.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 9.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 10.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 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 · 출산 · 산후조리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 ·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 · 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 ·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소병훈 의원안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누설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J2X0J8E1Y6B1Z5K2G3A0L9C5X3F3 (2023. 12. 19. 인출)

바. 산후조리 산업의 수출 지원 관련

정부는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높다고 보고 산후조리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정책과제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산후조리원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앞서 '나. 산후조리원 인력 관리 관련'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호사 상시근무 기준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의사 회진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둘째, 산후조리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즉,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하고 우울증 관리, 부모교육 등 다양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개발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셋째, K-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꾀한다. 국가별 보건환경 및 이미 진출한 산후조리 사례분석 등 유망 진출시장을 조사하고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병원,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 뷰티서비스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맺어 동반 수출하도록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3~4).

3.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및 관련 규정

가.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규정 및 발생 규모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조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10].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된 피해구제 약관은 제9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제12조 (손해배상)에서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제9조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환급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내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손해 배상과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Ⅲ-3-1〉 산후조리원 표준약관[11] 중 피해구제 관련 약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9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②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2.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부가서비스 요금) 3.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⑤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증 2.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증서 3.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⑥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에 사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서를 비치합니다. ⑦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10)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조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0호 (2022. 12. 23. 개정)

11)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0호 (2022. 12. 23. 개정)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분쟁조정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12] 접수 해당 요건을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13]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14].

산후조리원에 대한 피해구제 규모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략 2년(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 55건이었으며, 신청자는 대체로 여성(72.7%)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도 30~39세(81.8%)의 비중이 높아 실제 산후조리원의 주요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45.5%), 경기(32.7%)로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판매유형은 일반판매(69.1%)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청구이유는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문제가 6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도 16.4%로 나타났다. 이외 품질(물품/용역)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9.1%, 부당행위 5.5%, 안전(제품/시설)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2〉 한국소비자원의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신청 규모 (2022~2023년)

구분		사례 수 (건)	비율 (%)
전체		55	100.0
연도	2022년 (1~12월)	26	47.3
	2023년 (1~9월)	29	52.7
성별	남성	15	27.3
	여성	40	72.7
연령	20 - 29세	6	10.9
	30 - 39세	45	81.8
	40 - 49세	4	7.3

12)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피해구제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 (2023. 11. 8. 인출)

1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피해구제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 (2023. 11. 8. 인출)

1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피해구제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 (2023. 11. 8. 인출)

구분		사례 수 (건)	비율 (%)
지역(시도)	서울특별시	25	45.5
	부산광역시	1	1.8
	대구광역시	1	1.8
	인천광역시	4	7.3
	대전광역시	1	1.8
	세종특별자치시	2	3.6
	경기도	18	32.7
	강원특별자치도	1	1.8
	경상남도	2	3.6
판매유형	일반판매	38	69.1
	국내온라인거래	3	5.5
	기타통신판매	3	5.5
	기타	11	20.0
청구이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33	60.0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9	16.4
	품질(물품/용역)	5	9.1
	부당행위	3	5.5
	안전(제품/시설)	2	3.6
	AS불만	1	1.8
	약관	1	1.8
	청약철회	1	1.8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자료(2022. 1~2023. 9)를 연구진이 분석·정리함.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를 분기별[15]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2022년의 경우 분기별로 신청 건수의 변동이 크지 않으나 2023년에는 1-2사분기에 비해 3사분기에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1] 분기별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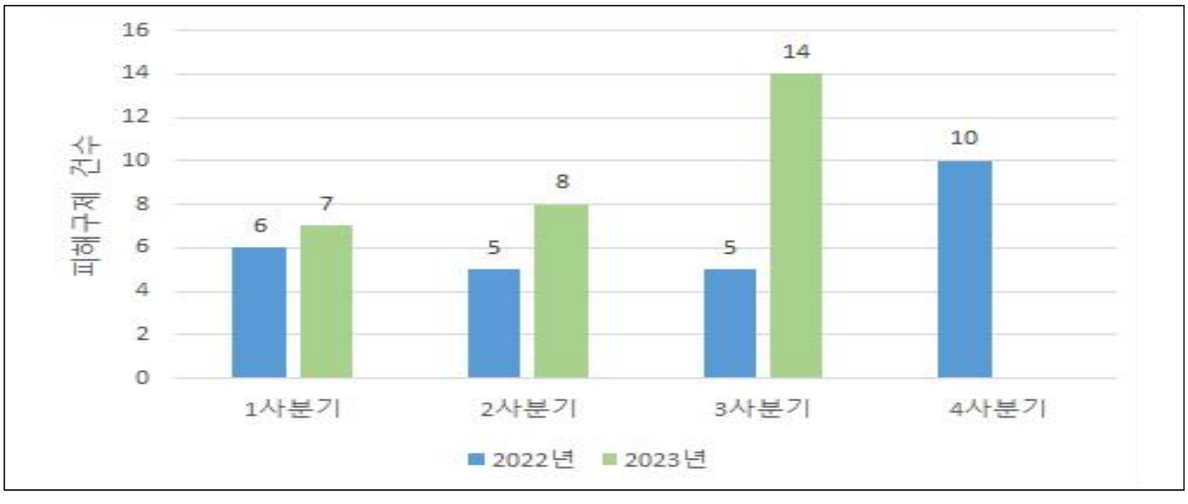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자료(2022. 1~2023. 9)를 연구진이 분석·정리함.

15) 분기는 1년을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로 구분함.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를 판매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일반판매'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1~9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일반판매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에 비해 상당수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3-2] 판매유형에 따른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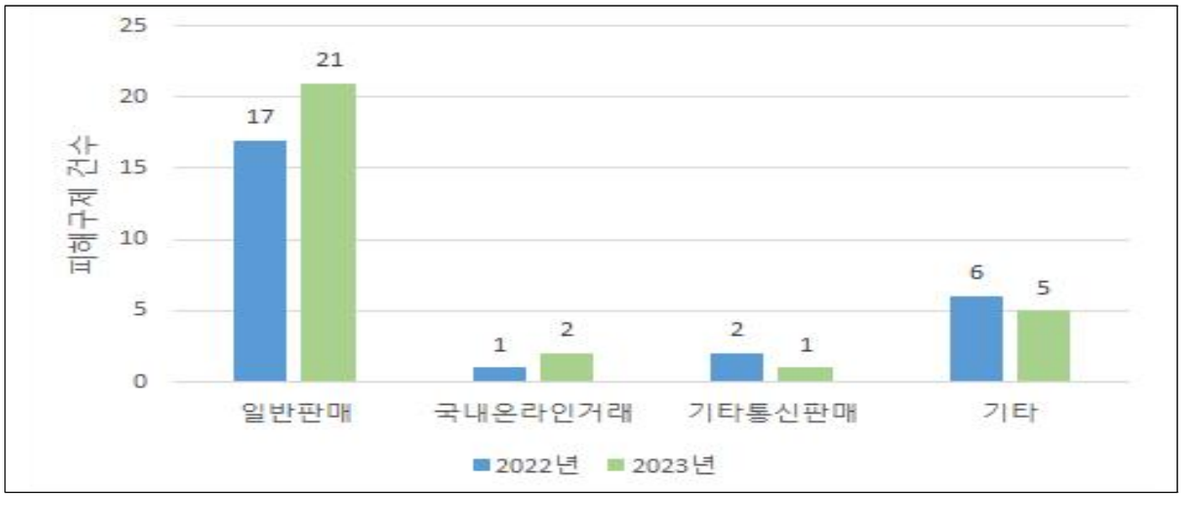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자료(2022. 1~2023. 9)를 연구진이 분석·정리함.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를 청구이유에 따라 살펴보면, '계약해지. 해지/위약금'이 2022년 15건, 2023년 1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도 7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Ⅲ-3-3] 청구이유에 따른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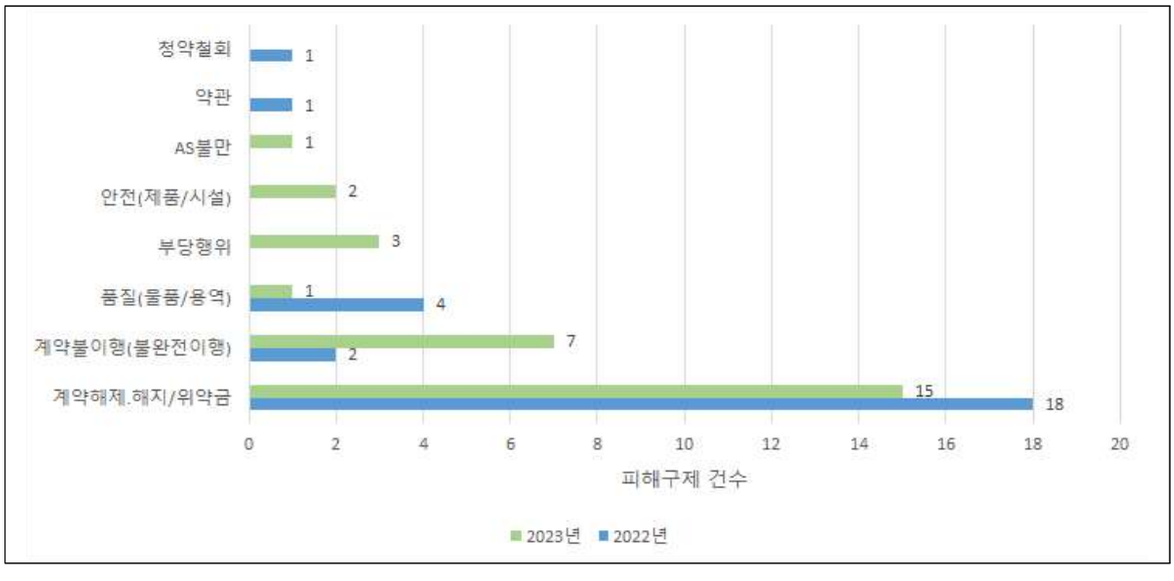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자료(2022. 1~2023. 9)를 연구진이 분석·정리함.

나. 산후조리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에 대한 피해예방·사례정보의 일환으로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16] 따라서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예방·사례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중 산후조리원 사례를 2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에 대한 사례이다. 당시 계약자였던 산모는 미숙아(출생시 몸무게 1.73㎏) 출산으로 인해 해당 출생아와 산모(본인)가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지내는 것이 사회 통념상 어려워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예약 시점에 지급한 계약금의 전액을 환불요청 하였다.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으로 여겨 계약금의 일부만 1차적으로 환급하였으나, 분쟁조정을 통해 계약금의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질병에 대한 배상 요구이다. 이 사건은 신생아의 감염성 질환(칸디다균 감염)이 산후조리원을 통한 감염으로 보기에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표 Ⅲ-3-3〉 한국소비자원의 산후조리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례 (2건)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수정일: 2009.12. 3)[17]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 14. 피신청인의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 위해 1,700,000원에 계약하고 2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2. 23. 처의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1.73㎏의 미숙아를 조기 출산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2.4㎏ 미만인 신생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책임 유무 및 범위 **(중략)**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계약 당시인 2009. 1. 24. 산모가 분만예정일인 2009. 3. 14.에 정상 분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같은 해 2. 22. 갑자기 '상세 불명의 태아 성장 지연'이란 진단을 받아 불가피하게 다음 날인 같은 해 2. 23. 제왕절개로 1.73㎏의 미숙아를 출산하였고 미숙아의 경우 병원 입원 등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며 미숙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는 사회 통념상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계약금 20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하며, 피신청인이 이미 81,000원은 환급하였으므로 잔여 금액 11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16)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예방·사례정보,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 (2023. 10. 31. 인출)

17)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https://www.kca.go.kr/od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질병에 대한 배상 요구 (결정일자: 2014. 6. 30)[18]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 3. 11~ 3. 25. 피신청인의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300,000원을 지급 후 입소하였으나 10일 정도 경과 시 자녀(2013. 3. 8. 출생)의 입천장 정중앙(젖병이 닿는 곳)에 하얀 궤양이 발생하여 이에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예사로운 질병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퇴소 후에도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일주일간 기다렸으나 증상이 심해져 4월초 동네 병원에 방문하자 '칸디다균이 감염된 아구창'이라는 소견과 함께 ○○병원 응급 진료 의뢰서를 발부해주었고, ○○병원 소아응급실에 방문하여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된바,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책임 유무 및 범위

(중략)

살피건대, 판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신생아 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도1796 판결 참조).

(중략)

다만 아기의 증상을 문의하자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곧 나을 것이다'라고만 하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에 상당하는 200,0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8.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앞서 제시한 두 개의 분쟁사례를 통해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한 사전 예약제의 해제 요건을 살필 때, 산모뿐만 아니라 출생아(신생아)의 건강 등의 요건을 포함하여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최종 입소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러한 기준이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는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적인 요소 또한 계약 해제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 건강관리나 이상증상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대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의료기관의 수준을 비교군으로 두고 유사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기대에 부합할 정도의 업무상 주의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근무인력의 적정 규모 배치의 중요성과 함께 이들의 역할이 신생아 돌봄 중 건강관리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r/cm/cm/boardsDtl.do (2023. 11. 8. 인출)

1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질병에 대한 배상 요구.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 (2023. 11. 8. 인출)

Ⅳ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01 컨설팅 사업 준비

02 컨설팅 사업 수행

03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

04 공공산후조리원 부모교육 자료 지원

05 요약 및 시사점

Ⅳ.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1. 컨설팅 사업 준비

2023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으며, 보건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 활동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가.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

2023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1~3차 컨설팅에 참여할 20개소와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할 60개소, 총 80개소의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이 이루어졌다. 컨설팅 참여 기관의 모집과 선정을 위해 2023년 5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전국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요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와 협력하여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컨설팅 관련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홍보 활동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컨설팅 참여 기관 비율이 낮았던 지역 보건소에는 연구진이 직접 전화하여 컨설팅 기관 모집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였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산후조리원은 보건소 또는 육아정책연구소에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2022년에 1~3차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관은 소그룹 컨설팅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2022년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 중에서 2023년도 1~3차 컨설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에는 별도로 연락을 취해 컨설팅 대상 기관을 모집하였다.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외부인의 내부 방문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에서는 컨설팅 관련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컨설턴트 교육에 포함하였으며, 산후조리원에도 컨설팅 관련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이를 주의하며 컨설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였다.

나.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

2023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서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와 유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 평가 체계와 각 영역별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산후조리원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이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컨설팅 영역별 지표 및 산후조리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 및 소그룹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1)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모집은 2018년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2019년~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모집하고 한국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를 통해 컨설턴트를 추천받았다.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는 26명으로 보건 분야 경력자로만 구성하였다. 컨설턴트 자격 기준은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컨설턴트 자격 기준

분야	자격 기준
보건 (간호사)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수간호사나 팀장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간호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2)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본 사업에서는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 평가 체계와 영역별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컨설턴트 교육을 5월 17일, 20일에 대면으로 실시하였다. 교육 강사는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수간호사나 팀장을 경험한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2019~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서 우수한 수행 능력을 보여준 컨설턴트 중 2명을 선정하였다. 교육 내용은 평가 기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사의 설명과 질의응답 및 실제 컨설팅 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자료는 2022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결과물인 '컨설턴트용 교육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컨설팅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 중 발생하는 민원과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전용 콜센터를 운영했다. 연구진은 컨설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컨설팅 과정에 대한 현장과 컨설턴트의 수정 요구 사항을 수집하여 컨설팅 과정에 반영하였다.

〈표 Ⅳ-1-2〉 컨설턴트 교육 일정 및 참석자 수

구분	일자	교육 시간	구분	참석자수	참석자수		비고
					현직	퇴직	
컨설턴트 교육	5.17(수)	9:00~16:30	집체 교육	10	8	2	- 교육강사 2명 포함
			소그룹 교육	5	4	1	- 교육강사 1명 포함
				5	4	1	- 교육강사 1명 포함
	5.20(토)	9:00~16:30	집체 교육	18	10	8	- 교육강사 2명 포함 - 신규컨설턴트 3명 포함
			소그룹 교육	9	4	5	- 교육강사 1명 포함 - 신규컨설턴트 1명 포함
				9	6	3	- 교육강사 1명 포함 - 신규컨설턴트 2명 포함

[그림 Ⅳ-1-1] 2023년 컨설턴트 위촉식 및 컨설턴트 교육

3) 코로나19 관련 준비 및 대처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는 2022년에 수립된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이 철저히 준수되었다. 이 방역지침의 준수는 컨설턴트 교육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지침의 중요성을 모든 컨설턴트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에서는 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을 컨설턴트들에게 직접 발송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컨설턴트들이 지참해야 할 물품과 방역지침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표 Ⅳ-1-3〉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

구분		내용	컨설턴트 준수사항	산후조리원 협조사항
컨설팅 방문 전		방역지침 준수	- 기관 방문 전 일주일 동안 발열체크 기록 후 기관 방문 전날 제출 - 기관 방문 전날 문진표 작성 후 제출	- 컨설팅을 위한 독립된 공간 마련(컨설팅 당일)
컨설팅 방문 당일	산후조리원 입장 전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준비	- 산후조리원 입장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외부인과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선 고려
	산후조리원 입구 및 방문객실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준비	- 입장 명부,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 - 방문객실에서 손 씻기 - 원장실 혹은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 - 사전에 컨설턴트 방문을 산후조리원 내 공지하여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종사자와의 접촉 최소화 - 산후조리원 내에서 사람 간 사회적 거리 유지
	원장실 (혹은 독립된 공간)	현장 방문 및 규정 및 문서 검토	- 컨설턴트 2인 중 1인만 일정 시간 (예: 1~2시간 이내) 동안 현장 관찰 실시(세탁실 및 조리실 등) - 현장 방문 시 산후조리원 종사자와의 접촉 최소화 (※ 현장 상황에 맞추어 진행함)	- 현장점검은 원 운영상황에 맞게 오전 혹은 오후에 진행 - 현장검토 컨설턴트 동선에 산후조리원 종사자와의 접촉 최소화
	산후조리원 퇴장	감염예방을 위한 추후활동	-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컨설턴트가 다녀간 장소에 대해 소독 및 환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컨설팅 종료 후		방역지침 준수	- 방역지침 사후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출처: 이정림 외(2020).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pp. 66-67. 〈표 Ⅲ-1-7〉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을 2023년도에 맞게 수정함.

2. 컨설팅 사업 수행

가. 1~3차 컨설팅 사업 수행

1)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현황

2023년도 1~3차 컨설팅 목표 기관 수는 20개소였으나, 이보다 많은 25개소가 모집되었고 5개소는 대기명단으로 관리하였다.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3차 컨설팅 시점에서 1개 산후조리원이 중도에 컨설팅 참여를 취소하였다. 3차 컨설팅을 취소한 사유는 업무과중화 문제였다. 따라서 1~3차 컨설팅을 모두 완료한 기관은 총 19개소이다.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수에 대한 세부정보 및 월별 컨설팅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1〉 1~3차 컨설팅 사업 신청 및 취소 기관 수

지역	신청 기관 수	1차 컨설팅 참여(취소) 기관 수	2차 컨설팅 참여(취소) 기관 수	3차 컨설팅 참여(취소) 기관 수
수도권	13	13(0)	13(0)	12(1)
지방	7	7(0)	7(0)	7(0)
총계	20	20(0)	20(0)	19(1)

〈표 Ⅳ-2-2〉 1~3차 컨설팅 취소 사유

	취소 차수	산후조리원명	사유
1	3차 컨설팅 취소	수도권 A산후조리원	업무과중화

〈표 Ⅳ-2-3〉 1~3차 컨설팅 완료 기관 수

구분		1~3차 컨설팅 완료 기관 수
모집(수도권/지방)		19(12/7)
수도권	소계	12
	서울	5
	경기	5
	인천	2
지방	소계	7
	강원권	-
	충청권	3
	경상권	3
	전라권	-
	제주권	1
총계		19

〈표 Ⅳ-2-4〉 1~3차 컨설팅 월별 진행 기관 수

구분		1~3차 컨설팅 진행 현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도권	서울	-	2(1차)	3(1차)	1(1차) 5(2차)	1(2차) 2(3차)	3(3차)
	경기	3(1차)	1(1차) 2(2차)	1(1차) 1(2차) 1(3차)	2(2차) 2(3차)	2(3차)	-
	인천	1(1차)	-	-	1(1차) 1(2차)	1(2차) 1(3차)	1(3차)
지방	강원권	-	-	-	-	-	-
	충청권	1(1차)		1(2차)	2(1차)	2(2차) 2(3차)	1(3차)
	경상권	1(1차)	1(1차) 1(2차)	1(1차) 1(2차)	1(2차) 2(3차)	-	1(3차)
	전라권	-	-	-	-	-	-
	제주권	-	-	1(1차)	-	1(2차)	1(3차)
총계		6	7	10	17	12	7

2) 1~3차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컨설턴트 교육 및 위촉식 당시 26명의 컨설턴트(신규 컨설턴트 3명 포함)를 위촉하였고, 이 중 25명의 컨설턴트가 1~3차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표 Ⅳ-2-5〉 1~3차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구분		참여 인원 수	
		현직	퇴직
컨설턴트 교육 및 위촉식	2018~2022년 참여 컨설턴트	14	9
	신규	3	0
	소계	17	9
	총계	26	
1~3차 컨설팅	2018~2022년 참여 컨설턴트	14	8
	신규(참관)	3	-
	소계	17	8
	총계	25	

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운영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1~3차 컨설팅을 신청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1차 컨설팅 시작 전 해당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표(산후조리원의 기본정보, 인력 현황, 시설 및 이용 현황 등이 포함)와 산후조리원이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을 평가해보는 자체평가지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운영현황표와 자체평가지는 1차 컨설팅이 시작되기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기관에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나가기 전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 19개소가 제출한 운영현황표 및 자체평가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력 현황(근속 연수)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9개 산후조리원의 건강관리 인력 근속 연수 조사 결과는 [그림 Ⅳ-2-1]과 같다. 먼저, 현재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인력 근속 연수를 살펴본 결과, 건강관리책임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비율이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6년 이상(26%), 2년 이상~4년 미만(21%), 1년 이상~2년 미만(16%), 4년 이상~6년 미만(5%) 순이었다. 간호사 인력에서는 2년 이상~4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26%), 6년 이상(16%), 4년 이상~6년 미만(11%) 순이었다. 간호사 중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없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2년 이상~4년 미만 근무 비율이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4년 이상~6년 미만(26%),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각 16%), 6년 이상(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관리책임자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각각의 근속 연수에 대한 다양한 분포가 관찰되었다.

[그림 Ⅳ-2-1]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건강관리 인력 근속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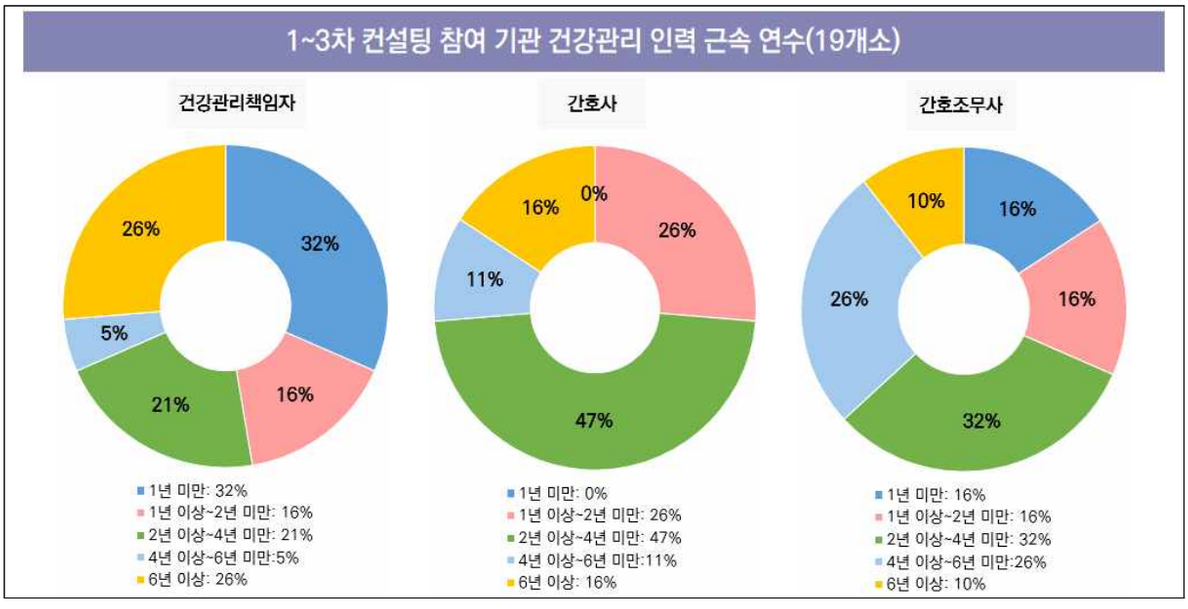

산후조리원에서 이전에 근무했으나 현재 퇴직한 건강관리 인력의 근속 연수를 살펴본 결과([그림 Ⅳ-2-2] 참조), 건강관리책임자의 경우 1년 미만, 6년 이상 근무 비율이 각각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1년 이상 2년 미만(23%), 4년 이상~6년 미만(8%), 2년 이상~4년 미만(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인력에서는 2년 이상~4년 미만이 29%로 가장 많았고, 4년 이상~6년 미만(25%), 1년 미만(21%), 1년 이상~2년 미만(14%), 6년 이상(11%) 순이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비율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년 이상~4년 미만(21%), 1년 이상~2년 미만(20%), 4년 이상~6년 미만(18%), 6년 이상(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2]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전)건강관리 인력 근속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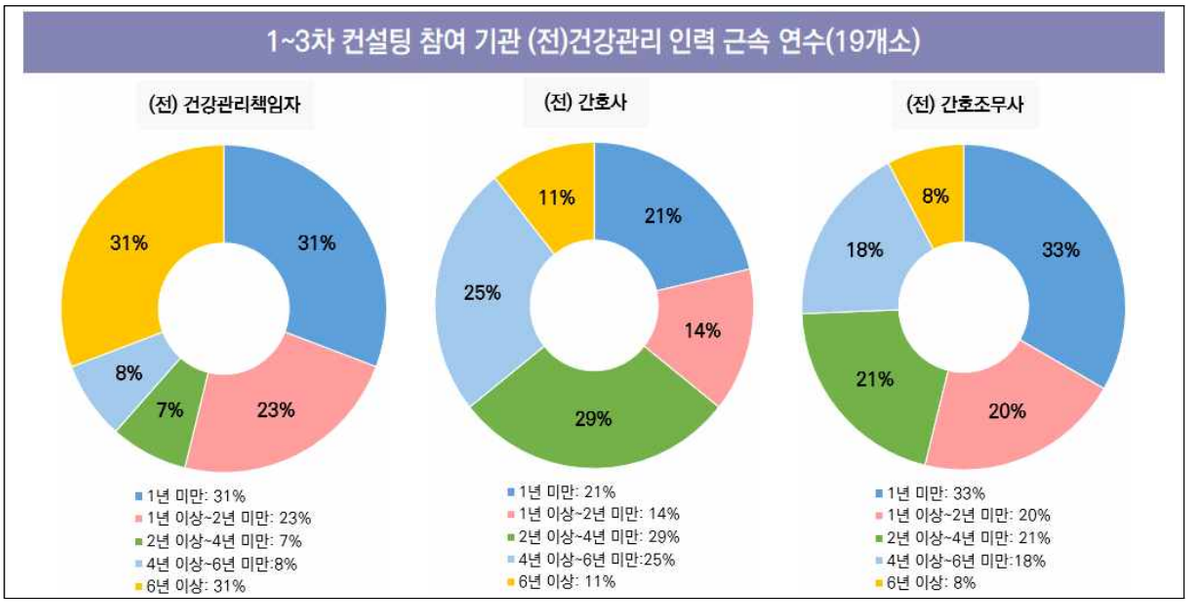

산후조리원의 원장(대표자) 인력의 근속 연수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Ⅳ-2-3]과 같다. 현재 근무 중인 원장(대표자)의 경우 6년 이상 근무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년 이상~4년 미만(26%), 1년 이상~2년 미만(21%), 1년 미만(16%), 4년 이상~6년 미만(5%)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전에 근무했으나 현재 퇴직한 원장(대표자)의 경우에도, 6년 이상이 46%로 가장 높았고, 1년 이상~2년 미만(23%), 1년 미만(16%), 2년 이상~4년 미만(15%) 순이었다.

[그림 Ⅳ-2-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원장(대표자) 인력 근속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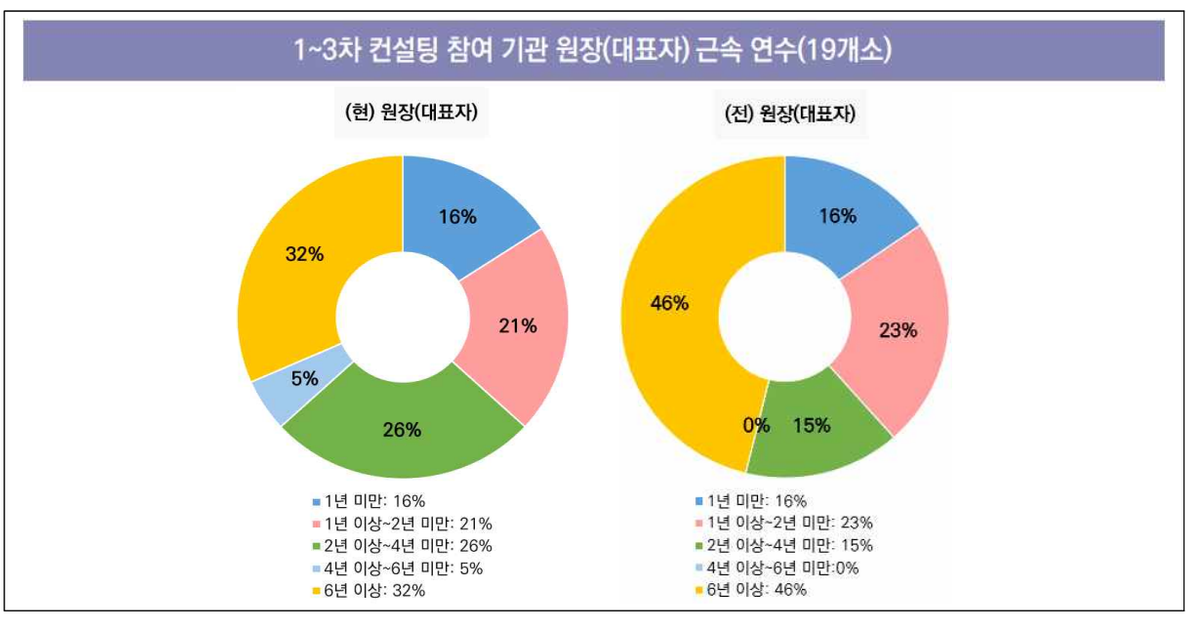

종합하면, 산후조리원 건강관리 인력의 근속 연수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책임자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2년 이상~4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퇴직한 직원 기준으로는 1년 미만 근무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재직자보다 높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6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원장(대표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보다 재직하는 기간이 길어 6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후조리원 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짧은 근속 기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력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간)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이용요금(2주간)을 분석한 결과, 법인/민간 산후조리원(18개소)의 경우 일반실 평균 금액은 3,930,000원, 중위 금액은 3,000,000원이었다. 특실의 경우, 평균 금액 6,816,000원, 중위 금액 3,730,000원으로 나타났다.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의 경우, 일반실 이용요금은 1,600,000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과 특실의 가격은 평균 금액 비교 시 2,880,000원, 중위 금액 비교 시 730,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표 Ⅳ-2-6〉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구분	법인/민간 산후조리원(18개소)		공공산후조리원(1개소)	
	일반실	특실	일반실	특실
평균 금액	3,930,000원	6,816,000원	1,600,000원	-
중위 금액	3,000,000원	3,730,000원		

다) 모자동실 이용 현황 및 모유수유

모자동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들의 모자동실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모자동실의 이용시간을 비율 범위로 응답하도록 하여(예: 4시간 미만 3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70%)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간 범위를 1순위로 선정해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12개소의 산후조리원이 4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은 6개소로 나타났다.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도 1개소 있었다. 한편, 1순위는 아니었지만 모자동실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산후조리원도 3개소 있었으며,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모자동실 이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없었다. 즉, 2023년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자동실 운영 시 8시간 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림 Ⅳ-2-4]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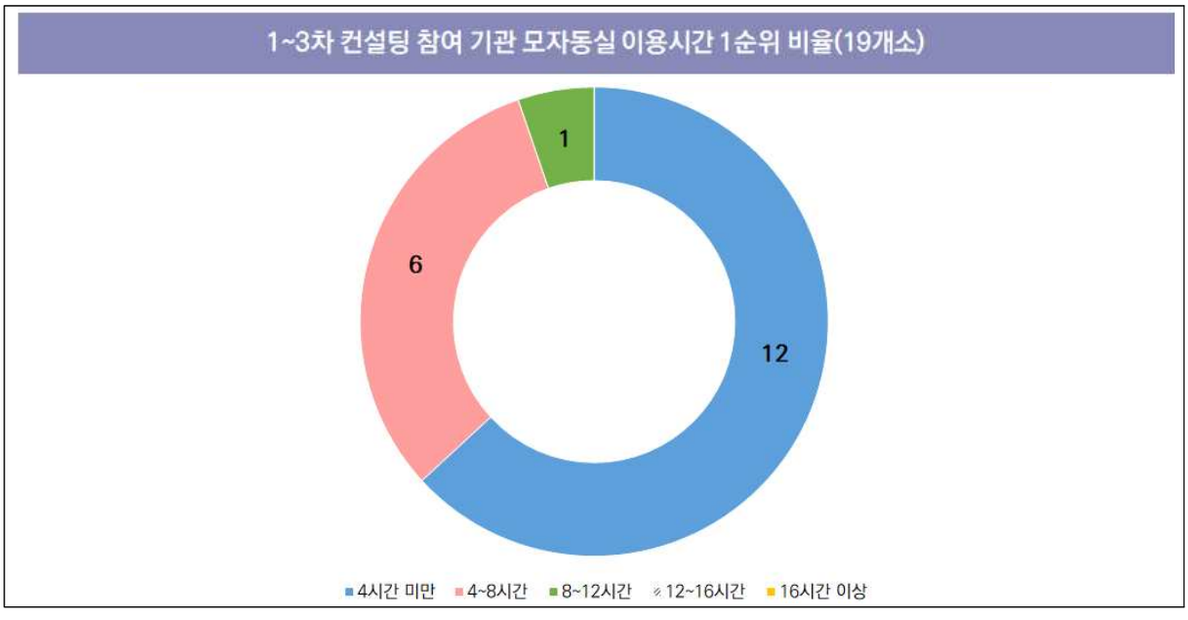

산후조리원의 수유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수유 방법(완전모유수유, 모유수유+인공수유, 인공수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비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유하고 있었다. 완전모유수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3개소 있었다.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별 모유수유 비율은 다음의 [그림 Ⅳ-2-5]와 같다.

[그림 Ⅳ-2-5]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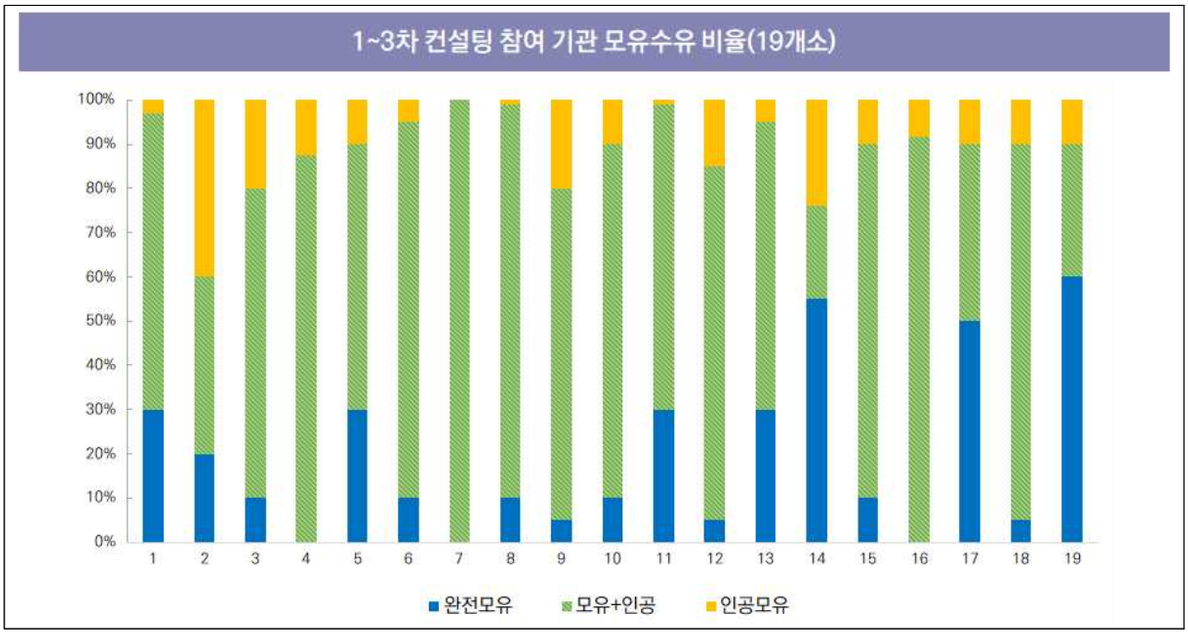

라) 자체평가 분석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들이 컨설팅 전 작성한 자체평가지의 분석 결과는 [그림 Ⅳ-2-6]과 같다. 참여 기관의 자체평가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9년도~2022년도 1~3차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의 자체평가지 분석 결과에서는 다섯 가지 대영역 중 3가지 영역(1. 시설 적정성, 2. 손 위생, 3. 신생아 확인)에서 대부분의 항목을 '상' 또는 '유'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올해는 나머지 2가지 영역(4.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5. 부모교육)에서도 '상' 또는 '유'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중'으로 평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Ⅳ-2-6]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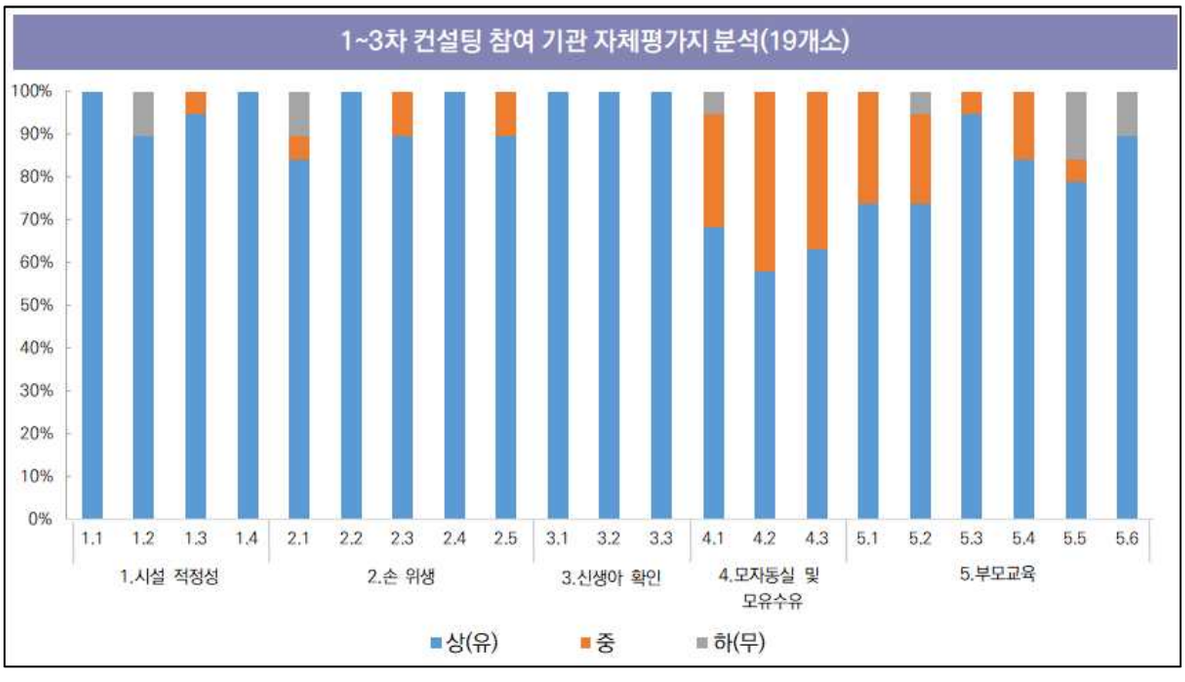

나. 소그룹 컨설팅 사업 수행

1)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현황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 목표 기관 수는 60개소였으나, 이보다 많은 65개소가 모집되었다. 5개소는 컨설팅 대기명단으로 취소 기관 발생 시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었다. 소그룹 컨설팅은 총 6번에 걸쳐 서울(2회), 대구(1회), 창원(1회), 오송(1회), 광주(1회)에서 진행되었다.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수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지역별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7〉 소그룹 컨설팅 사업 신청 및 취소 기관 수

지역	모집 기관 수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수(취소/변경)
수도권	30	28(0/0)
지방	30	32(0/0)
총계	60	60

주: 1) 산후조리원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었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신청한 산후조리원이 2개소 있었음.
2) 지역별로 컨설팅 신청은 서울1(15기관), 대구(5기관), 창원(10기관), 서울2(15기관), 오송(10기관), 광주(5기관)를 목표로 진행하였음.

〈표 Ⅳ-2-8〉 소그룹 컨설팅 완료 기관 수

구분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수
모집(수도권/지방)		60(28/32)
수도권	소계	28
	서울	17
	경기	7
	인천	4
지방	소계	32
	강원권	2
	충청권	7
	경상권	17
	전라권	6
	제주권	0
총계		60

2) 소그룹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소그룹 컨설팅은 지역별로 한 장소에서 하루 동안(6시간) 소그룹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3차 컨설팅에서 팀장으로서 활동 경력이 많은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3명의 교육강사를 구성하였다.

3)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의 운영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소그룹 컨설팅을 신청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시작 전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표와 자체평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기관 운영현황표 양식은 1~3차 컨설팅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컨설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사전에 교육강사 컨설턴트들이 소그룹 교육 전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소그룹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은 60개소이나 1기관은 산후조리원 본사였고, 1기관은 산후조리원 개원을 앞둔 산후조리원이었다. 이에 2개소 산후조리원 정보를 제외하고, 58개소 산후조리원의 자체평가지 및 운영현황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2주간)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의 이용요금(2주간)을 분석한 결과, 법인/민간 산후조리원 54개소의 경우 일반실 평균 금액은 3,248,909원, 중위 금액은 3,100,000원이었다. 특실의 경우, 평균 금액

4,568,605원, 중위 금액 4,200,000원이었다.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한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의 경우, 일반실 이용 요금의 평균 금액은 1,567,500원이었으며, 중위 금액은 1,540,000원으로 나타났다.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한 법인/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과 특실의 가격은 평균 금액 비교 시 456,860원, 중위 금액 비교 시 420,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표 Ⅳ-2-9〉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구분	법인/민간 산후조리원(54개소)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일반실	특실	일반실	특실
평균 금액	3,248,909원	4,568,605원	1,567,500원	-
중위 금액	3,100,000원	4,200,000원	1,540,000원	

나) 모자동실 이용 현황 및 모유수유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이용 현황과 모유수유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58개 산후조리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모자동실 이용 현황 분석을 위해 이용시간 범위를 비율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간 범위를 1순위로 선정하여 응답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자동실 이용시간이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이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시간 미만이 25개소,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이 4개소,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이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1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산후조리원은 없었다.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한 과반(48.3%)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자동실 운영 시간을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 43%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이 4시간 미만으로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Ⅳ-2-7]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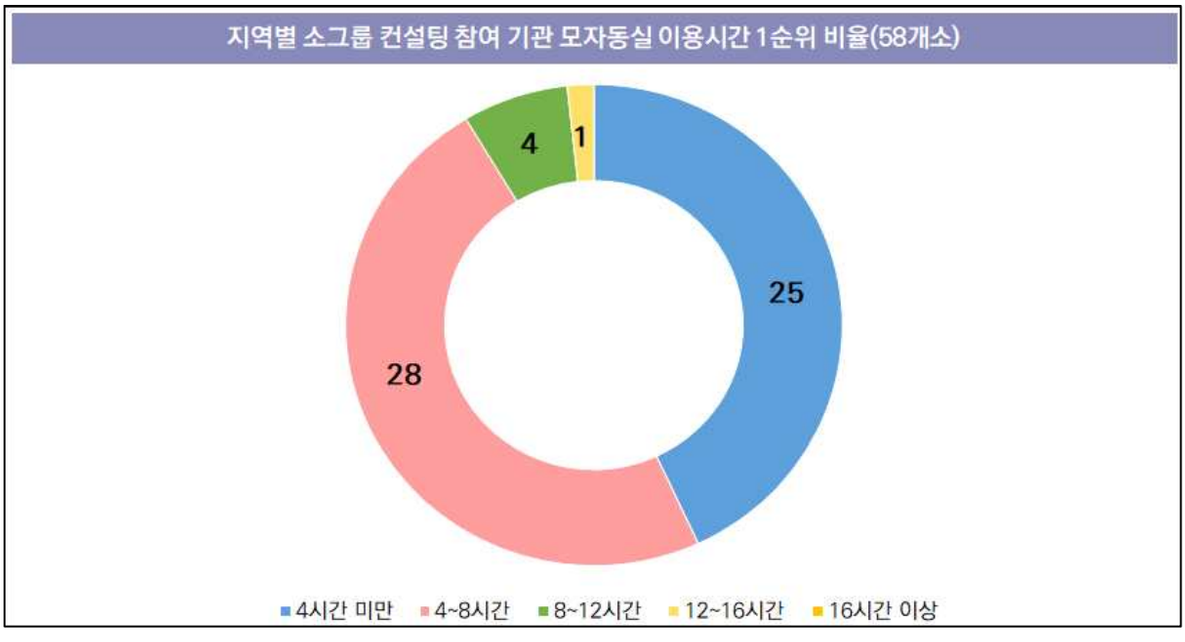

수도권 27개소, 지방 31개소 산후조리원의 모유수유 응답을 분석하였다([그림 Ⅳ-2-8] 참조). 먼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 27개소를 분석한 결과, 3개소 산후조리원에서는 완전모유 수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다수(24개소)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은 1개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의 산후조리원 31개소를 분석한 결과, 2개소 산후조리원에서는 완전모유 수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28개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 혼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소 산후조리원에서는 인공모유 수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는 산후조리원도 8개소 있었다. 완전모유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산후조리원의 비율은 수도권(11.1%)이 지방(6.4%)보다 높았고,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은 지방(25.8%)이 수도권(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8]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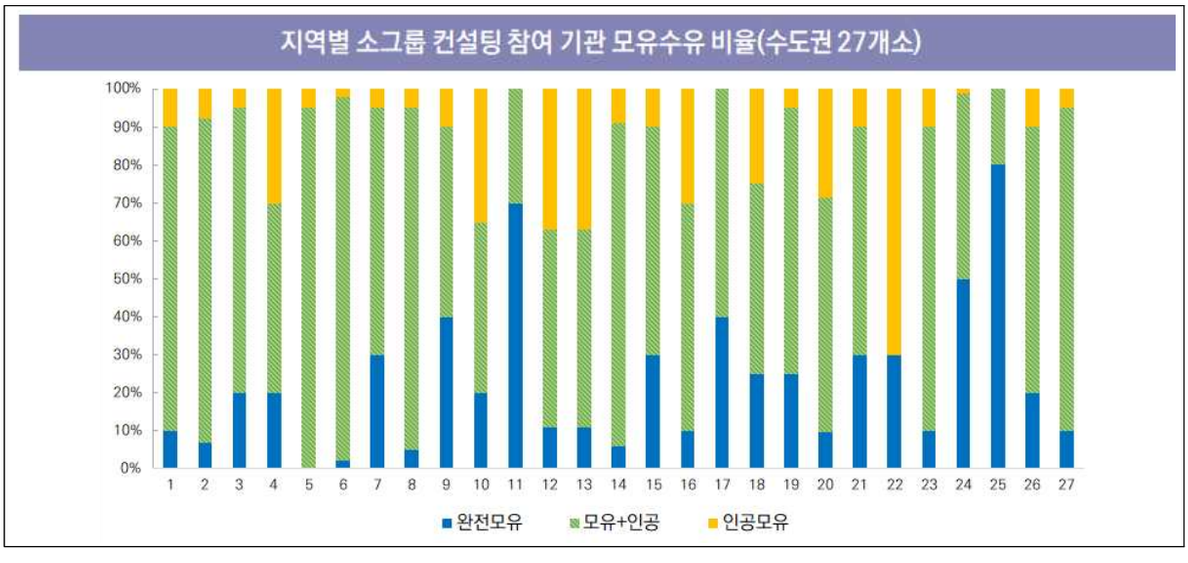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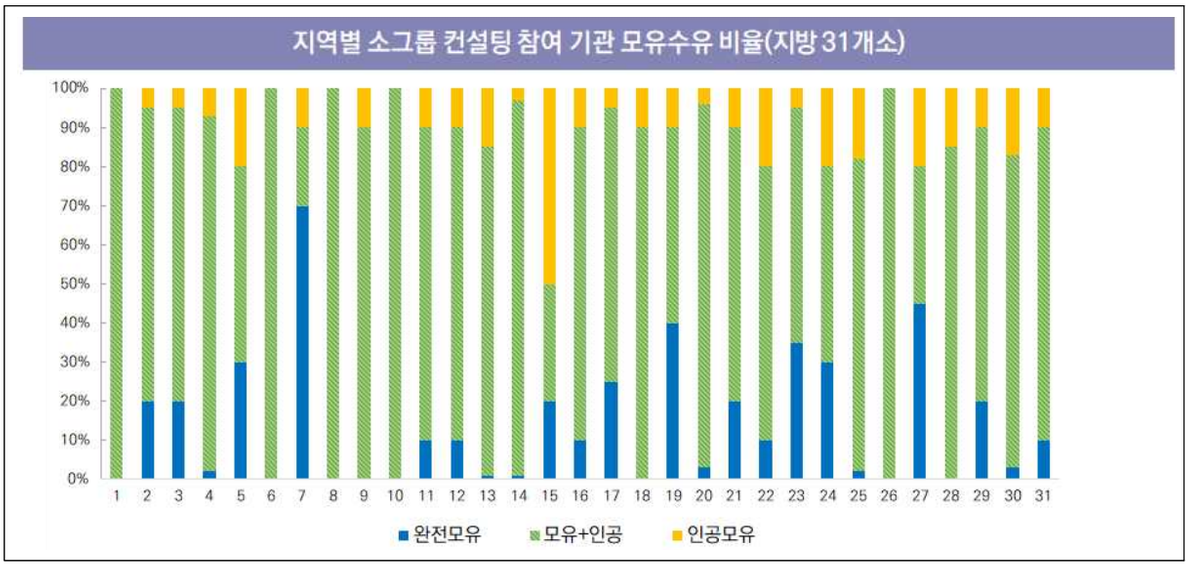

다) 자체평가 분석

소그룹 컨설팅을 신청한 60개소 중 자체평가지를 제출한 58개소의 자체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 기관의 자체평가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체평가 분석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대영역 중 세 가지 대영역(1. 시설 적정성, 2. 손 위생, 3. 신생아 확인)에서 대부분의 항목을 '상' 또는 '유'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와 부모교육 영역에서도 '상' 또는 '유'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으나, '중' 또는 '하'로 평가한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9] 소그룹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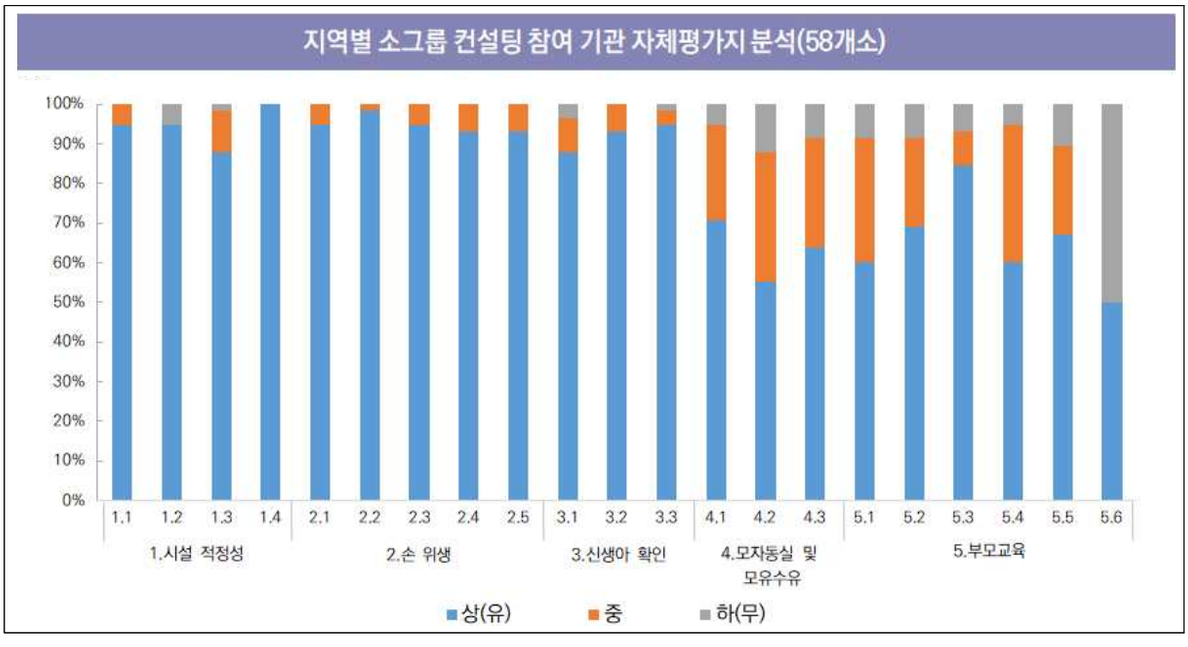

3.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

가. 1~3차 컨설팅 수행 결과

1)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컨설턴트는 1차와 3차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시범평가는 컨설팅의 필요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3차 시범평가는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추후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가) 1차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우선,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의 컨설팅 필요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1차 컨설팅 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평가에 참여한 19개소를 대상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소영역별 평균 점수는 4.6점이었으며, 중영역별 평균 점수는 4.8점, 대영역별 평균 점수는 4.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1] 1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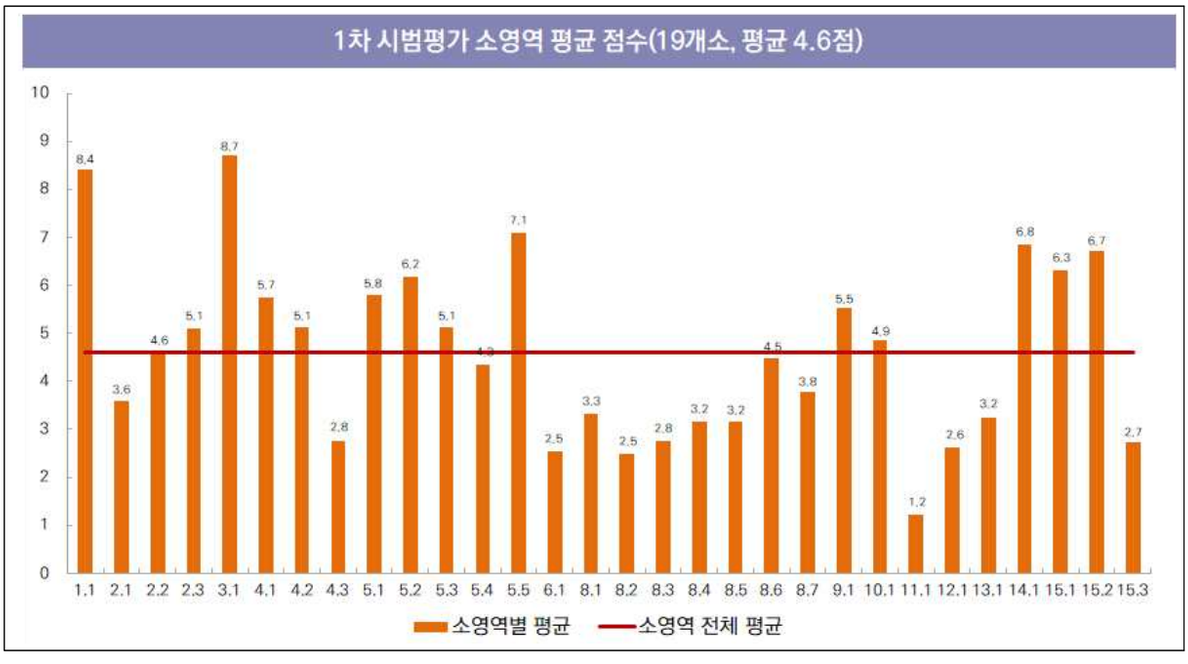

[그림 Ⅳ-3-2] 1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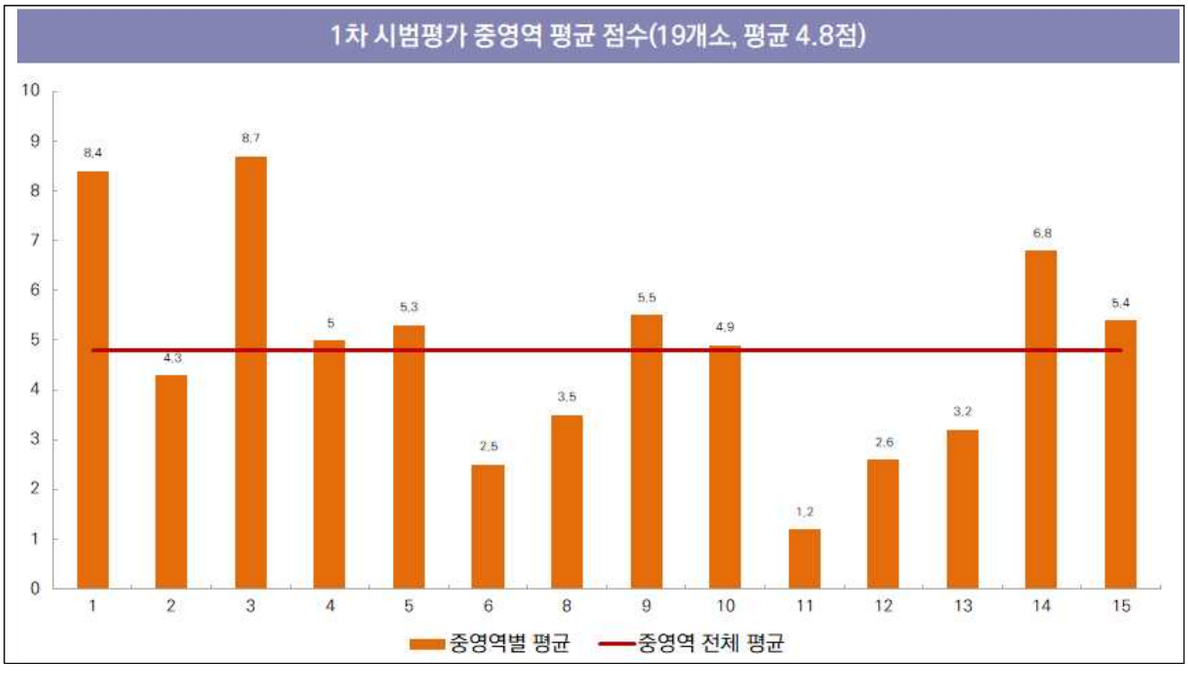

[그림 Ⅳ-3-3] 1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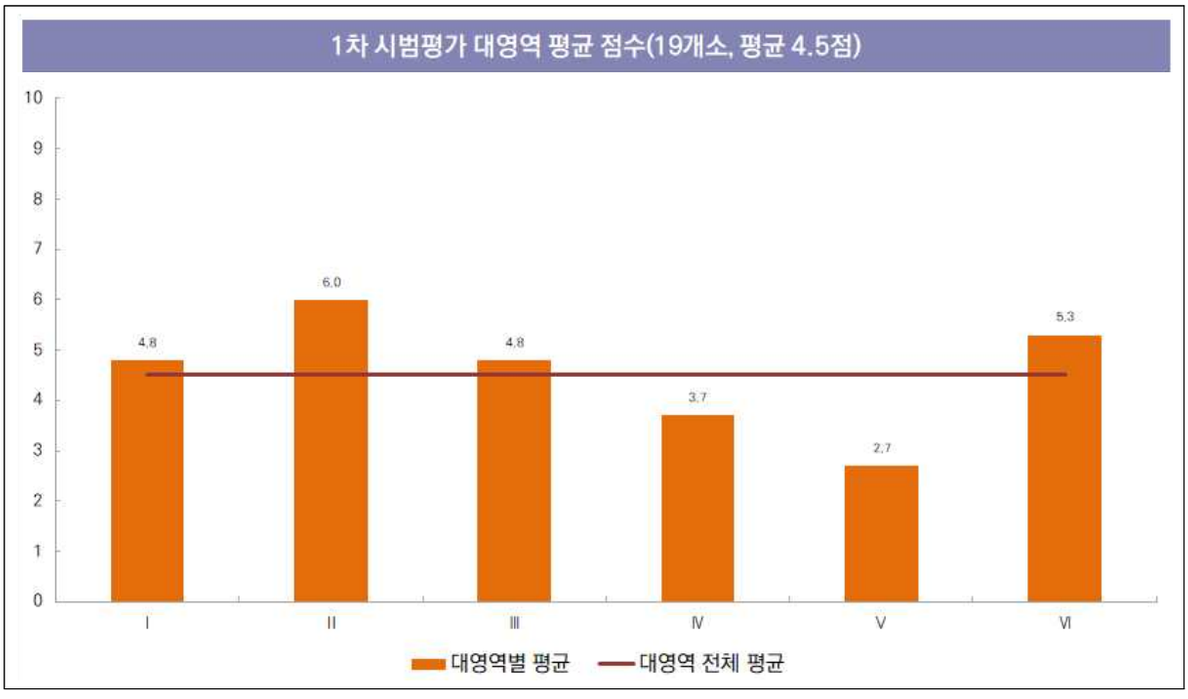

이어 1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와 하위 3순위에 속하는 평가 지표를 살펴보았다. 상위 3순위 지표로는 '3.1 시설 적정성(8.7점)', '1.1 인력 적정성(8.4점)', '5.5 운영 철학(7.1점)'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순위 지표로는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2점)', '6.1 고객관리(2.5점)', '8.2 개인보호구 착용(2.5점)'으로 분석되었다.

나) 3차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3차 컨설팅 후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추후 관리계획 및 종합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3차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3차 시범평가 소영역별 평균 점수는 7.4점이었으며, 중영역별 평균 점수는 7.3점, 대영역별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나타났다. 1~3차 컨설팅 후 시범평가 소영역별 평균 점수는 2.8점 상승하였으며 중영역별 점수는 2.5점, 대영역별 점수는 2.7점 상승하였다.

[그림 Ⅳ-3-4] 3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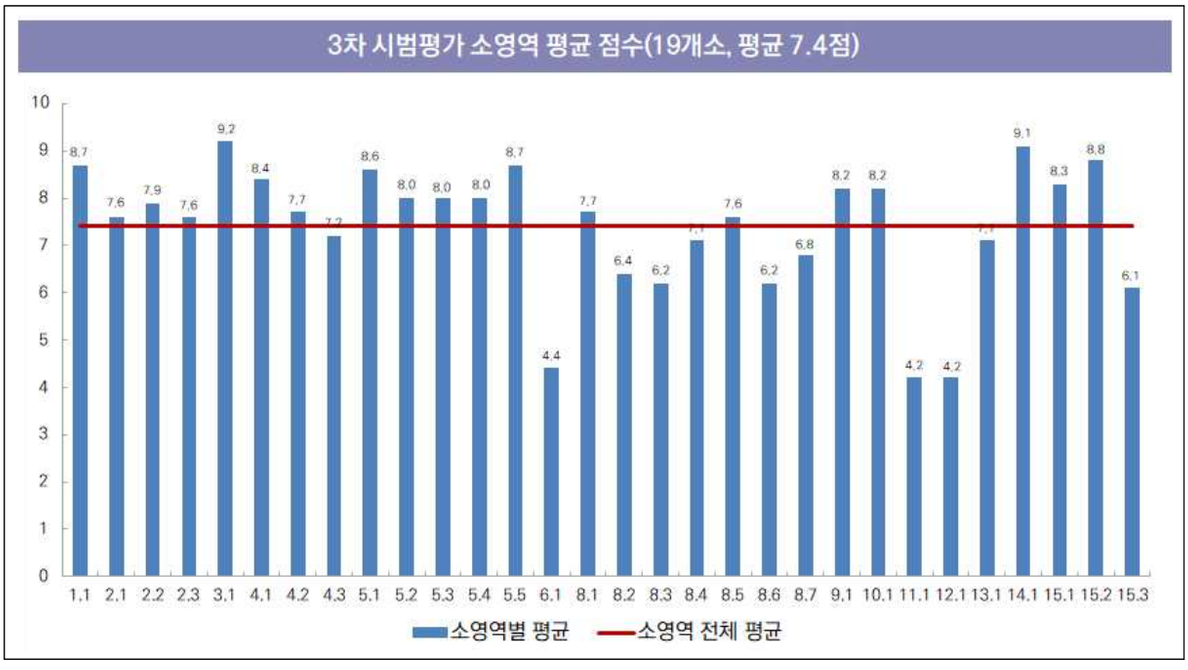

[그림 Ⅳ-3-5] 3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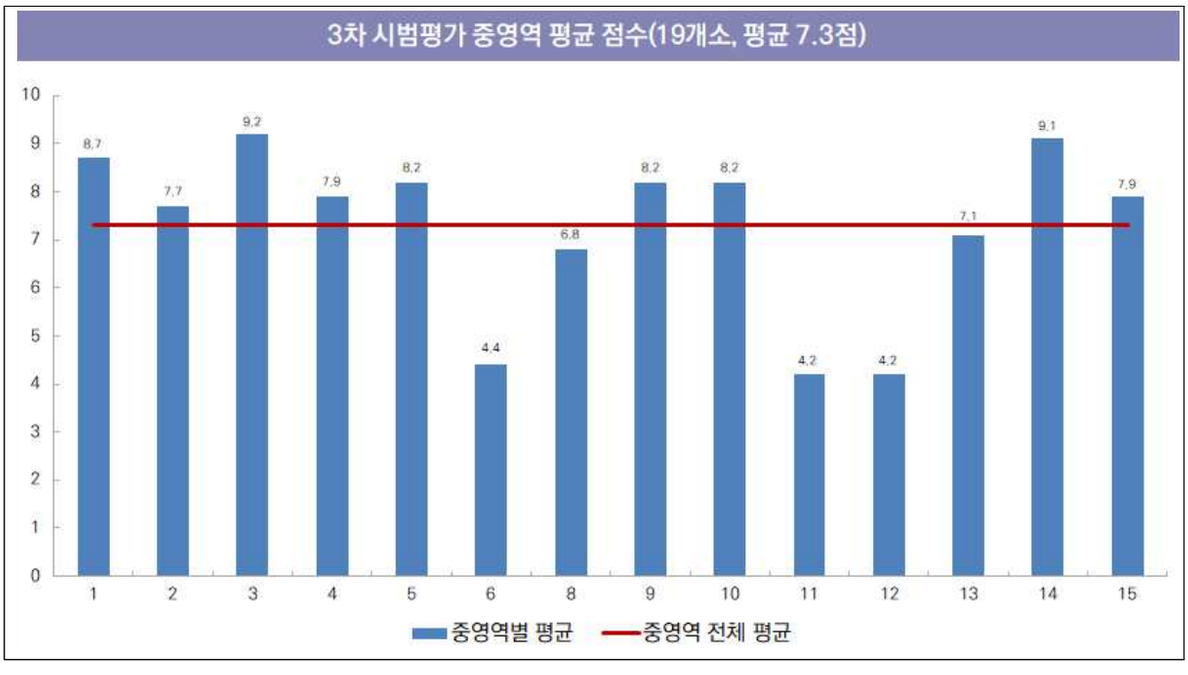

[그림 Ⅳ-3-6] 3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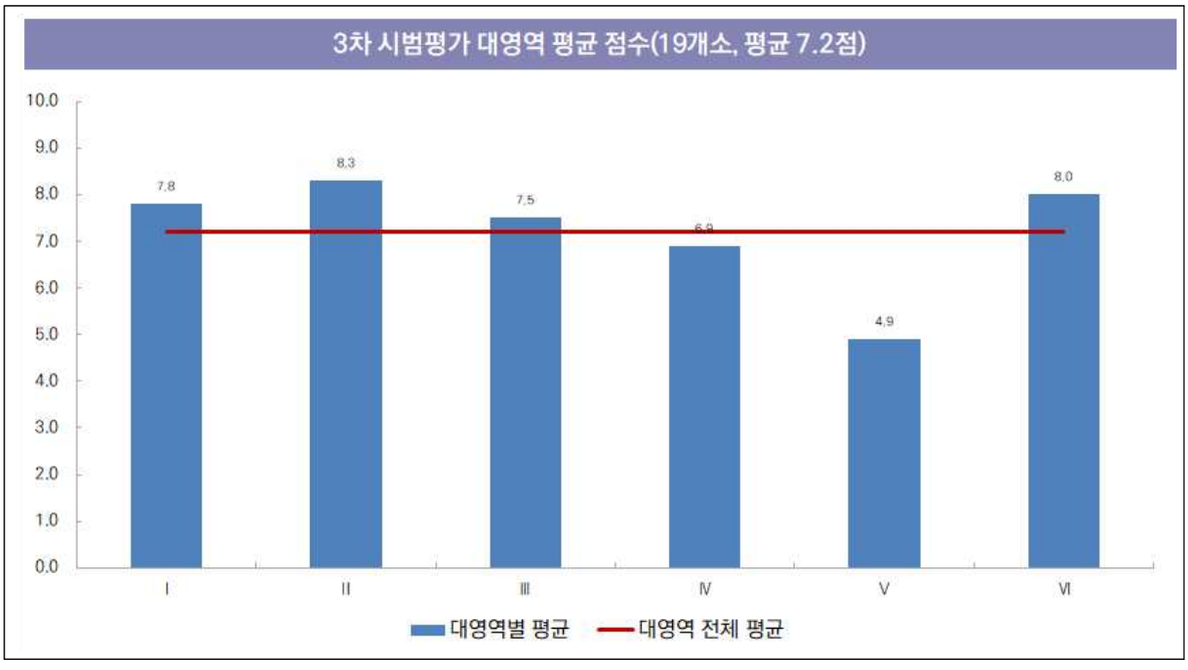

3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와 하위 3순위에 속하는 평가 지표를 살펴보았다. 상위 3순위 지표로는 '3.1 시설 적정성(9.2점)', '14.1 신생아 건강평가(9.1점)', '15.2 신생아 수유(8.8점)'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순위 지표로는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4.2점)', '12.1 부모교육(4.2점)', '6.1 고객관리(4.4점)'로 분석되었다. 1차, 3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는 〈표 Ⅳ-3-1〉과 같다.

〈표 Ⅳ-3-1〉 1차, 3차 시범평가 점수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

구분	상위 3순위 지표	하위 3순위 지표
1차 시범평가	3.1 시설 적정성(8.7점) 1.1 인력 적정성(8.4점) 5.5 운영 철학(7.1점)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2점) 6.1 고객관리(2.5점) 8.2 개인보호구 착용(2.5점)
3차 시범평가	3.1 시설 적정성(9.2점) 14.1 신생아 건강평가(9.1점) 15.2 신생아 수유(8.8점)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4.2점) 12.1 부모교육(4.2점) 6.1 고객관리(4.4점)

1차 시범평가 당시 상위 3순위 평가지표 중 '3.1 시설 적정성'은 2020년 컨설팅을 시작한 뒤 4년째 연이어서 1차 시범평가 상위 3순위에 꾸준히 등극하는 영역으로 산후조리원의 컨설팅 영역 중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시범평가에서 상위 3순위 지표에 해당하는 '14.1 신생아 건강평가', '15.2 신생아 수유' 지표는 1차 시범평가에서 없었던 지표로 향상 수준이 높은 지표임을 알 수 있다. 1차 및 3차 시범평가 하위 3순위 중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6.1

고객관리'는 1차 시범평가와 3차 시범평가 모두에서 최하위 지표로 포함되었고, '12.1 부모교육'은 4년 연속 하위 3순위에 포함되고 있어 앞으로 컨설팅 사업에서 이 영역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차 및 3차 시범평가의 결과는 아래 〈표 Ⅳ-3-2〉에 요약하였다.

〈표 Ⅳ-3-2〉 1차, 3차 시범평가 결과 요약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항목별	
					1차	3차	1차	3차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4.8**	**7.8**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8.4	8.7	8.4	8.7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3.6	7.6	3.9	7.5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2.6	7.9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2	7.4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4.6	7.9	1.8	4.7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4	8.9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8.4	10.0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5.1	7.6	3.7	6.3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6.6	8.9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6.0**	**8.3**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8.7	9.2	8.2	8.9
			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정규			9.5	9.5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7.1	8.4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10.0	10.0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5.7	8.4	3.7	6.8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6.3	7.9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3	8.9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7.4	9.2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6.1	9.2
	4.2	소방안전 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필수	5.1	7.7	4.7	7.5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6.1	7.9
			3.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3.4	6.6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6.3	8.9
	4.3	낙상예방 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8	7.2	2.6	6.3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2.9	8.2
Ⅲ. 운영 및 고객관리					**4.8**	**7.5**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5.8	8.6	3.9	7.1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10.0	10.0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8.4	10.0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항목별	
					1차	3차	1차	3차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2	7.6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3.4	8.4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6.2	8.0	4.2	6.8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8.2	9.2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5.1	8.0	3.7	6.8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6.6	9.2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4.3	8.0	3.4	7.4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2.9	7.6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3.9	8.2
	5.5	운영 철학	1.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	시범	7.1	8.7	7.1	8.7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1.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2.5	4.4	2.4	4.7
			2.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2.6	3.7
			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2.6	4.7
Ⅳ. 감염예방관리					**3.7**	**6.9**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3.3	7.7	3.2	7.6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3.7	8.2
			3.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필수			3.4	7.4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2.9	6.6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3.4	8.7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5	6.4	3.4	6.8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1.6	6.1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8	6.2	3.2	6.3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2.4	6.1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3.2	7.1	3.2	6.4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1.8	6.7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4.5	8.3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3.2	7.6	3.2	7.1
			2.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3.2	8.1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4.5	6.2	3.1	7.2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8	5.0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2.3	3.5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3.8	4.6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8	6.7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10.0	10.0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3.8	6.8	3.7	6.3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2	6.3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4.5	7.6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항목별	
					1차	3차	1차	3차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5.5	8.2	3.7	6.8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7.4	9.5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2.7**	**4.9**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4.9	8.2	7.1	9.7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6	6.6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1.2	4.2	1.8	5.3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0.3	2.1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6	5.3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6	4.2	1.8	3.7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2.9	3.7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3.4	5.0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2.6	5.0
			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2.4	3.9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2.6	3.7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5.3**	**8.0**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3.2	7.1	3.4	6.9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4	7.9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2.9	6.6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6.8	9.1	6.6	9.7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8.7	9.5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5.3	8.2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6.3	8.3	3.7	6.7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8.9	10.0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7	8.8	3.2	6.1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7.5	9.7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7.6	9.7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6.3	8.9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8.9	9.5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7	6.1	3.4	6.3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2.6	5.3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2.1	6.8

2)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컨설턴트는 1~3차 컨설팅 후 차시별 컨설팅 내용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가 작성한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해 영역별 언급 횟수와 키워드를 차시별로 분석하였다.

가)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1차 시범평가 시 '하'이거나 '무'로 나타난 영역 중 추후 컨설팅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영역과 과제에 대해 컨설턴트와 기관이 합의한 결과를 작성하였다.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영역별 언급 횟수 및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전체 영역별 및 대영역별 언급 횟수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은 '13.1 신생아 확인'(18회)이었으며, 다음으로 '2.1 종사자 채용·유지', '8.1 손 위생',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각 17회), 그리고 '4.2 소방안전관리', '5.1 입·퇴실 관리', '6.1 고객관리', '8.2 개인보호구 착용', '8.3 세탁물 관리', '10.1 산모 건강평가'(각 16회) 순으로 나타났다.

대영역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소영역을 살펴보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에서는 '2.1종사자 채용·유지'(17회),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4.2 소방안전관리'(16회)가 있었다. 이어서 'Ⅲ. 운영 및 고객관리' 중에서는 '5.1 입·퇴실관리'와 '6.1 고객관리'(각 16회),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8.1 손 위생'(17회)으로 파악되었다.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7회),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는 '13.1 신생아 확인'(18회)이 있었다.

해당 영역들은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도 대부분 소영역별 평균 점수(4.6점) 이하로 다른 영역보다 부진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2.1 종사자 채용·유지: 3.6점, 6.1 고객관리: 2.5점, 8.1 손 위생: 3.3점,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2점, 13.1 신생아 확인: 3.2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이 미흡한 영역의 원인을 분석하고 2차 컨설팅 전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많이 언급된 영역으로 나타난 '4.2 소방안전관리', '5.1 입·퇴실관리'의 경우(4.2 소방안전관리: 5.1점, 5.1 입·퇴실관리: 5.8점)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표 Ⅳ-3-3〉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 (*n*=19)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2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7**
		2.2 종사자 교육·계발	15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2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 (*n*=19)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1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1
		4.2 소방안전관리	**16**
		4.3 낙상예방관리	15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16**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2
		5.3 문서관리	10
		5.4 방문객 관리	14
		5.5 운영철학	8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16**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7**
		8.2 개인보호구 착용	**16**
		8.3 세탁물 관리	**16**
		8.4 물품 소독·관리	15
		8.5 환경관리	13
		8.6 급식관리	12
		8.7 종사자관리	13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2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6**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7**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5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8**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5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7
		15.2 신생아 수유	12
		15.3 안전관리	15

(2) 최다 언급 영역별 키워드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인 ‘13.1 신생아 확인’(18회), 그리고 ‘2.1 종사자 채용·유지’, ‘8.1 손 위생’,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각 17회), 그리고 ‘4.2 소방안전관리’, ‘5.1 입·퇴실 관리’, ‘6.1 고객관리’, ‘8.2 개인보호구 착용’, ‘8.3 세탁물 관리’, ‘10.1 산모 건강평가’(각 16회)의 영역별 키워드를 아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13.1 신생아 확인’ 영역에서는 1차 컨설팅에 참여한 대다수의 기관이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과 지침의 필요성을 알리고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제공하여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생아 식별을 위한 인식표를 아기 옷이나 발바닥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식표 사용 시 아기의 몸에 상처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신생아의 몸에 직접 발찌나 팔찌로 된 2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하여 신생아를 식별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모에게 신생아

를 인계할 때 하나의 정보(태명 혹은 산모 이름)만을 확인하고 있는 곳이 많았는데, 태명 사용을 지양하고 신생아 확인이 필요한 모든 시점에 식별정보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산모 이름, 아버지 이름, 출생일 등) 확인한 후 신생아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종사자 채용·유지’ 영역에서는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전혀 없거나 일부 규정이 있으나 산후조리원 채용기준, 종사자 결격사유 등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참고하여 다음 컨설팅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에 종사자 관리대장이 없어 종사자의 임용서류 및 자격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안각서, 상시 출입자의 예방접종 근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종사자의 면허, 보수 교육 이력 관련 사항 등을 직원별로 파일링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교육하여 인사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8.1 손 위생’ 영역에서는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손소독제 구매 내역, 개봉일과 유효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소독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젤형 손소독제 대신에 스프레이형 소독제나 장갑을 사용하며, 일회용 타올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 손 위생을 위한 물품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합한 손 위생 물품을 마련하고, 손 위생 물품 구입 및 사용과 관련된 기록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직원이 손 위생 시점을 답변하지 못하거나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예. 신생아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수행하지 않기도 하여 손 위생 교육 및 수행 촉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원과 산모를 대상으로 한 손 위생 교육과 홍보를 하고 손 위생 촉진 활동 시행을 점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모자동실, 모유수유 촉진 활동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상담과 홍보자료 등을 통해 모자동실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산모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고, 모자동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하루 4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을 통해 모아애착증진 서식을 적용하여 현재 모자동실 이용률과 모유수유율을 파악하고 추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4.2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직원별 담당 업무가 구분 되어 있지 않고, 대처 방안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였다. 이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마련하고, 근무 시간과 인원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비상조명등이나 비상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내용을 기록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소방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 입·퇴실 관리’에서는 입·퇴실 시 산모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입·퇴실 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감염 및 안전 등과 관련된 필수 교육 내용을 설명하였고, 교육내용이 포함된 입·퇴실 안내문, 퇴실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컨설팅 하였다. 또한 입실시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기록,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같은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퇴실 시에는 신생아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였다.

‘6.1 고객관리’ 영역에서는 만족도 조사가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예시를 안내하여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만족도가 낮은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구두 안내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입실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불만사항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8.2 개인보호구 착용’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더라도 착용 시점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보호구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호구 착용 시점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미흡하였다.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시점(예. 기구 물품 세척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에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게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을 마련하고 물품을 구비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필요성 및 시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8.3 세탁물 관리’ 영역에서는 세탁물 규정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세탁물 수집, 운반, 세탁, 보관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세탁물 관리에 있어서는 세탁물을 분류하여 처리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용 세탁기를 구분하지 않거나, 오염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분류하여 수집하지 않고 함께 세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탁물 수집 장소가 별도로 구획되지 않고, 세탁물 처리하는 공간에 세탁 전과 후의 빨래가 혼재되어 있고, 세탁된 세탁물을 운반하고 보관할 때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구분되어야 하는 세탁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오염세탁물 관리하는 방법과 세탁물 운반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세탁물 관리점검표를 통해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10.1 산모 건강평가’의 경우, 산모 건강기록부에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산후우울증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이 많았다. 이에 최신 건강기록부 양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대소변, 부종 등의 항목까지 누락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고위험 산모는 상담 및 의료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표 Ⅳ-3-4〉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9)	키워드	
					미비점	개선과제/합의사항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8	- 신생아 식별 규정 없음	-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사례집 활용하여 규정 마련하도록 안내
					- 신생아 인식표 적절하게 부착하지 않음	- 팔찌, 발찌로 된 2개 이상의 인식 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
					- 신생아를 산모에게 인계할 때 확인 절차 미흡	- 신생아 인계시 2가지 이상의 식별정보를 사용하여 확인할 것을 권고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7	- 인사관리 규정 없음	- 인사관리 관련 세부 규정 마련하도록 안내
					- 종사자 관리대장이 부실하게 구성됨	- 종사자별로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면허, 교육 이력 등 각종 서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
Ⅳ. 감염예방 관리	8. 감염 예방	8.1	손 위생	17	- 손 위생 규정 없음	- 손 위생 규정 재정비 하도록 안내
					- 손 소독제 구매 내역, 유효기간 등 관리 미비	- 적절한 손 위생 용품을 사용하고 물품 관리 기록을 남기도록 권고
					- 직원과 산모의 손 위생 수행 미흡	- 손 위생 시점에 대해 교육하고 손 위생 홍보 활동 실시하도록 권장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7	- 모아애착 계획 없음	-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계획을 보완하고, 모아애착 증진 서류 작성하도록 안내
					- 모자동실 이용률이 저조하며 촉진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모자동실 참여율 및 참여 시간 증진 방안에 대해 상담
					- 적극적인 모유수유 권장 활동이 없음	-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하도록 제안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4. 시설 안정성	4.2	소방안전 관리	16	- 소방안전관리 규정 내용이 불충분함	- 소방계획서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도록 제안
					- 소방시설 점검 미흡하며, 화재 대비한 환경 시정 필요(피난 유도표시등 없음. 비상구 물건 적재 등)	- 소방시설 점검하고 결과표 작성하도록 안내
					- 소방교육 및 훈련 부족	- 소방 교육과 훈련 실시하도록 권장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6	- 입·퇴실 시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시행하지 않음	- 누락된 교육내용을 보충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교육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안내
					- 입실 관련 서류 미비	- 서류를 갖추고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기입하도록 안내
					- 퇴실 시 신생아 확인 절차 미준수	- 신생아 상태를 확인하고 두 가지 이상의 지표로 식별할 것을 교육
	6. 고객관리	6.1	6.1 고객관리	16	-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지 못함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
					-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절차 미비	- 정식으로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안내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9)	키워드	
					미비점	개선과제/합의사항
Ⅳ. 감염예방 관리	8. 감염 예방	8.2	개인보호구 착용	16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부재	-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물품 관리 및 점검 사항을 포함한 지침 마련하도록 안내
					-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천	-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및 인식 교육 실시 권고
		8.3	세탁물 관리	16	- 세탁물 관련 규정 부족	- 세탁물 수집, 운반, 세탁, 보관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안내
					- 세탁물을 분류하여 처리하지 않음(산모용/신생아용, 일반세탁물/오염세탁물 등)	- 세탁물 분류 기준, 세탁물 운반 및 보관 방법을 안내하고 세탁물 관리 점검표를 통해 점검할 것을 권고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6	- 산모 건강기록부 정보(대소변, 부종 등) 누락	- 건강기록부 양식을 제공하고 기록 방법을 안내
					- 산후우울증 조사 미실시	- 산후우울증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나)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컨설팅의 중간점검 차원에서 1차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과 2차 컨설팅 시 확인된 추가 개선과제 및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영역별 개선사항 및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전체 영역별 및 대영역별 언급 횟수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은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6회)였으며, 이어서 '2.1 종사자 채용·유지', '6.1 고객관리', '8.1 손 위생', '15.3 안전관리'(각 15회) 순이었다. 한편, 대영역별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소영역을 살펴보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에서는 '2.1 종사자 채용·유지'(15회),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4.2 소방안전관리'와 '4.3 낙상예방관리'(각 14회)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Ⅲ. 운영 및 고객관리' 중에서는 '6.1 고객관리'(15회),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8.1 손 위생'(15회)으로 나타났다.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6회)였으며, 마지막으로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은 '15.3 안전관리'(15회)로 나타났다.

〈표 Ⅳ-3-5〉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 (n=19)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8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5**
		2.2 종사자 교육·계발	14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8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 (n=19)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9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0
		4.2 소방안전관리	14
		4.3 낙상예방관리	14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14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9
		5.3 문서관리	6
		5.4 방문객 관리	11
		5.5 운영철학	4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15**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5**
		8.2 개인보호구 착용	14
		8.3 세탁물 관리	14
		8.4 물품 소독·관리	14
		8.5 환경관리	9
		8.6 급식관리	7
		8.7 종사자관리	8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6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4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6**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0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3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0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4
		15.2 신생아 수유	9
		15.3 안전관리	**15**

(2) 최다 언급 영역별 키워드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인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6회), 그리고 ‘2.1 종사자 채용·유지’, ‘6.1 고객관리’, ‘8.1 손 위생’, ‘15.3 안전관리’(각 15회)의 영역별 키워드를 아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의 경우,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아애착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촉진 활동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자동실 이용을 많이 한 산모에게 포상을 하거나, 홍보 포스터 및 내부 리모델링을 활용하여 산모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계획 혹은 활동이 없었다. 모아증진 서식지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도입하지는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모아증진 서식지를 통해 모자동실 이용률, 모유수유율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였다.

‘2.1 종사자 채용·유지’ 영역에서는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보완한 곳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인력 기준, 직무기술서가 작성되었으며,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역, 면허 증빙서류 등이 갖춰졌다. 다만, 규정집 제작 과정 중에 있거나 각종 인사정보 보관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내용을 안내하고 종사자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종사자 개인별 인사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전히 누락되어 있는 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6.1 고객관리’의 경우, 만족도 조사와 불만 및 고충 사항과 관련된 지침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이를 활용한 경우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족도 조사 후 결과를 분석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평가방법과 개선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컨설팅 하였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상황에 따라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설문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불만 내용을 확인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고충 처리 경험이 추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하고,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8.1 손 위생’ 영역에서는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독제 개봉일과 유효기간을 기입하며 손 위생을 위한 적절한 물품 구입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확인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손 위생 수행율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독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리고 손 위생 촉진 홍보 활동, 산모를 대상으로 한 손 위생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손소독제 개봉 시 개봉일시와 6개월의 유효기간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손 위생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15.3 안전관리’의 경우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이동 시 아기 요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안고 이동하고 있었다. 안전을 위해 요람을 사용하여 이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었으나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아 인계 확인 시 태명을 사용하는 것도 시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직원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 추후 교육 및 근거 자료를 마련하도록 컨설팅 하였다.

〈표 Ⅳ-3-6〉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9)	키워드	
					개선사항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6	- 모아애착 증진 계획 수립 및 모자동실, 모유수유 촉진 활동 일부 시행	- 모자동실,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 홍보 및 교육 방안 안내
					- 모아애착 증진 계획 부재, 모자동실, 모유수유 참여율 저조	- 관련 규정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모아애착 증진 서식 활용하여 촉진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유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9)	키워드	
					개선사항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5	- 인사관리 규정 마련 및 인사정보 서류 보완	- 추가적으로 보완할 서류가 있는지 점검
					- 인사관리 규정 및 서류 보관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있음	- 규정 사례집을 제공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 종사자관리대장 활용을 권고
Ⅲ. 운영 및 고객관리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15	- 만족도 조사 후 분석 및 개선 활동 부족	- 조사결과 분석 방법, 개선 활동 계획에 대해 교육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과정 안내와 처리결과 관리 부족	- 불만 및 고충 처리 방안 제안
Ⅳ. 감염예방 관리	8. 감염 예방	8.1	손 위생	15	- 손 소독제 관리, 손 위생 홍보 및 교육 미비	- 손 소독제 개봉일과 유효기간 표기하도록 안내 - 손 위생 촉진 활동 및 교육의 필요성 교육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5. 신생아 관리	15.3	안전관리	15	- 신생아 이동 시 직원이 안고 이동하며 신생아 확인 시 태명 사용	- 아기 요람 이용하고, 태명 사용을 지양하도록 안내
					-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며 응급상황 대처 방안 숙지하지 못함	- 안전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숙지하도록 권고

다)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차, 2차 컨설팅에서 선정한 영역별 개선사항과 추후 관리계획을 포함한 종합의견을 최종적으로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였다.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영역별 언급 횟수 및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영역별 및 대영역별 언급 횟수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은 '8.1 손 위생'과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각 16회)였으며, 다음 순으로 '2.2 종사자 교육·계발', '6.1 고객관리', '15.3 안전관리' (각 14회)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6.1 고객관리', '8.1 손 위생' 그리고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는 1,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에서도 높은 빈도로 언급된 소영역이었다.

대영역별로 많이 언급되었던 소영역을 살펴보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에서는 '2.2 종사자 교육·계발'(14회)이었다.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4.2 소방안전관리'(13회), 'Ⅲ. 운영 및 고객관리' 중에서는 '6.1 고객관리'(14회)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8.1 손 위생'(16회)으로 파악되었다.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6회),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는 '15.3 안전관리'(14회)로 확인되었다.

일부 영역들은 3차 시범평가에서도 평균(7.4점) 이하인 영역으로 분석되어(6.1 고객관리: 4.4점,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4.2점, 15.3 안전관리: 6.1점)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산후조리원

측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많이 언급된 영역으로 나타난 '2.2 종사자 교육·계발', '4.2 소방안전관리', '8.1 손 위생' 영역의 경우(2.2 종사자 교육·계발: 7.9점, 4.2 소방안전관리: 7.7점, 8.1 손 위생: 7.7점)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표 Ⅳ-3-7〉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 (*n*=19)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9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1
		2.2 종사자 교육·계발	14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7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8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7
		4.2 소방안전관리	13
		4.3 낙상예방관리	10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11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5
		5.3 문서관리	6
		5.4 방문객 관리	10
		5.5 운영철학	4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14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6**
		8.2 개인보호구 착용	11
		8.3 세탁물 관리	12
		8.4 물품 소독·관리	11
		8.5 환경관리	9
		8.6 급식관리	10
		8.7 종사자관리	8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4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2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6**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3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1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1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3
		15.2 신생아 수유	9
		15.3 안전관리	14

(2) 최다 언급 영역별 키워드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인 '8.1 손 위생',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각 16회)의 영역별 키워드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8.1 손 위생' 영역에서는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에서 직원들의 손 위생 수행이 이전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 소독제에 개봉일과 유효기간 표기가 되어있고, 손소독제 구입 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2차 컨설팅 때와 마찬가지로 손 위생 촉진 홍보 활동, 산모를 대상으로 한 손 위생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속적인 손 위생 교육과 손 위생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행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손 위생 홍보자료가 손 위생 장소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영역에서는 산후조리원 자체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신생아실 청소시간 조정을 통해서 모자동실 촉진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아애착 증진 서식을 활용하여 모자동실 이용과 모유수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모아애착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여전히 모자동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비율 및 횟수가 높지 않아 산모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표 Ⅳ-3-8〉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3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9)	키워드	
					개선사항	종합의견(추후 관리계획 포함)
Ⅳ. 감염예방 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6	- 손 위생 수행률 개선됨	- 손 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안
					- 손 위생 물품 관리(개봉일과 유효기간 표기, 구입 내역서 확인)가 개선됨	- 일부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 대해 재교육 진행
					- 손 위생 촉진 홍보 및 교육 부족	- 손 위생 홍보자료 부착 위치 안내, 직원과 산모를 위한 손 위생 교육의 필요성 재설명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6	- 모자동실 촉진 활동 수행	- 모아애착 촉진 활동을 활성화하고 활동 근거 자료 마련할 것을 제안
					- 모아애착 증진 서식 활용하여 모아애착 현황 파악	- 모아애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
					- 모자동실, 모유수유참여율 저조	-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산모 인식 변화 유도할 것을 권고

라)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고충사항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 컨설팅 수행 시 산후조리원 측에서 주로 호소하는 고충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1 인력 적정성’ 영역에서는 행정 인력이 부족하여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서류를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규정 마련이 지연되고 자료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필요한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2.1 종사자 채용·유지’ 영역에서는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인사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간호사들의 연령이 높아 면허 갱신을 강요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2.2 종사자 교육·계발’ 영역에서는 교육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며, 교육 자료 작성 및 교육 진행 능력이 부족하여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 계획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3.1 시설 적정성’ 영역에서는 시설 개선(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거나 상위 기관(의료원 등)과 상의해야 하고 리모델링이 동반되는 작업이므로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6.1 고객관리’ 영역에서는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접수함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산모의 높은 요구도에 맞춰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민족도 조사,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행 계획이 없다고 하는 곳도 있었다.

‘8.4 물품 소독·관리’의 경우 신생아 목욕 시 개별 목욕대야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8.5 환경관리’ 영역에서는 환경관리 활동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관리 점검표를 수기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9.1 감염관리’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될 때, 신생아 입실 시 각 상황에 맞게 격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모들이 거절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0.1 산모 건강평가’ 영역에서는 산후우울증 평가에 대한 산모의 거부감 때문에 시행이 어려우며 다른 기관에서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결과를 관리하고 있어 중복하여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영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산모들이 모자동실, 모유수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원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15.3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낙상 예방과 안전을 위해 요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산후조리원 구조상 복도가 좁고 여러 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직원이 안고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컨설팅 시 제안 받은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 근거 자료 문서화 작업의 어려움과 업무과중화 사유를 들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비용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시설 및 공간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3-9〉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고충사항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고충사항 키워드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 규정 및 서식지를 작성할 행정 인력이 부족함 - 구인 공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야간 근무 간호사 채용 어려움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 문서 작성 능력이 부족하여 인사정보 관리가 어려움 - 간호사들의 연령이 높아 면허 갱신을 강요할 수 없음
		2.2	종사자 교육·계발	- 교육 일정 계획, 교육 자료 작성 및 교육 진행 능력이 부족하여 실행이 어려움 - 교육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며 시간 관계상 교육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 시설적인 부분은 내부 검토와 리모델링을 동반하여 개선해야 하므로 당장 시정될 수 없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함
Ⅲ. 운영 및 고객관리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 만족도 조사,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로 인해 민원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산모들의 요구도에 맞는 해결방안 마련이 어려움
Ⅳ. 감염예방 관리	8. 감염예방	8.4	물품 소독, 관리	- 목욕대야의 개별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8.5	환경관리	- 간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관리 점검표 수기 작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낌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 산모가 거부하는 경우 적절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움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 산후우울증 평가에 대한 산모의 거부감을 의식하여 시행하기 어려워 함 - 다른 기관(지역 상담센터 등)에서 산후우울증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있어 중복하여 조사하기 어려움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 산모들이 모자동실, 모유수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어려움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5. 신생아 관리	15.3	안전관리	- 복도가 좁고 여러 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이동해야 하므로 신생아 이동 시 요람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마)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분석

1~3차 컨설팅이 진행됨에 따라 컨설팅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결과보고서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은 '8.1 손 위생'(48회),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49회)이며, 해당 영역들의 시범평가 점수 및 컨설팅 내용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였다.

'8.1 손 위생' 영역의 경우, 1차 점수가 3.3점, 3차 점수가 7.7점으로 나타났다. 1차 점수는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3차 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의 경우 부족한 손 위생 영역을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의 관심도와 개선 의지에 따라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컨설팅 당시 해당 영역의 미비점으로 손 위생 관련 규정 부재, 손 소독제 제품 관리 미흡, 직원 및 산모 대상 손 위생 활동 수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공된 서식을 참조하여 손 위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약처 인증 손 소독제를 구입한 뒤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구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기로 합의된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손 소독제에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으나, 손 위생 방법만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합의하였다. 3차 컨설팅에서는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 손 소독제 물품 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직원의 손 위생 활동 수행이 관찰되었다. 추후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산모를 대상으로 손 위생 홍보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영역의 시범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1차 점수가 1.2점, 3차 점수가 4.2점으로 나타났다. 1차 컨설팅 시 미비점으로 모아애착 계획의 미수립,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촉진 활동 부재 등이 나타났다. 이에 개선과제로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자동실, 모유수유 촉진 활동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의 합의점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촉진 활동 등을 포함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3차 컨설팅 시에도 계획의 일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모아애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였다.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촉진 활동의 경우 산모들의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적극적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림 Ⅳ-3-7]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8.1 손 위생' 영역

차수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3.3			→			7.7	
컨설팅 내용	미비점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 손 위생 관련 규정			○ 손 위생 관련 규정			○ 손 위생 관련 규정	
	규정 없음	규정 마련	→	일부 규정 마련 혹은 미흡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게 규정 마련	→	규정 재정비	지속적인 관리
	○ 손 위생 물품 관리			○ 손 위생 물품 관리			○ 손 위생 물품 관리	
	미흡	식약처 인증제품 사용, 구매내역 준비, 개봉일시와 유효기간 기재		손 소독제 구매내역 관리, 개봉일시 표기	식약처 인증서, 구매내역서 준비, 손 소독제에 유효기간 표기		손 소독제 변경	손 소독제에 개봉일시 표기
	○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실시			○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실시			○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실시	
	미흡	손 위생 홍보 활동 및 교육 실시		미흡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포스터 부착을 통한 손 위생 방법 및 시점 등 홍보 활동 실시	지속적인 관리

[그림 Ⅳ-3-8]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영역

차수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1.2		→		4.2	
컨설팅 내용	미비점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 모아애착 계획		○ 모아애착 계획		○ 모아애착 계획	
	부재	제공된 서식 참고하여 계획 수립	부재 혹은 미비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부재 혹은 구체적인 계획 미흡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는 계획수립
	○ 모자동실 촉진 활동		○ 모자동실 촉진 활동		○ 모자동실 촉진 활동	
	부재	모자동실 촉진 활동 마련	부재 혹은 미비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준비	부재 혹은 미비	모자동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모유수유 촉진 활동		○ 모유수유 촉진 활동		○ 모유수유 촉진 활동	
	부재	모유수유 촉진 활동 마련	일부 내용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마련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준비	일부 내용 교육 실시	적극적 교육과 홍보로 산모 인식 변화 노력

바)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텍스트 분석

1~3차 컨설팅 기관에 대한 총 57개의 결과보고서(각 차수별로 19개)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Text Analytics)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6개의 대영역별로 각 영역에 해당하는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보고서는 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각 대영역별로 각 차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취합한 후, Excel에서 정제 과정에 필요한 유의어(thesaurus) 사전, 지정어(defined words) 사전, 제외어(exception list) 사전을 정의하고, 이를 CSV파일로 저장하였다. 유의어 사전은 의미가 동일한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지정어 사전은 고유명사, 복합명사, 줄임말, 전문 용어 등을 형태소 분절 없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으로, '연간직원교육계획'과 복잡한 단어도 단일 단어로 추출할 수 있다. 제외어 사전은 분석대상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등록하여 최종결과 데이터에서 제외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등'과 같이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단어의 빈도나 중요도가 다른 단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한다. 텍스트 분석 과정은 [그림 Ⅳ-3-9]와 같다.

[그림 Ⅳ-3-9] 텍스트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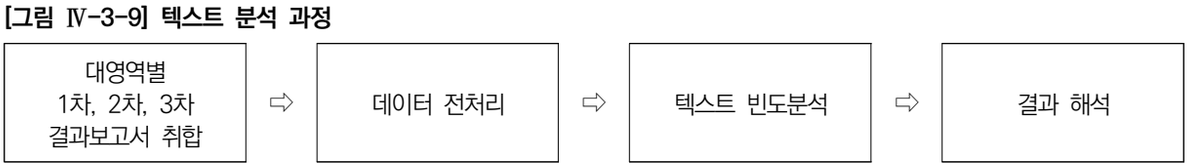

(1) 출현빈도 분석 결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는 단어의 빈도를 구름 모양으로 표현한 그래프로, 단어의 빈도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김영우, 2017). 즉, 중요하거나 자주 등장한 단어는 크게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작게 표시한다. 보고서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를 시각화하여 파악함으로써, 대영역별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의 상위 20건의 단어를 살펴보면, '교육'이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원', '작성', '종사자',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Ⅱ. 시설의 적정성과 전문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신생아', '관리', '낙상예방', '서류' 등의 순으로 키워드가 나타났다. 'Ⅲ. 운영 및 고객관리' 분석 결과에서도, '교육'이 가장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규정', '산모', '입실', '처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감염예방관리'에서는 '관리', '규정', '손위생', '소독', '직원' 등의 순으로 키워드가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이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모', '자료', '모유수유', '시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에서는 '신생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산모', '확인', '규정',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1~3차 산후조리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로 나타났으며, '관리', '점검', '관리' 등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산후조리원에서 교육·관리·점검이 키워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중 교육·관리·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이고 동시에 이러한 부분이 컨설팅으로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Ⅳ-3-10]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표 Ⅳ-3-10〉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Keyword (Frequency)	순위	Keyword (Frequency)
1	교육 (241)	11	관리대장 (50)
2	직원 (125)	12	연간직원교육 (48)
3	작성 (123)	13	준비 (47)
4	종사자 (93)	14	면허 (46)
5	규정 (89)	15	확인 (43)
6	간호사 (69)	16	서류 (42)
7	신생아 (59)	17	계획 (41)
8	신규 (59)	18	내용 (41)
9	자료 (59)	19	근거 (41)
10	근무 (57)	20	근무교대 (41)

[그림 Ⅳ-3-11] 'Ⅱ. 시설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표 Ⅳ-3-11〉 'Ⅱ. 시설의 적정성과 전문성'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Keyword (Frequency)	순위	Keyword (Frequency)
1	점검 (170)	11	산모 (51)
2	신생아 (107)	12	안전 (49)
3	관리 (71)	13	소방 (46)
4	낙상예방 (70)	14	시행 (42)
5	서류 (66)	15	근거 (41)
6	규정 (64)	16	사전관찰실 (39)
7	교육 (61)	17	작성 (38)
8	확인 (58)	18	준비 (37)
9	규정없음 (56)	19	직원 (37)
10	시설 (56)	20	산후조리원 (36)

[그림 Ⅳ-3-12] ‘Ⅲ. 운영 및 고객관리’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표 Ⅳ-3-12〉 ‘Ⅲ. 운영 및 고객관리’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Keyword (Frequency)		순위	Keyword (Frequency)	
1	교육	(128)	11	출입	(62)
2	규정	(119)	12	안내	(62)
3	산모	(92)	13	방문객	(61)
4	입실	(89)	14	관리	(61)
5	처리	(84)	15	불만	(59)
6	퇴실	(80)	16	시행	(58)
7	이송	(68)	17	고충	(55)
8	만족도평가	(66)	18	절차	(54)
9	확인	(66)	19	내용	(51)
10	작성	(63)	20	자료	(51)

[그림 Ⅳ-3-13] ‘Ⅳ. 감염예방관리’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표 Ⅳ-3-13〉 'Ⅳ. 감염예방관리'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Keyword (Frequency)	순위	Keyword (Frequency)
1	관리 (264)	11	세척 (90)
2	규정 (182)	12	작성 (86)
3	손위생 (176)	13	산모 (83)
4	소독 (171)	14	개인보호구 (83)
5	직원 (150)	15	필요 (81)
6	세탁물 (149)	16	교육 (77)
7	사용 (144)	17	감염 (76)
8	착용 (130)	18	물품 (75)
9	보관 (107)	19	세탁 (73)
10	점검 (93)	20	신생아 (72)

[그림 Ⅳ-3-14]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표 Ⅳ-3-14〉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Keyword (Frequency)	순위	Keyword (Frequency)
1	교육 (222)	11	시행 (62)
2	산모 (131)	12	신생아 (62)
3	자료 (104)	13	산후우울 (58)
4	모유수유 (86)	14	촉진 (57)
5	시간 (76)	15	작성 (49)
6	모자동실 (75)	16	활동 (42)
7	부모교육 (74)	17	기록 (42)
8	평가 (69)	18	모아애착 (38)
9	계획 (68)	19	규정 (37)
10	근거 (64)	20	이용 (33)

[그림 Ⅳ-3-15]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클라우드 결과

〈표 Ⅳ-3-15〉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출현빈도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Keyword (Frequency)	순위	Keyword (Frequency)
1	신생아 (253)	11	직원 (48)
2	산모 (112)	12	인식표 (46)
3	확인 (102)	13	태명 (46)
4	규정 (98)	14	아기 (41)
5	교육 (75)	15	발 (36)
6	기록 (62)	16	관리 (34)
7	이름 (58)	17	보관 (33)
8	식별 (56)	18	작성 (33)
9	안전관리 (55)	19	정보 (31)
10	이동 (51)	20	숙지 (31)

4. 공공산후조리원 부모교육 자료 지원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료를 지원하였다. 이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앞서 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의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교육은 산후조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부모교육 자료를 공급하였다.

본 사업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제공한 부모교육 자료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산후우울 관리, 양육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비율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양육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양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3년도 공공산후조리원 부모교육 자료 지원 절차는 [그림 Ⅳ-4-1]과 같다.

[그림 Ⅳ-4-1] 2023년도 공공산후조리원 대상 부모교육 자료 지원 절차

가.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및 수요조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모교육 자료 지원을 위해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을 조사하고, 각 산후조리원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모교육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모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특히 산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 책자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부모교육 자료 발굴 및 배포 전략을 수립하였다. 부모교육 자료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명단은 〈표 Ⅳ-4-1〉과 같다.

〈표 Ⅳ-4-1〉 2023년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번호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산후조리원
1	서울	송파구	지자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산후조리원
2	울산	북구	지자체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3	경기	포천시	지자체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4	경기	여주시	지자체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5	강원	삼척시	지자체	강원도삼척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
6	강원	철원군	지자체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7	강원	화천군	지자체	화천군공공산후조리원
8	강원	양구군	지자체	양구군공공산후조리원
9	충남	홍성군	지자체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
10	전남	강진군	지자체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11	전남	해남군	지자체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12	전남	완도군	지자체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13	전남	나주시	지자체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14	전남	순천시	지자체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15	경북	김천시	지자체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16	경북	울진군	지자체	울진군공공산후조리원
17	경남	밀양시	지자체	밀양공공산후조리원
18	제주	서귀포시	지자체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19	서울	서대문구	지자체	서대문구공공산후조리원(품애가득)

나. 부모교육 자료

첫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활용한 부모교육 자료는 여성가족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에 제작한 부모교육 매뉴얼이다. 해당 부모교육 매뉴얼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로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에는 5~6개의 주요 강의 주제와 강의용 PPT 자료, 그리고 해당 주제를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교육 자료는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게 강의 시간과 대상에 따라 내용을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부모교육 매뉴얼 13권 중 '5권 영아부모(여성가족부, 2017b)', '10권 아버지(여성가족부, 2017c)', '11권 가족특성별(여성가족부, 2017d)' 자료를 선별하여 인쇄 및 배포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별도로 배포하였고 활용 방법을 추가로 안내하였다.

[그림 Ⅳ-4-2] 부모교육 매뉴얼 책자

[그림 Ⅳ-4-3] 부모교육 주제, 교육내용, PPT 예시(영아, 아버지, 가족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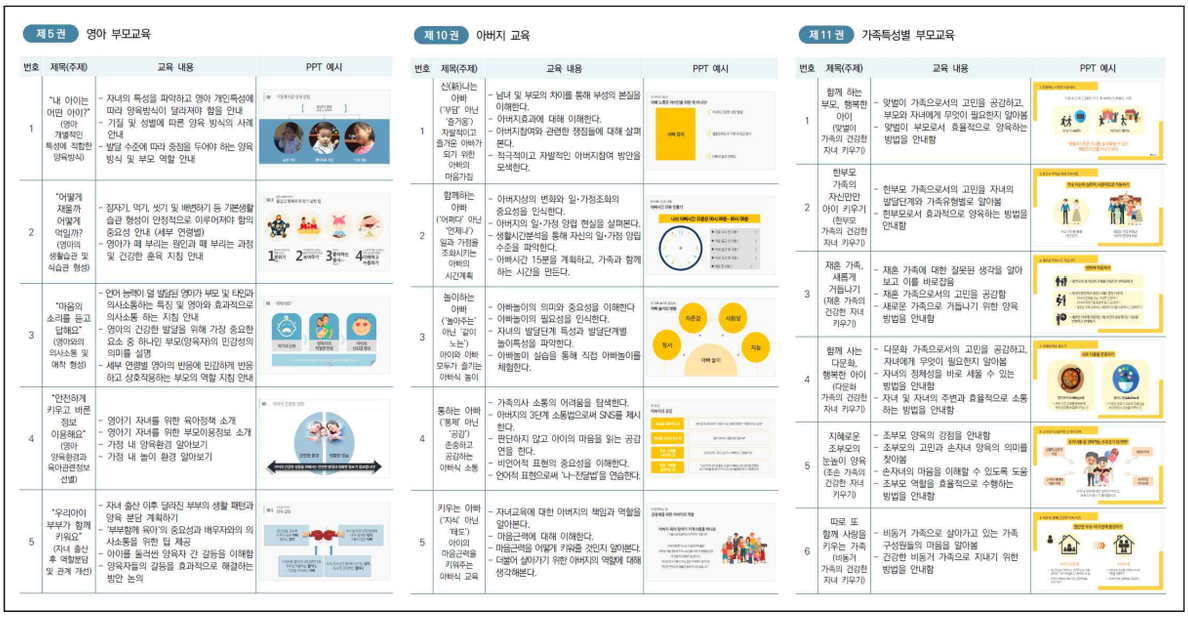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17a). 부모교육 매뉴얼 총론. p. 44, 49~50.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제공된 부모교육 자료는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로,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소책자이다. 이 소책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 형성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된 이 자료는 현장에서의 높은 호응도로 인해 추가 배포를 요청하는 산후조리원이 많았다. 이를 참고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배포하였으며 관련 PPT도 제공하였다.

[그림 Ⅳ-4-4]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 책자

세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제공된 부모교육 자료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이다. 이 자료는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Ⅱ):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조숙인 외, 2023) 수행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 책자는 청소년부부와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가 겪는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청소년부모들이 올바른 부모 역할 모델을 배우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Ⅳ-4-5] 청소년부모 육아지침서 책자

5. 요약 및 시사점

이상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준비와 수행내용 및 결과 부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컨설팅 사업 준비는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컨설팅 참여 기관의 모집을 위해 2023년 5월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전국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요조사를 시행하였다. 2023년 컨설턴트는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수간호사나 팀장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또는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간호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로서, 기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영역별 지표 및 산후조리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26명으로 모집되었다. 컨설턴트들은 교육을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실제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2023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외부인의 방문을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수립된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은 컨설팅 전 컨설턴트들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지참물품 및 수칙을 반복해서 안내하는 등 방역 지원을 철저히 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에도 '1~3차 컨설팅'과 '소그룹 컨설팅'의 두 가지 형태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이 수행되었다. 각각의 수행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3차 컨설팅의 목표 기관 수는 20개소였으나, 총 25개소가 모집되었다. 1차 컨설팅에는 20개소가 참여하고 2차에는 20개소, 3차에는 19개소가 참여하여, 1~3차 컨설팅을 모두 마친 산후조리원은 19개소였다. 위촉된 26명의 컨설턴트 가운데 1~3차 컨설팅에는 총 25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하였다.

1~3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 시작 전 대상기관에 운영현황표(산후조리원의 기본정보, 시설 및 이용 현황, 인력 현황 등이 포함)와 자체평가지(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를 서면 제공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턴트가 세 차례에 걸쳐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컨설턴트들이 1차, 3차 컨설팅 시 실시한 시범평가의 결과와 컨설턴트들이 매 차시 작성한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추이 분석을 통해 1~3차 컨설팅의 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 지표는 '3.1 시설 적정성(8.7점)', '1.1 인력 적정성(8.4점)', '5.5 운영철학(7.1점)'이며, 하위 3순위 지표는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1.2점)', '6.1 고객관리(2.5점)', '8.2 개인보호구 착용(2.5점)'으로 나타났다. 3차 시범평가의 경우 상위 3순위는 '3.1 시설 적정성(9.2점)', '14.1 신생아 건강평가(9.1점)', '15.2 신생아 수유(8.8점)', 하위 3순위는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4.2점)', '12.1 부모교육(4.2점)', '6.1 고객관리(4.4점)'로 나타났다. 즉, 1차 시범평가의 하위 3순위 중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와 '6.1 고객관리' 지표는 3차 시범평가 시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3차 컨설팅 시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특성과 추이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은 '8.1 손 위생(48회)',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49회)'였다. '8.1 손 위생' 영역의 경우, 1차 점수가 3.3점, 3차 점수가 7.7점으로 나타났다. 1차 점수는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3차 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의 경우 부족한 손 위생 영역을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의 관심도와 개선 의지에 따라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컨설팅 당시 해당 영역의

미비점으로 손 위생 관련 규정 부재, 손 소독제 제품 관리 미흡, 직원 및 산모 대상 손 위생 활동 수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공된 서식을 참조하여 손 위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약처 인증 손 소독제를 구입한 뒤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구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기로 합의된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손 소독제에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으나, 손 위생 방법만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합의하였다. 3차 컨설팅에서는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 손 소독제 물품 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직원의 손 위생 활동 수행이 관찰되었다.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영역에서 시범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1차 점수가 1.2점, 3차 점수가 4.2점으로 나타났다. 1차 컨설팅 시 미비점으로 모아애착 계획의 미수립,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촉진 활동 부재 등이 나타났다. 이에 개선과제로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자동실, 모유수유 촉진 활동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의 합의점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차 컨설팅 시에도 계획의 일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모아애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3차 컨설팅 기관에 대한 1차, 2차, 3차 결과에 관한 총 57개의 결과보고서(각 차수별로 19개)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육'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관리', '점검', '관리' 등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는 산후조리원에서 교육 및 행정적 관리가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 교육의 중요성, 효과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 그리고 정확한 문서 작성과 기록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차 컨설팅의 수행내용 및 결과 요약에 이어 소그룹 컨설팅의 수행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그룹 컨설팅의 경우 2023년도 컨설팅 목표 기관 수는 60개소였으나, 이보다 많은 65개소가 모집되었다. 소그룹 컨설팅은 총 6번에 걸쳐 서울(2회), 대구(1회), 창원(1회), 오송(1회), 광주(1회)에서 진행되었다.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료를 지원하였다.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을 조사하고, 각 산후조리원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모교육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모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특히 산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 책자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부모교육 매뉴얼'과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책자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V

2023년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사후 관리

01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02 만족도 조사 및 사후간담회 결과

03 컨설팅 참여 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기공모

04 요약 및 시사점

Ⅴ. 2023년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사후 관리

1.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가. 2023년 사전(1차 컨설팅) - 사후(3차 컨설팅) 효과 분석 결과

1~3차 컨설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시범평가 결과와 3차 시범평가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시범평가와 비교했을 때 3차 시범평가 지표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중 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의료기관 연계·이송, 운영철학, 고객관리, 급식관리, 부모교육과 같은 7개의 소영역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평가지표의 점수가 1차에 비해 3차 때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컨설팅 전과 비교해서 컨설팅 이후에 7개 소영역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 내용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Ⅴ-1-1 참조). 2019년도에는 2개의 소영역 지표(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2020년도에는 1개의 소영역 지표(인력 적정성), 2021년도에는 3개의 소영역 지표(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리더십 및 조직문화), 2022년도에는 4개의 소영역 지표(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리더십 및 조직문화,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를 제외하고는 컨설팅 이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할 때, 2023년도에는 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의료기관 연계·이송, 운영철학, 고객관리, 급식관리, 부모교육 영역의 지표 개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에서 7가지 소영역 지표의 점수 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1.1 인력 적정성'의 경우에는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8.4점, 3차에서 8.7점으로 다른 지표의 점수 증가 크기와 비교해 증가 폭이 미비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력 적정성 지표의 증가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지표가 가지는 특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개별 산후조리원의 경우 규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필수 고용 인력의 수가 정해지며 인력규모의 변화는 산후조리원의 예산규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둘째, '3.1 시설 적정성'은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8.7점, 3차에서 9.2점으로 다른 지표의 점수 증가 크기와 비교해 증가 폭이 작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 적정성은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 운영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한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주로 신생아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적정성 지표는 다른 지표들

에 비해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도 8.7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신생아실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5.2 의료기관 연계·이송'은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6.2점, 3차에서 8.0점으로 다른 지표의 점수 상향 크기와 비교해 상향 폭이 작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5.5 운영철학'은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7.1점, 3차에서 8.7점으로 점수가 상향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섯째, '6.1 고객관리'는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2.5점, 3차에서 4.4점으로 점수가 상향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섯째, '8.6 급식관리'는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4.5점, 3차에서 6.5점으로 점수가 상향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2.1 부모교육'은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2.6점, 3차에서 4.2점으로 점수가 상향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Ⅴ-1-1〉 2023년 1~3차 컨설팅 전·후 차이 검증 결과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균(표준편차)		*t* (3차-1차)
			1차	3차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4.8(2.3)	7.8(2.1)	4.2***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8.4(2.9)	8.7(3.3)	0.3
	2. 인력 전문성		4.3(2.7)	7.7(2.3)	4.1***
		2.1 종사자 채용·유지	3.6(3.2)	7.6(2.7)	4.1***
		2.2 종사자 교육·계발	4.6(2.9)	7.9(3.2)	3.3**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5.1(3.1)	7.6(2.4)	2.8**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6.0(2.0)	8.3(1.5)	4.1***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8.7(1.8)	9.2(1.5)	1.0
	4. 시설 안전성		5.0(2.7)	8.0(2.0)	3.9***
		4.1 설비관리	5.7(3.6)	8.4(2.0)	2.8**
		4.2 소방안전관리	5.1(2.9)	7.7(2.2)	3.1**
		4.3 낙상예방관리	2.8(4.1)	7.2(3.2)	3.8***
Ⅲ. 운영 및 고객관리			4.8(2.4)	7.5(2.0)	3.8***
	5. 운영관리		5.3(2.4)	8.2(1.9)	4.2***
		5.1 입·퇴실 관리	5.8(2.4)	8.6(1.6)	4.2***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6.2(3.3)	8.0(2.8)	1.9
		5.3 문서관리	5.1(3.5)	8.0(2.4)	3.0**
		5.4 방문객관리	4.3(3.0)	8.0(2.8)	4.6***
		5.5 운영철학	7.1(3.5)	8.7(2.3)	1.7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2.5(3.1)	4.4(4.1)	1.6
Ⅳ. 감염예방관리			3.7(2.7)	6.9(2.6)	4.0***
	8. 감염예방		3.4(2.7)	6.9(2.6)	4.1***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균(표준편차)		*t* (3차-1차)
			1차	3차	
		8.1 손 위생	3.3(2.8)	7.7(2.1)	5.4***
		8.2 개인보호구 착용	2.5(3.4)	6.4(3.8)	3.4**
		8.3 세탁물 관리	2.8(3.1)	6.2(3.5)	3.2**
		8.4 물품 소독·관리	3.2(2.1)	7.1(2.1)	5.8***
		8.5 환경관리	3.2(3.6)	7.6(3.2)	4.0***
		8.6 급식관리	4.5(3.8)	6.5(3.3)	1.8
		8.7 종사자관리	3.8(3.6)	6.8(3.8)	2.5*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5.5(3.5)	8.2(2.6)	2.6*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2.7(2.5)	4.9(3.1)	2.5*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4.9(3.3)	8.2(2.0)	3.7***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2(1.7)	4.2(3.7)	3.2**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2.6(3.6)	4.2(4.1)	1.2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5.3(2.2)	8.0(1.7)	4.3***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3.2(4.0)	7.1(3.1)	3.4**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6.8(2.4)	9.1(1.7)	3.4**
	15. 신생아 관리		5.4(2.2)	7.9(1.8)	3.9***
		15.1 위생관리	6.3(3.1)	8.3(2.1)	2.5*
		15.2 신생아 수유	6.7(2.1)	8.8(1.1)	4.0***
		15.3 안전관리	2.7(3.1)	6.1(3.2)	3.4**

*p<.05, **p<.01, ***p<.001.

평가지표에 따라 1차 대비 3차 컨설팅 간 점수 변동 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모두 1차 대비 3차 평가 점수의 상향이 발견되어 컨설팅을 받고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2019년~2023년 사전(1차 컨설팅) - 사후(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추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평균 점수 추이를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차 컨설팅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시범평가 점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가장 컨설팅의 효과가 컸던 영역은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운영 및 고객관리, 감염예방관리로 컨설팅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는 평균 4점 내외였으나 컨설팅 이후에는 거의 7점까지 상승하였다. 가장 개선이 어려웠던 영역은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이었다.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의 경우에는 2023년 1차 컨설팅에서는 2.66점, 2020년에서는 2.24점으로 점수가 매우 낮았었다.

[그림 Ⅴ-1-1] 2019~2023년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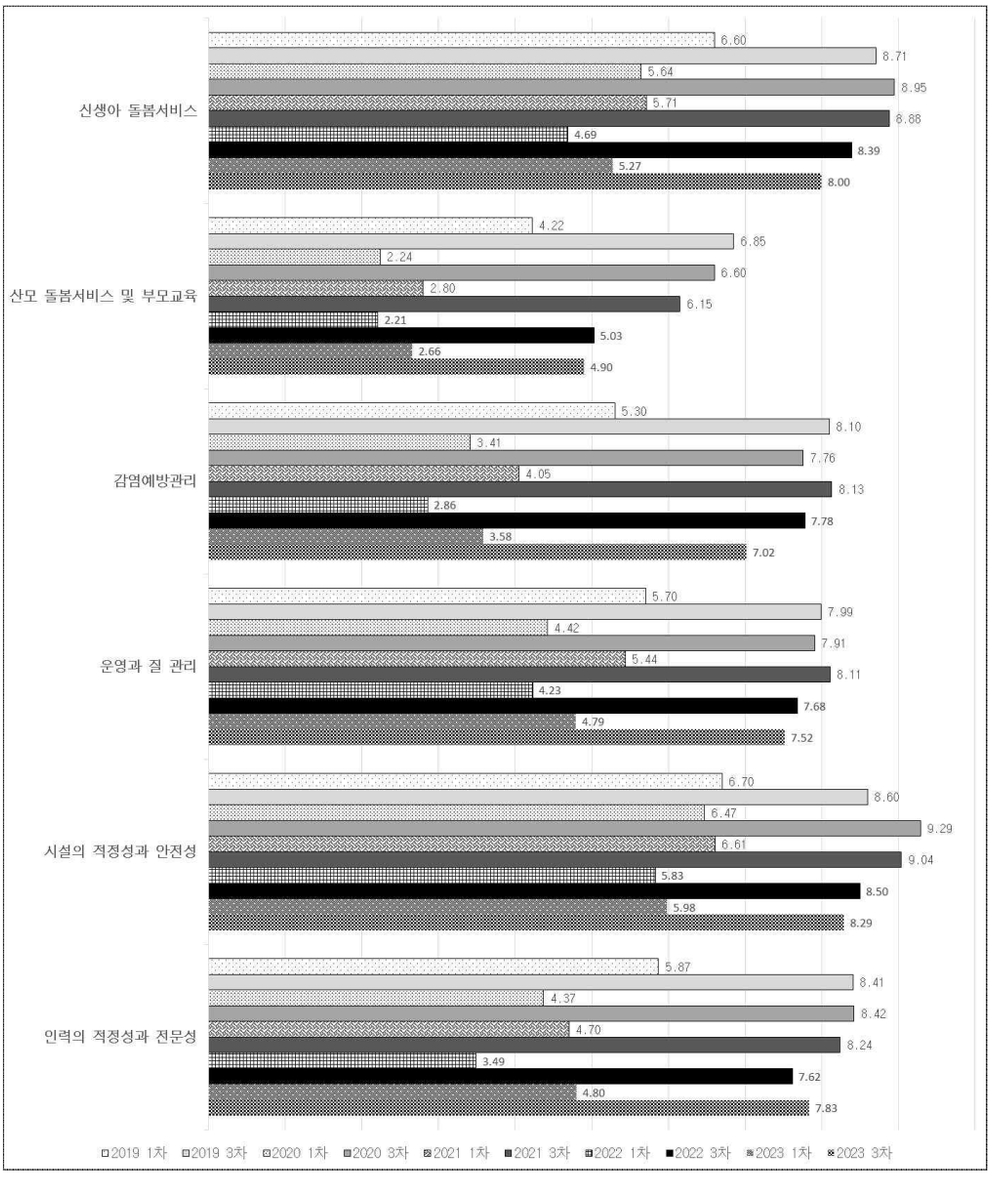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1~3차 컨설팅 시범평가의 모든 92개 항목 지표에 대해서 컨설팅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항목 지표는 총 6개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6개 지표는 다음 4개 소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력 적정성 영역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라는 1개 지표였다. 둘째, 시설 적정성 영역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3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운영 철학 영역에서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는 1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신생아 수유 영역의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라는 1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2〉 2019~2023년 1~3차 컨설팅 사전·사후 차이 검증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t* (3차-1차)
			1차	3차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8.5(2.9)	9.0(2.7)	1.5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3.4(4.1)	8.3(3.2)	9.5***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3.6(4.8)	8.5(3.6)	8.3***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4.1(4.1)	7.2(3.6)	6.0***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2.6(3.8)	6.3(4.0)	6.8***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3.2(3.7)	6.8(4.5)	6.4***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8.2(3.9)	9.5(2.2)	3.0**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3.6(4.6)	8.4(3.4)	8.5***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6.2(3.7)	9.4(1.7)	8.2***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8.7(2.7)	9.1(2.4)	1.2
		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8.2(3.9)	9.4(2.4)	2.7**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7.8(4.0)	8.5(3.5)	1.3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9.8(1.3)	9.9(1.0)	0.5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6(4.4)	8.1(3.6)	8.1***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7.5(4.2)	9.1(2.6)	3.4***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7.6(4.3)	9.4(2.3)	3.8***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7.6(3.8)	9.5(1.8)	4.7***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6.1(4.8)	9.3(2.5)	6.1***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4.5(4.6)	8.8(2.9)	8.2***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6.5(3.8)	8.4(2.7)	4.1***
		3.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4.6(4.3)	7.6(3.8)	5.2***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7.3(4.4)	8.6(3.5)	2.3*
4.3	낙상 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3.4(4.4)	8.0(3.7)	8.2***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2.7(4.1)	7.9(3.5)	9.7***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4.0(4.5)	8.5(3.2)	8.3***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9.6(1.9)	10.0(0.0)	2.0*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 기준을 게시한다.	8.4(3.7)	10.0(0.0)	4.6***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4.2(3.8)	7.8(3.3)	7.1***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6.0(4.4)	9.0(2.6)	6.2***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4.1(4.5)	8.3(3.5)	7.5***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7.6(3.8)	9.6(1.7)	5.0***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5(4.5)	7.9(3.9)	7.5***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5.9(4.2)	8.8(2.6)	6.1***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t (3차-1차)
			1차	3차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4.0(4.6)	8.3(3.4)	7.9***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5.5(4.3)	8.2(3.3)	5.1***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9(4.1)	8.8(2.7)	6.0***
5.5	운영 철학	1.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	7.1(3.5)	8.7(2.3)	1.7
6.1	고객관리	1.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2(2.7)	4.2(4.3)	6.0***
		2.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1.2(3.0)	2.6(4.0)	2.7**
		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3.2(3.9)	5.7(4.2)	4.3***
Ⅳ. 감염예방관리					
8.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3.6(4.5)	8.4(3.4)	8.6***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5.1(4.1)	8.1(3.1)	5.7***
		3.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3.1(4.3)	5.9(4.7)	3.9***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4.1(4.2)	7.6(3.6)	6.4***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6.5(3.8)	9.1(2.3)	6.1***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3.3(4.3)	8.3(3.4)	9.5***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2.7(3.9)	7.0(4.0)	7.9***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2.8(4.2)	7.8(3.8)	9.0***
		2. 세탁물을 관리한다.	3.2(3.9)	7.0(3.9)	7.0***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2(4.3)	7.8(3.7)	8.4***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3.4(3.8)	7.3(3.4)	7.9***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5.6(4.0)	8.2(2.9)	5.5***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1(4.3)	8.2(3.5)	9.5***
		2.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4.8(4.1)	8.6(2.7)	8.0***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2.7(4.2)	7.9(3.8)	9.0***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4.9(4.1)	6.6(4.0)	2.4*
		3. 식재료를 관리한다.	3.1(3.9)	5.2(4.3)	3.1**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3.4(4.0)	5.6(4.2)	3.1**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4.6(4.4)	7.5(3.6)	4.4***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5.3(5.1)	8.6(3.4)	3.3**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3.1(4.4)	8.0(3.7)	8.7***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4.4(5.0)	7.7(4.3)	5.1***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4.8(5.0)	8.1(3.9)	5.4***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2.9(4.3)	8.2(3.6)	9.8***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7.2(3.8)	9.6(1.5)	6.3***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6.0(4.1)	8.9(2.8)	6.1***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3.0(4.2)	7.1(4.0)	7.3***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2.8(4.2)	6.8(4.1)	6.9***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2.1(3.5)	3.7(4.1)	3.0**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3.4(4.0)	5.6(4.3)	3.9***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t* (3차-1차)
			1차	3차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2.0(3.6)	5.8(4.4)	6.8***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3.0(4.0)	5.9(4.3)	5.0***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3.3(4.1)	6.9(4.0)	6.4***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2.6(3.9)	6.1(4.3)	6.1***
		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2.5(3.9)	5.9(4.4)	5.8***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2.0(4.0)	4.1(4.9)	3.4**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3.0(4.2)	7.9(3.7)	9.1***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5.9(4.3)	8.7(2.9)	5.7***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인한다.	4.3(4.4)	7.9(3.5)	6.4***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7.1(4.1)	9.5(1.9)	5.7***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7.4(3.9)	9.4(2.2)	4.6***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5.4(4.8)	9.1(2.7)	7.0***
15.1	위생관리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3.3(4.5)	8.0(3.7)	8.3***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8.8(2.9)	9.7(1.6)	2.9**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2(4.5)	7.7(4.0)	7.5***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8.2(3.2)	9.5(1.8)	3.5***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7.1(3.3)	9.5(1.6)	6.8***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6.7(3.6)	8.3(2.9)	3.4***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9.4(2.5)	9.5(2.0)	0.6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9(4.3)	7.9(3.8)	9.0***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4.4(4.1)	6.8(3.5)	4.6***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5.1(4.4)	8.2(3.3)	5.8***

*p<.05, **p<.01, ***p<.001.

나. 2019년~2023년 산후조리원 통합평가 점수 및 등급별 분포

2019년~2023년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산후조리원 전체 시범평가 점수를 분석하였다. 2019년~2023년의 경우에는 1~3차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가 분석 대상이었으며, 2021년~2023년에는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산후조리원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1차와 3차를 개별 산후조리원으로 간주하여 총 305개 시범평가 점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2019년~2023년 시범평가 통합점수 자료를 통하여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전체 항목 및 필수, 정규, 시범평가 항목별로 평균 점수 및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조리원 92개 지표 전체에 대한 평균은 5.8점이었다.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24.3%, 6~8점 미만 24.3%, 4~6점 미만이 31.1%, 4점 미만이 20.3%였다. 둘째, 필수 40개 지표의 평균은 5.7점이었다. 필수 지표의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22.6%, 6~8점 미만 26.6%, 4~6점 미만 19.7%, 4점 미만 31.1%였다. 셋째, 정규 51개 지표의 평균은 5.9점이었다. 정규

지표의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25.2%, 6~8점 미만 23.3%, 4~6점 미만 22.3%, 4점 미만이 29.2%였다. 넷째, 시범 1개 지표의 평균은 7.9점이었다. 시범 지표의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63.2%, 6~8점 미만 0%, 4~6점 미만 31.6%, 4점 미만이 5.3%였다.

〈표 Ⅴ-1-3〉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

단위: %

구분	사례 수	평균(표준편차)	4점 미만	4~6점 미만	6~8점 미만	8~10점
전체	305	5.8(2.5)	20.3	31.1	24.3	24.3
필수	305	5.7(2.5)	31.1	19.7	26.6	22.6
정규	305	5.9(2.5)	29.2	22.3	23.3	25.2
시범	38	7.9(3.0)	5.3	31.6	0.0	63.2

다음으로,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서 제안한 시범평가 점수변환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개별 산후조리원 필수, 정규, 시범 지표의 평균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 평가점수를 산출하였고[19](이정림 외, 2020:11) 등급별(5등급: S, A, B, C, D) 기준 점수[20]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상위 점수에서 하위 점수 간 간격을 10점으로 설정하여 구분하였다(이정림 외, 2020:11). 또한 평가인증 방식을 선택할 시 기준점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등급별 최소 기준 점수별 탈락률을 산출하였다(이정림 외, 2020:11).

1~3차와 1일 방문 결과를 통합한 평균 평가점수는 56.9점이었고 최소값은 9.4, 최대값은 98.3점이었다. 1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7.3점이었으며 최소값은 9.4점 최대값은 95.0점이었다. 3차 컨설팅을 받은 기관으로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77.6점이었으며 최소값은 31.9점, 최대값은 98.3점이었다. 1일 방문 컨설팅을 받은 기관으로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6.7점이었으며 최소값은 12.1점, 최대값은 93.8점이었다. 1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47.3)와 1일 방문 컨설팅 평균 평가점수(46.7)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컨설팅 이전에는 100점 기준에서 절반 정도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Ⅴ-1-4〉 차수 별 평균 평가점수(가중치 적용)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차+3차+1일 방문	305	9.4	98.3	56.9	24.2
1차	110	9.4	95.0	47.3	21.4
3차	98	31.9	98.3	77.6	15.7
1일 방문	97	12.1	93.8	46.7	20.9

19) 통합 평가점수 산출시 가중치는 각각 필수 지표 6, 정규 지표 3.8, 시범 지표 0.2를 적용하였음.

20) 산후조리원 평가가 평가인증 방식인지, 또는 등급제 방식으로 진행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90점 이상~100점 미만은 S, 80점 이상~90점 미만은 A, 70점 이상~80점 미만은 B, 60점 이상~70점 미만은 C, 60점 미만은 D로 구분하였음(참고자료: 이정림 외, 2020: 11).

마지막으로 통합 평가점수별 등급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1차와 3차 컨설팅을 합산한 통합평가 점수의 분포를 확인하면 305개 평가점수 중 90점 이상인 비율은 11.1%, 80~90점 미만 11.5%, 70~80점 미만 12.1%, 60~70점 미만 11.8%, 60점 미만은 53.4%였다. 1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 기준으로는 90점 이상이 3.9%, 80~90점 미만 5.8%, 70~80점 미만 7.2%, 60~70점 미만 11.6%, 60점 미만 71.5%였다. 3차 컨설팅 기준으로는 90점 이상 26.5%, 80~90점 미만 23.5%, 70~80점 미만 22.4%, 60~70점 미만 12.2%, 60점 미만이 15.3%였다.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을 가정하여 통합 평가점수별 탈락률을 산출하였다. 전체 평가점수 305개를 대상으로 탈락률을 살펴보았다. 평가인증 기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탈락률은 88.9%였으며 80~90점 미만일 경우는 77.4%, 70~80점 미만일 경우는 65.2%, 60~70점 미만일 경우는 53.4%였다. 컨설팅 3차를 받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만 탈락률을 산출하면 기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는 73.5%, 80~90점 미만일 경우는 50.0%, 70~80점 미만일 경우는 27.6%, 60~70점 미만일 경우는 15.3%였다.

〈표 Ⅴ-1-5〉 컨설팅 통합 평가 점수 등급별 분포

평가 점수	등급	컨설팅 평가								
		합계			1차+1일 방문			3차		
		빈도	비율	점수별 탈락률	빈도	비율	점수별 탈락률	빈도	비율	점수별 탈락률
합계										
90점 이상	S	34	11.1	88.9	8	3.9	96.1	26	26.5	73.5
80점~90점 미만	A	35	11.5	77.4	12	5.8	90.3	23	23.5	50.0
70점~80점 미만	B	37	12.1	65.2	15	7.2	83.1	22	22.4	27.6
60점~70점 미만	C	36	11.8	53.4	24	11.6	71.5	12	12.2	15.3
60점 미만	D	163	53.4		148	71.5		15	15.3	

주: 본 분석 결과는 2019~2023년 시범평가 결과를 통해 모의 분석한 결과로 구체적인 평가인증 통과 점수는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만족도 조사 및 사후간담회 결과

가. 컨설팅 사후 만족도 분석 결과

1) 1~3차 컨설팅 사후만족도 분석 결과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9개소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 문항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컨설팅 세부내용(컨설팅 내용, 컨설턴트 역량/전문성, 규정 및 서식사례집, 컨설팅 소요시간,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 컨설팅 주기(한 달 간격), 컨설팅 횟수(3회)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19개소의 산후조리원 중 19개소(100%) 산후조리원

이 사후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점(4점 만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97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20년, 2021, 2022년도 컨설팅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각 3.4점, 3.5점, 3.8점, 3.8점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도 전년 대비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의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컨설팅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

2023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만족도를 세부내용별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8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4.0점으로 전년 3.8점에서 상승했으며 2019년부터 컨설팅 세부내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이었다. 규정 및 서식사례집에 대한 만족도(3.7점)와 컨설팅 횟수(3.7점)도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높아진 항목이었다.

반면,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는 3.7점, 한 달 간격으로 진행된 컨설팅 주기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전년 대비 만족도가 다소 낮아졌다. 모든 컨설팅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88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만족도가 비교적 낮아진 항목 즉, 컨설팅 주기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간격의 컨설팅 주기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보다 낮아진 이유를 파악하여 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컨설팅 주기로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Ⅴ-2-1〉 2019~2023년도 1~3차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컨설팅 세부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컨설팅 전반적인 만족도	1) 컨설팅 전반적인 만족도	3.4	3.5	3.8	3.8	3.9
컨설팅 세부내용	2) 컨설팅 내용	3.5	3.5	4.0	3.8	3.8
	3)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3.7	3.8	3.9	3.8	4.0
	4) 규정 및 서식 사례집	3.7	3.8	3.6	3.6	3.7
	5) 컨설팅 소요 시간	3.4	3.4	3.9	3.7	3.7
	6)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	-	-	3.7	3.8	3.7
	7) 컨설팅 주기(한 달 간격)	3.4	3.5	3.9	3.7	3.5
	8) 컨설팅 횟수(3회)	3.6	3.6	3.8	3.5	3.7

주: 4점 만점

다) 컨설팅 영역 만족도

컨설팅 영역 중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을 조사하였다. 2023년도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은 감염예방관리 영역으로 36.8%의 산후조리원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21.1%),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15.8%),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10.5%), 운영 및 고객관리(10.5%), 신생아 돌봄서비스(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이 가장 필요한 컨설팅 영역은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으로 36.8%의 산후조리원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26.3%)이며,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운영 및 고객관리, 감염예방 관리는 모두 10.5%로 동일하게 응답되었고,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은 5.3%의 산후조리원이 응답해 컨설팅 영역 중 개선의 필요성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Ⅴ-2-2〉 2023년도 1~3차 컨설팅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

문항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운영 및 고객관리	감염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	21.1	10.5	10.5	36.8	15.8	5.3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	26.3	10.5	10.5	10.5	36.8	5.3

라) 기타

(1) 적절한 컨설팅 주기 및 컨설팅 횟수에 대한 의견

앞서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세부내용별 만족도에서 '컨설팅 주기'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비교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절한 컨설팅 주기를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1달 주기와 2달 주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 47.4%로 동일하게 응답되어 1달~최대 2달까지의 주기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달 주기가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다음 차수의 컨설팅 준비에 다소 부족한 시간일 수 있으나, 컨설팅 주기가 길어질 경우 지적사항에 대응하고 다음 차수 컨설팅을 준비하는데 있어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다음 차수의 컨설팅이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대 1~2달 정도 내에서 컨설팅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적절한 컨설팅 횟수는 현재의 3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57.9%), 2회(26.3%), 기타(15.8%)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Ⅴ-2-3〉 적절한 컨설팅 주기와 컨설팅 횟수

단위: 명, %

컨설팅 적절한 주기			적절한 컨설팅 횟수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1달	9	47.4	2회	5	26.3
2달	9	47.4	3회	11	57.9
3달	1	5.3	기타	3	15.8

주: '기타'는 4~5회, 5회, 6회 등

(2) 컨설팅을 받으며 어려웠던 점

컨설팅을 받으며 담당자들이 느꼈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각 산후조리원에서 컨설팅을 받고 준비하였던 담당자들은 산후조리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에 컨설팅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과 컨설팅 당일의 응대, 컨설팅 후 개선 작업 등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의 어려움과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기관 현실에서의 적용의 한계, 익숙하지 않은 문서 및 서류 작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주기인 한 달 안에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도 피력하였다.

(3) 컨설팅을 받으며 좋았던 점

컨설팅을 받으며 담당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을 수행함에 따라 부담과 어려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나, 도움이 되고 좋았던 점 또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을 받고 개선 작업을 수행했던 각 산후조리원의 담당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게 되면서 산후조리원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고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좋았던 점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감염관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강화되었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이 높아져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컨설팅을 준비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익숙하지 않은 서류 작업 등이 부담이 되었으나,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운영 전반이 체계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산후조리원의 운영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컨설팅이 목표한 바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4) 기타 의견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준비하고 받았던 각 산후조리원의 컨설팅 준비 담당자들은 이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컨설팅 주기를 2달 간격으로 늘리거나 스케줄 조정, 교육자료·필요자료 등에 대한 공유를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개선이 어려운 건물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참고하거나 각 도에서 소방, 실내공기질 관리 등의 부문에서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 컨설턴트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되었다.

(5) 희망하는 인센티브

산후조리원 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평가를 준비하고 받는 것은 분명 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결과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도움이 되지만, 평가 준비를 위해 산후조리원의 업무가 늘어나고 산후조리 업무와 동시에 평가를 준비하며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향후 실시될 산후조리원 평가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산후조리원 평가를 받은 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특정 평가 등급 이상 또는 기준 점수 충족 시)될 경우'를 가정해 가장 주요하게 희망하는 인센티브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산후조리원들은 평가 참여 기관에 대해 일종의 '인증서'나 평가에 참여한 기관임을(혹은 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기관이라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현판' 등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상품성을 어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업 성과(경제적, 물질적)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육 지원,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컨설팅 받은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평가 주기를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늘려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컨설팅 참여 경험을 평가에 차별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평가 참여 기관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2) 소그룹 컨설팅 사후만족도 분석 결과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한 60개소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만족도 조사 문항은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 전문성, 컨설팅 교육 시간 적절성, 컨설팅 교육 장소 및 환경, 질의/응답에 대한 문항이었다. 60개소의 산후조리원 중 58개소(96.7%)의 산후조리원이 사후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2023년도 산후조리원 소그룹 컨설팅 만족도를 세부내용별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7점,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4.8점으로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았으며, 컨설팅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4.6점, 컨설팅 교육 장소 및 환경은 4.5점, 질의/응답에 대한 만족도는 4.6점이었다.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모두 90점 이상으로, 2023년도에 소그룹으로 수행한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Ⅴ-2-4〉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컨설팅 세부내용	평균 점수
1) 컨설팅 내용	4.7
2)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4.8
3) 컨설팅 교육 시간	4.6
4) 컨설팅 교육 장소 및 환경	4.5
5) 질의/응답	4.6
전체 평균	4.7

주: 5점 만점

한편, 소그룹 컨설팅에 대한 회차별·세부내용별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회차별로는 2회차(대구), 3회차(창원), 5회차(오송)에서의 만족도가 평균 4.8점으로 가장 높았고, 4회차(서울)이 4.7점, 6회차(광주) 만족도가 4.6점, 1회차(서울) 만족도가 4.3점 순으로 집계되어 회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세부내용별로는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4.5점에서 5.0점 사이로 세부내용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세부내용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은 '컨설팅 교육 장소 및 환경'에 대한 것으로 지역별로 최저 4.0점~4.9점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향후 소그룹 컨설팅을 추진 시에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Ⅴ-2-5〉 2023년도 소그룹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회차별)

컨설팅 세부내용	1회차 [서울]	2회차 [대구]	3회차 [창원]	4회차 [서울]	5회차 [오송]	6회차 [광주]
1) 컨설팅 내용	4.3	5.0	4.7	4.7	4.9	4.8
2)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4.5	5.0	4.9	4.7	5.0	5.0
3) 컨설팅 교육 시간	4.1	5.0	4.8	4.7	4.9	4.5
4) 컨설팅 교육 장소 및 환경	4.2	4.2	4.9	4.6	4.6	4.0
5) 질의/응답	4.2	5.0	4.7	4.7	4.9	4.5
전체 평균	4.3	4.8	4.8	4.7	4.8	4.6

주: 5점 만점

소그룹 컨설팅에 대한 기타 의견을 살펴본 결과, 컨설팅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함이 표현되기도 했으며, 소규모 컨설팅에 실무자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의견, 건의 사항으로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달라는 의견, 컨설팅 준비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나. 사후간담회 결과

1) 컨설팅 사업 참여 기관 사후간담회 결과

2023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종료된 후 1~3차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사후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사후간담회에서는 컨설팅 경험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논하였다. 사후간담회에는 1~3차 컨설팅에 참여하여 3차례의 컨설팅을 모두 완료한 19개소 산후조리원 중에서 수도권 3개소, 지방 2개소 총 5개소 산후조리원의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담당자들은 1~3차 컨설팅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으며, 초기 준비과정에서의 막막함, 직원과의 갈등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차 컨설팅을 거치며 산후조리원 운영의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컨설턴트들의 세심한 컨설팅과 산후조리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배려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다.

향후 컨설팅 및 평가 개선 의견으로는 지방도시 인력 채용의 어려움, 교육비 부담,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에 대한 산전교육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병원에서의 산전교육과 산후조리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컨설팅 차수 증가와 컨설팅 간 개선 시간 확대, 평가 받은 기관에 대한 구체적 혜택 안내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Ⅴ-2-6〉과 같다.

〈표 Ⅴ-2-6〉 컨설팅 참여 기관 사후간담회

일시	2023. 11. 30(목), 14:00-16:00
참석자	2023년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실무자 7명
안건	컨설팅 수행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논의된 내용	○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경험 공유 - 1~3차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이 점차 개선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함. - 특히 만실로 인한 바쁜 상황에서도 담당 컨설턴트의 이해와 지원 덕분에 컨설팅 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음. - 1차 대비 3차 컨설팅 시 지적 사항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통해 컨설팅의 효과를 체감함. - 컨설팅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낌. ○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지방 도시 산후조리원의 인력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컨설팅 간격을 늘려 개선 기간 확대(예: 약 2개월)를 제안함. -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에 대한 산전 교육의 중요성 강조 및 관련 체계 마련 필요성을 지적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응급 상황 대비 병원 이송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함. -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금 또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제기함. - 평가 받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 제안 필요함. - 평가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 컨설팅 차수 증가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며 차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함.

2)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결과

2023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컨설턴트 대상 사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도 컨설턴트 사후간담회에 참석한 컨설턴트는 총 22명이었으며, 컨설턴트 사후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산후조리원들이 컨설팅 과정에서 수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1-3차 컨설팅을 거치는 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력 적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서류상으로는 법적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들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거부 경향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산후조리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각심 감소와 그에 따른 감염관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손 위생과 방문객 관리의 미흡함, 분무용 소독제 사용의 위험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분무용 소독제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과 세탁물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세탁실 환경의 청결 문제와 세탁물 관리 체계의 부재 또한 도전과제로 남아있음을 언급했다.

다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후간담회에서는 여러 추가적인 제안들이 나왔다. 컨설팅 참여 전 산후조리원에 대한 동의서나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원활하고 질 높은 컨설팅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후조리원 간의 견학과 평가 시 혜택 제공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 〈표 V-2-7〉과 같다.

〈표 Ⅴ-2-7〉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일시	2023. 11. 17(금) ~ 2023. 11. 18(토). 12:00~15:00
참석자	2023년 컨설턴트 22명
안건	컨설팅 수행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논의된 내용	○ 영역별 컨설팅 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Ⅰ-1-1. 인력 적정성] - 법적 인력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 간호사 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기준 준수는 되지만 실제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Ⅱ-3-1. 시설 적정성] - 도면상에는 사전관찰실이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실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사전관찰실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사전관찰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신생아 한 명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등의 조정이 필요함. [Ⅲ-5-3. 문서관리] - 현장에서 문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문서 작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보건소와 산후조리원의 서류가 별도로 관리되어 불편함을 초래함. 평가 관련 일괄적인 전달 및 정책 공유가 필요함. [Ⅲ-5-4 방문객 관리] - 코로나19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방문객 관리대장의 관리가 소홀해짐.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 [Ⅳ-8-1. 감염예방: 손 위생] - 코로나19 경각심 완화로 인해 손 위생 및 감염 관리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짐.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함. - 분무용 소독제 사용의 위험성과 낮은 소독 효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또한, 산모에게 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손 소독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 손 소독제에 유효기간이 없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었으며, 대용량 손 소독제 사용 시 유효기간 설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Ⅳ-8-3. 세탁물 관리] - 세탁실 환경이 청결하지 않고, 오염된 세탁물과 깨끗한 세탁물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교육과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세탁물 관련하여 별도의 수집 장소가 없는 곳도 있음. 세탁 담당 직원이 산모 방에서 직접 세탁물을 수거하는 방식에 대한 점수 부여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함. [Ⅳ-8-4. 물품 소독·관리] - 직원들이 소독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해 소독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함. [Ⅳ-8-5. 감염예방: 환경관리] -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외래 방문객, 산모, 신생아 등과 공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Ⅳ-9-1. 감염관리] - 서명 관련하여 명확한 표준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건강관리책임자가 위임한 사람도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 마련이 필요함. [Ⅴ-10-1. 산모 건강평가] - 난임센터에서 모바일로 진행하는 산후우울증 검사 결과가 산후조리원에 공유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결과 공유가 어려움. -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사 후 검사지를 회수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함.

[V-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 현장에서 산모들의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에 대한 거부반응이 큼. 이에 따른 평가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노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관련 평가가 '상' 등급을 받기 어려움. 국가적인 홍보 필요성 및 시범 항목이나 가점 항목으로의 개선 제안함.

[VI-13-1. 신생아 확인]
- 인식표 착용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병상수가 많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팔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산모 수에 따라 산모팔찌 규정 도입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VI-15-2 신생아 수유]
- 셀프수유 문제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간호사 인력 문제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음.
- 유축한 모유 병에 마킹이 되지 않아 모유가 섞일 위험이 있음.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

[기타의견]
- 대표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 운영책임자의 중도 사직 문제가 있으므로 컨설팅 참여 전 동의서 수령이 필요함.
- 컨설팅 시작 전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령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컨설팅 시작 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된 곳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류 준비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함.
- 컨설팅 기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산후조리원이 많으므로, 산후조리원 설명회에 참석한 원장만이 컨설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있음.

- 현장에서는 다른 산후조리원의 운영 방식을 견학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음.
- 부모교육 길라잡이 책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음.
- 평가 시 인력 및 현금 지원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감염관리,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 평가자 간의 평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컨설턴트 평가의 표준화와 이중평가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리 필요함.
- 팀원 및 팀장 간의 1-3차 컨설팅에 대한 내용 공유와 의견 교환을 위한 소통 채널 마련 필요함.
- 신규 컨설턴트의 참관 횟수 증가와 팀원들이 1-3차 컨설팅 과정 전체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후 산후조리원에 차수별 피드백 제공이 필요함.

3. 컨설팅 참여 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기공모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2018년 시범평가 사업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모유수유 및 모아애착 평가항목을 우수하게 시행한 기관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향후 시행될 산후조리원 인증평가를 받는 기관들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9년부터 시작된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서는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인센티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표 Ⅴ-3-1〉과 같다.

〈표 Ⅴ-3-1〉 2019년~2022년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년도	인센티브 종류	세부 내용
2019	1) 낙상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2) 손 씻기 포스터 배포 3) 부모교육 제공 (전문 강사 파견)	• 낙상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적절한 낙상예방 안내문이나 스티커가 부족하여 이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따라, 일부 기관들은 1차 컨설팅 이후 자체적으로 낙상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용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포스터의 배포를 요청했음. 낙상예방 포스터의 내용은 평가기준을 토대로 수석컨설턴트들의 자문을 받아 연구진 회의를 통해 구성되었음. • 손 씻기 포스터 배포 -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가 산후조리원에 배포되었으나, 실제 손 위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면대 근처에 비치하거나 게시판에 부착된 경우가 많지 않았음. 이에 해당 포스터를 인쇄하여 컨설팅 대상 기관을 포함한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하였음. • 부모교육 제공(전문 강사 파견) - 총 6명의 부모교육 강사가 선정되어,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음. 이 교육은 사전에 논의된 진행 방법과 제작된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12월 한 달 동안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16개 컨설팅 참여 기관에서 실시하였음.
2020	1) 부모교육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부모교육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배경: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서 실시된 현장 방문 부모교육의 만족도가 높았음.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부모교육을 위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계획함. - 집필진 구성: 소책자의 집필진으로는 2019년 부모교육 자료 원고 작성에 참여한 4명의 컨설턴트와 아동학과 교수 1명, 산부인과 교수 1명이 포함되었음.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일러스트 작가가 삽화와 표지 디자인에 참여함. - 배포 과정: 부모교육 소책자는 산후조리원의 산모실에 비치될 수 있도록, 산모실의 정원수에 맞추어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음.
2021	1) 방문객 출입제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2)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	• 방문객 출입제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배경: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방문객 출입제한 포스터를 제작하였음. - 제작 과정: 포스터의 초안은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하였음. - 내용 및 활용: 포스터는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확산 시 산후조리원 출입을 제

년도	인센티브 종류	세부 내용
		한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5.4 방문객 관리'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 - 2020년도에 산후조리원 컨설팅 대상 기관에 부모교육 소책자를 배포하였을 때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산모실 수에 맞춰 배포된 책자에 대해 추가 배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 - 산후조리원 산모실 수에 맞춰 책자를 배포하였는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추가로 배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 -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21년도에는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에 다시 한 번 부모교육 소책자를 배포하였음.
2022	1) 낙상예방 포스터 배포 2) 부모교육 제공 3)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	• 낙상예방 포스터 배포 • 부모교육 제공(전문 강사 파견) - 강사 선정 및 교육 진행: 총 5명의 전문 부모교육 강사를 선정하여,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에 각각 1회의 부모교육을 제공하였음.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파견은 2019년도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기관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잠정 중단되었음. 2022년 하반기 코로나 확산세 감소에 따라 현장방문 부모교육을 재도입하였음. - 교육 자료: 부모교육에서는 표준화된 강의를 위해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 자료집을 기본 교재로 사용함. - 교육 시기: 부모교육은 1~3차 컨설팅이 종료된 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음. •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

2023년도에는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낙상예방 포스터를 배포하였으며, 산모 손 위생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배포되었던 부모교육 소책자(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를 제공하였고, 부모교육 전달자를 위한 책자 및 강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제공

1) 낙상예방 포스터 배포

2023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포스터(산모용·신생아용)'를 배포하였다. 이 포스터는 산후조리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3 낙상예방관리' 평가항목에 포함된 낙상예방 안전점검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낙상예방 포스터에는 산모와 신생아가 주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낙상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을 산모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산모용 포스터는 '바닥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기', '수면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 '야간조명 사용하기',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에 맞는 신발 착용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생아용의 경

우, ‘아기 이동 시에는 이동형 아기 침대로 이동하기’, ‘아기를 안은 채 다른 일 하지 않기’, ‘낙상 위험이 있는 곳에 아기를 혼자 두지 않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포스터는 2019년에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낙상예방관리 규정을 근거로 제작했으며, 2023년에는 추가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2022년에는 A4 크기로 인쇄하여 배포하였으나, 현장에서 더 작은 크기의 포스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에는 A5 크기로 추가 인쇄하여 컨설팅 대상 기관에 배포하였다. 구체적인 포스터 내용은 아래 [그림 Ⅴ-3-1]에 제시하였다. 또한, 낙상예방 포스터는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Ⅴ-3-1] 낙상예방 포스터(산모용, 신생아용)

2) 산모 손 위생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산모 손 위생 포스터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8.1 감염예방: 손 위생' 항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산모 손 위생이 필요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의 손 위생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포스터에는 산모의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음식 먹기 전·후’, ‘코를 풀거나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신생아 접촉 전·후’,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기저귀 교환 전·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각적 효과를 통해 손 위생의 중요성과 적절한 시점에 대한 정보가 산모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 포스터는 A4 및 A5 크기로 각각 인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포하였다. 포스터의 구체적 내용은 [그림 Ⅴ-3-2]에 제시하였다.

[그림 Ⅴ-3-2] 산모 손 위생 포스터

3) 부모교육 자료 제공

부모교육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9년에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강사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산모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더 많은 산모들에게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교육 소책자를 제작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2021년에는 이 소책자를 추가 인쇄하여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에 배포하였다.

2022년에는 2019년의 현장 부모교육과 2020년, 2021년의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의 긍정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현장에 파견하고, 소책자를 함께 배포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우려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했으며, 1회 방문 부모교육은 해당 시기에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적은 수의 산모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후조리 기간 동안 부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산후조리원 부모교육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 및 개발하여 이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각 산후조리원에서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가)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부모교육 소책자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는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에 추가 인쇄하여 배포하

였다. 이 소책자는 신생아와 산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생아의 돌봄과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자의 목차는 'Ⅰ. 아기와 관계 형성하기', 'Ⅱ. 신생아 돌보기', 'Ⅲ. 신생아 건강관리', 'Ⅳ. 산모 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아기 사이의 유대감 형성과 관계 발달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모와 아기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아기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신생아의 기본적인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언과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소책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산후조리원에 산모실 수에 맞춰 소책자를 배포하였다.

[그림 Ⅴ-3-3] 부모교육 소책자 표지 및 목차

나) 부모교육 강의 자료 제공

2023년에 산후조리원 부모교육 담당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여성가족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에 제작한 부모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이 매뉴얼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이다. 매뉴얼은 총론을 포

함한 전반적인 부모교육 개론과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예비부모, 자녀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내용 등 총 13권(총론 + 각론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매뉴얼에는 주요 강의 주제가 5~6개 포함되어 있으며, 강의를 위한 PPT 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각 권을 대표하는 주제를 담은 5분 내외의 동영상도 개발되었다. 이 자료는 모듈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강의자가 강의 시간과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서는 부모교육 매뉴얼 13권 중 '5권 영아부모(여성가족부, 2017b)' 자료를 선택하여 인쇄 및 배포하였다. '영아부모' 관련 교육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부모교육 사이트 [여성가족부-좋은부모 행복한 아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인쇄된 책자와 함께 부모교육 강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PPT와 부모교육 매뉴얼, 동영상을 포함하는 모듈 형식의 강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자료는 산후조리원에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산모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Ⅴ-3-4] 부모교육 매뉴얼 표지 및 목차(영아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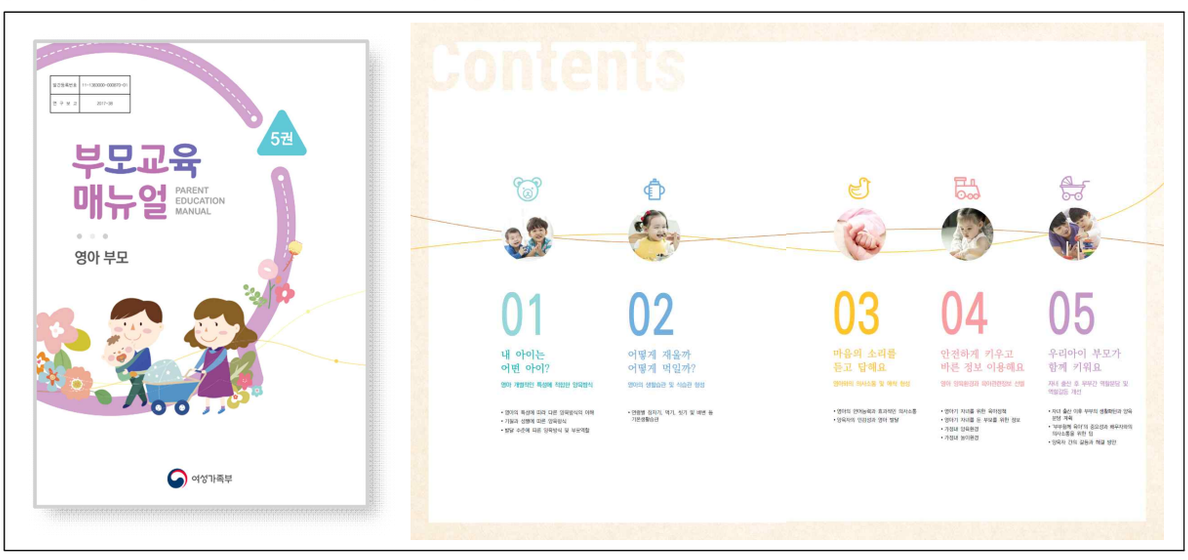

〈표 Ⅴ-3-2〉 부모교육 강의용 PPT 주제 및 제목(영아부모)

권	대상	주제	PPT 제목
5권	영아부모	1. 영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합한 양육방식	- 내 아이는 어떤 아이?
		2. 영아의 생활습관 형성 및 식습관 형성	- 어떻게 재울까 어떻게 먹일까?
		3. 영아와의 의사소통 및 애착형성	- 마음의 소리를 듣고 답해요.
		4. 영아 양육환경과 육아관련 정보 선별	- 안전하게 키우고 바른 정보 이용해요.
		5. 자녀 출산 후 부부간 역할분담 및 역할갈등 개선	- 우리아이 부모가 함께 키워요.

[그림 Ⅴ-3-5] 부모교육 강의용 PPT(영아부모)

나.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전은 컨설팅 사업이 시행된 2019년부터 진행되어 2021년을 제외하고 2023년도까지 매년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기공모전 대상과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표 Ⅴ-3-3〉과 같다.

〈표 Ⅴ-3-3〉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

년도	대상	응모 및 시상
2019	-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 컨설턴트	• 산후조리원 부문 - (응모)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12명 - (시상) 산후조리원 부문 6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 컨설턴트 부문 - (응모) 컨설턴트 14명 - (시상) 컨설턴트 부문 11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2020	-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 컨설턴트	• 산후조리원 부문 - (응모)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10명 - (시상) 산후조리원 부문 6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 컨설턴트 부문 - (응모) 컨설턴트 11명 - (시상) 컨설턴트 부문 11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2021	-	-
2022	-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 산후조리원 부문 - (응모)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6명 - (시상) 산후조리원 부문 6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2023	-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 산후조리원 부문 - (응모)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7명 - (시상) 산후조리원 부문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1) 대상 및 목적

2023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1~3차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이 공모전의 목적은 컨설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수기공모전의 주제는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산후조리원 원장, 건강관리책임자 등이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과 전반적인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수기공모전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와 겪었던 어려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이러한 공모전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수기공모 진행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들에 수기공모전 안내문을 배포하여 수기공모전 참여를 독려하였다. 산후조리원 원장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등으로서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이나 전반적인 소감을 A4용지 기준 2매 내외로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응모자들에게는 ① 수기공모 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2차 저작물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접수 기간은 11월 1일(수)부터 11월 14일(화)까지였고,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9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수기공모전에 참여하였다.

3) 수기공모 결과

수기공모전 결과, 19개 참여 기관 중 7명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응모하였고, 심사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7명이 참여했다. 평가 기준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활용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주제 적합성은 경험을 생생하게 담은 내용, 컨설팅 사업 수행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완성도에서는 내용의 충실성과 구성의 완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성에서는 향후 사업 홍보 효과 및 전달 적합성, 향후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긍정적 인식 확산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심사 기준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여, 11월 30일에 컨설팅 대상 기관 사후간담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제출된 수기들은 대부분 처음에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가졌으나, 참여 과정에서 만족감과 산후조리원 질 개선에 따른 자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참여자들은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과 운영 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느꼈으며, 직원들의 태도와 산후조리원 환경이 개선되어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의 안정성 확보와 현장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컨설팅 사업의 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1~3차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팀장으로서 긴장과 도전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규정 마련과 문서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 환경과 시설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직원들의 자신감과 서비스 표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인천 A산후조리원)

"처음 컨설팅을 준비하며 건강관리책임자로서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변화를 경험하며 차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모동왕'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간 애착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며, 보다 본질적인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경기 B산후조리원)

"부서 이동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컨설팅에서 제공해주신 평가기준집과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보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제주 C산후조리원)

4. 요약 및 시사점

우선 컨설팅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23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1차와 3차의 시범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의료기관 연계·이송, 운영철학, 고객관리, 급식관리, 부모교육과 같은 7개 소영역 지표를 제외한 모든 평가지표의 점수가 1차 평가 점수에 비해 3차 평가 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1차 평가 점수 대비 3차 평가 점수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모든 지표에서 1차 평가 점수 대비 3차 평가 점수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점수 변동은 아니더라도 컨설팅을 통해 단시간 내 개선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평균 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차 컨설팅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시범평가 점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92개 지표 중 86개 지표에서 1차시 평가 점수에 비해 3차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컨설팅 사전-사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드러나지 않은 지표는 총 6개로 인력 적정성 영역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의 1개 지표, 시설 적정성 영역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의 3개 지표, 운영 철학 영역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의 1개 지표, 신생아 수유 영역의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의 1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컨설팅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영역 중 인력과 시설 영역의 경우 평가 기간의 단시간동안 개선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사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6개

지표의 경우 1차 시범평가 점수가 모두 7~9점대의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지표라는 점도 감안해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9년~2023년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 전체(1~3차 평가의 경우 1차와 3차 평가를 개별 평가로 간주하여 분석)의 시범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92개 지표 전체의 평균은 5.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 정규, 시범평가 항목별로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필수 40개 지표의 평균은 5.7점, 정규 51개 지표의 평균은 5.9점, 시범 1개 지표의 평균은 7.9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필수, 정규, 시범지표의 평균에 각각 필수 지표 6, 정규 지표 3.8, 시범 지표 0.2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 평가점수를 산출한 결과, 1~3차 및 1일 방문 결과를 통합한 평균 평가점수는 56.9점으로 나타났으며, 1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7.3점, 3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77.6점이었다. 1일 방문 컨설팅을 받은 기관으로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6.7점으로 1~3차 컨설팅의 1차 컨설팅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컨설팅 이전에는 100점 기준 절반 정도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범평가 점수의 범주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와 3차 컨설팅을 합산한 통합평가 점수의 경우 305개 평가 점수 중 90점 이상 11.1%, 80~90점 미만 11.5%, 70~80점 미만 12.1%, 60~70점 미만 11.8%, 60점 미만은 53.4%로 나타났다. 1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 점수의 경우 90점 이상이 3.9%, 80~90점 미만 5.8%, 70~80점 미만 7.2%, 60~70점 미만 11.6%, 60점 미만 71.5%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컨설팅 점수만 포함한 경우는 90점 이상 26.5%, 80~90점 미만 23.5%, 70~80점 미만 22.4%, 60~70점 미만 12.2%, 60점 미만이 15.3%의 비중을 보였다.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을 가정하여 전체 평가 점수 305개를 대상으로 통합 평가점수 기준별 탈락률을 산출한 결과,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탈락률은 88.9%, 60~70점 미만일 경우는 53.4%로 나타났다. 컨설팅 3차를 받은 산후조리원만을 대상으로 탈락률을 산출할 경우 기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탈락률은 73.5%, 60~70점 미만일 경우는 15.3%로 컨설팅 3차를 받은 산후조리원에서의 탈락률이 확연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컨설팅 사업의 사후관리로서 만족도 조사 및 사후간담회 개최, 수기 공모 등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9개소 중 19개소가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평균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8점, '컨설팅 소요 시간'은 3.7점으로 2022년도와 유사하며,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4.0점, '규정 및 서식 사례집' 3.7점, '컨설팅 횟수(3회)' 3.7점으로 2022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반면 '컨설팅 주기(한 달 간격)' 3.5점, '컨설팅 방역지침' 3.7점은 절대 점수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컨설팅 주기에 대한 만족도가 세부영역 중 낮은 편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컨설팅 주기를 찾기 위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영역별 만족도의 경우 '감염예방관리 영역'이 36.8%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으로 응답되었고, 이외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1.1%,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5.8%도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영역이었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36.8%,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6.3%이 많이 응답되었다. 이중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과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영역은 컨설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기타 의견으로 적절한 컨설팅 주기에 대해 현재의 1달과 현재보다 긴 2달에 대한 선호가 동일하게 47.4%로 나타났으며, 컨설팅 받을 때의 어려움 중 컨설팅을 받고 개선하여 다음 차수의 컨설팅을 받기에 시간이 촉박했다는 의견이 있어 컨설팅 주기의 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익숙하지 않은 서류, 문서화 작업, 인력 및 시간 부족이 컨설팅을 받을 때의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서식 등을 개발, 공유하여 컨설팅, 나아가 평가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단기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능한 선에서 완화하거나 장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비용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유관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체하여 활용하거나 우수 기관에 대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후조리원 평가가 시작될 경우 산후조리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엇보다 평가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이 미참여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되고(현판, 인증서 등 제공 및 홍보) 결과적으로 산후조리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사업이 민간에서 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질의 담보가 중요한 만큼 사업적인 면, 즉 수요자의 선택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60개소 산후조리원 중 58개소가 만족도 조사에 응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4.8점으로 세부항목 중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세부항목별로 모두 4.5점 이상으로 100점 기준 환산 시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회차별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회차별 만족도가 낮았던 영역은 주로 컨설팅 교육 장소 및 환경이었다. 컨설팅의 내용과 관련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소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컨설팅 참여 기관과 컨설턴트 대상 사후간담회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2023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수도권 3개소, 지방 2개소의 총 5개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 운영이 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개선사항으로 지방도시의 인력 채용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 산후조리원 입소 전 병원에서

부터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관련 산전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2023년도 사업에 참여한 16명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컨설팅 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사후간담회에서는 인력의 적정성 관련, 서류상의 법적 인력 기준 준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 운영이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컨설턴트들은 산모들이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불편해하는 경향으로 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산후조리원의 추가적 노력에 대한 가산점 항목 등을 추가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짐에 따라 감염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점에 대한 의견, 원활한 컨설팅을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23년도에는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낙상예방 포스터, 산모손 위생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배포되었던 부모교육 소책자(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 및 부모교육 전달자를 위한 책자 및 강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VI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개선방안

01 산후조리원 평가

02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개선방안

03 향후 산후조리원 정책 추진 사항

Ⅵ.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개선방안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지난 5년간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과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준비도 제고를 위해 시작되었다. 5년 동안 300개소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반적인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 수준뿐만 아니라 감염·소방·시설 안전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을 추진한다는 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 의사 회진 서비스 제공 기준 명확화 등 산후조리원 운영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따라 산후조리원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산후조리원 평가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련된 법안인 모자보건법 제15조20(산후조리원 평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산후조리원을 평가할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현 법령에서는 평가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산후조리원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평가 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란 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평가와 연계된 인센티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Ⅵ-1-1〉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 ---------- ----------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

현 행	개 정 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⑤ ----------.

작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보고서에 제시한 산후조리원 본 평가제도 안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등급은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은 평가 주기를 4년으로 C등급은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평가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이재희 외, 2022). 하지만 산후조리원 인력 이동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A등급 산후조리원이라 하더라도 4년 주기로 평가주기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 B 등급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과 어린이집 평가와 유사하게 중간 자체평가, 수시조사 등의 평가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재희 외, 2022). 또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평가가 시작되면 종료하고, 일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컨설팅만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Ⅵ-1-2〉 산후조리원 본 평가제도 안(등급제)

구분	내용
평가 주기	• 3년
평가방법	• 조사위원의 현장 방문(1~2일)을 통한 평가인증
평가(조사)위원	•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의료인
조사위원 수	• 한 기관 당 2~3명,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평가등급	• 3등급제: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결과 활용	• A, B등급 기관은 평가 주기 3년, C등급은 평가 주기 2년으로 조정
평가결과 활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각 지자체 보건소에 공시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해당 가구에게 등급 결과 공개
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추가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등급 판정
평가 사후관리	• 중간자체평가(매년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수시조사(인증 받은 산후조리원의 주요 서비스 영역이나 인력, 시설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 실시)
컨설팅	• 공공산후조리원에 한하여 컨설팅 실시

출처: 이재희 외(202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66, 〈표 Ⅵ-2-2〉.

현재 '평가를 할 수 있다'란 규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산후조리원이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방안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희망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인증을 수여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산후조리

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낮은 등급에 대한 거부나 등급 부여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낮다.

〈표 Ⅵ-1-3〉 산후조리원 인증제(안)

구분	내용
인증	•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하였으며, 감염·화재·시설 안전이 우수함(인증유효기간 3년)
조건부인증	• 산후조리원이 감염·화재·시설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인증 수준에 미치지 못함(인증유효기간 1년)

구체적인 산후조리원 평가 절차는 준비, 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결과 공표 순으로 이뤄진다. 평가기관은 산후조리원 대상기관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대상 산후조리원은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등급 선정 및 발표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Ⅵ-1-1]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체계

2.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개선방안

가.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범평가와 5년 동안의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기에는 200개 이상의 지표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92개로 지표 수를 줄였으며, 초기에 의료기관에 맞춰져 있던 지표들을 현장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완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지표에 대해 산후조리원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향후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현장과 소통이 빈번했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1. 인력 적정성' 영역에서는 법력인력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2. 인력 전문성' 영역에서는 종사자 관리대장 보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신규 교육매뉴얼(산모, 신생아, 감염 안전관리)를 간소화하고, 평가 판정기준에서 건강기록부 삭제와 같은 지표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표 Ⅵ-2-1〉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 일평균 신생아 수를 7로 나누어 2명만 간호사를 채워도 되는 경우, 근무조당 간호사 수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 - 근무 조건에 관계없이, 2교대 근무일 때는 최소 3명, 3교대 근무일 때는 최소 5명의 간호사가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종사자 관리대장에는 자격정보(자격검증) 추가가 필요하며, 면허 갱신(간호사) 및 보수교육 이수(조무사) 확인을 포함해야 함 - 신생아실 야간 근무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근무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야 함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 4대 보험에는 산후조리원 대표 원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결격사유,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보안각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함. 이러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서식을 보관(파일링)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 규정에 따라 종사자 관리대장은 몇 년간의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간호사와 조무사의 경우 면허갱신 또는 유예신고, 자격신고와 같은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함
	2.2	종사자 교육·계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 직원의 직무수행 교육 확인과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평가 전년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필요가 있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 신규교육매뉴얼(산모, 신생아, 감염, 안전관리)을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 판정기준에서 건강기록부 삭제 - 산모, 신생아 정보공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마다 선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적정성' 영역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입구의 손 씻기 시설이나 손 위생 기준 명확화, 요람 사이 간격 기준이 필요, 사전관찰실보다 감염예방을 위한 관찰실이란 용어로 변경 등이 제안되었다. '4. 시설 안전성'은 설비관리 평가항목 등의 간소화, 급수설비를 정수기 관리로 변경, 소방안전관리에 집중하도록 지표개선, 대피시나리오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Ⅵ-2-2〉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 산후조리원 입구 손 씻기 시설 및 손 위생 기준 명확화
			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정규	- 요람 개수가 법적기준은 충족하나 이동공간이 넓고 요람 사이는 간격 없이 붙여 놓은 경우에도 '유'로 판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 '사전관찰실'이란 용어보다 '관찰실'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사전관찰 및 임시 격리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함 - 4시간 이상 사전 관찰 부분 – 동 시간대 코호트 입실, 모자동실 입실 등 탄력 적용 여부 논의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 신생아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유'로 판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 설비관리 평가항목은 법적 점검서류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내용을 현장 평가 시 질문하여 평가하고 관리 점검표 작성여부는 평가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 법적 점검서류를 산모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점검서류만 확인하는 것으로 조정 필요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 판정기준에 정수기 관련 내용만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 검토 필요
	4.2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필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정리가 필요함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 설비관리 관련 문항에서는 법적점검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화재예방점검에는 법적점검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3.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 소방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점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함 - 직원 2인 이상 화재 시 대피시나리오를 정확히 알고 있고 시뮬레이션한 근거 필요 - 화재 시 직원, 산모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준 필요
	4.3	낙상예방 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 아기를 안고 다니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낙상예방활동을 시행한다'로 변경 필요

'5. 운영관리' 영역에서는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와 신생아건강기록부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의견, 입·퇴실 산모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합하자는 의견, 건강관리부를 규정에 맞게 지표를 수정해야한다는 의견, 산후조리업자의 운영 철학에 대한 평가항목 조정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6. 고객관리' 영역에서는 만족도 평가 결과 업무를 개선할 불만족이 없을 경우 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Ⅵ-2-3〉 'Ⅲ. 운영 및 고객관리'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는 신생아건강관리 기록부와 함께 사용되어 서식지 제목을 퇴실교육체크리스트와 신생아 건강기록부로 명칭을 변경 - 입, 퇴실 산모교육과 12.1 부모교육을 통합하여 "부모교육"으로 일원화 - 입·퇴실 시에 산모·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산모에게 시행(신생아 확인 및 안전관리 설명 필요)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 입·퇴실 절차는 담당 직원이 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확인 건수는 5건에서 3건 확인으로도 문항 평가가 가능
	5.3	문서관리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 '건강기록부를 규정에 맞게 작성한다'로 수정 - 신생아 입실, 재실, 퇴실 건강기록부와 이중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어 기록의 매일 작성, 수정, 규정에 맞게 작성 등만 확인한다는 교육이 필요함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 판정기준에서 보호자는 산모가 지정한 1인으로 제한하는 내용 삭제(현실 반영)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 출입절차와 면회시간 게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논의가 필요함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 방문객 위생을 관찰하는 부분은 삭제 필요 - 상시출입자(위탁서비스 직원 등)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손 위생 용품 비치는 8.1.4 손 위생 물품구비와 중첩됨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5.5	운영 철학	1.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	시범	- 평가항목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변경 필요
6. 고객관리	6.1	고객 관리	1.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 만족도평가 결과 업무개선을 할 불만족이 없을 경우 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함

'8. 감염예방' 영역에서는 손 위생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 손 위생 물품에 대한 기준 근거와 같은 손 위생 지표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탁물 관리 지표에서는 세부내용 추가에 대한 의견, 세탁물 관리 점검표 수정 및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물품·소독 관리에서는 소독일지 작성, 목욕대야 소독, 보호구 착용, 세탁물 관리점검표 수정 등이 제시되었다. 환경관리, 급식관리, 종사자관리 지표에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Ⅵ-2-4〉 'Ⅳ. 감염예방관리'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 손 위생은 수행하나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하기가 어려움 - 5인 확인 어려움(당일 근무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안 고려)
			3.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필수**	- 교육 받은 산모 비율 → 교육한 근거자료 확인으로 변경 검토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 60% 이상의 기준은 CDC에 있음
	8.2	개인보호구 착용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 기구 물품 세척 시 보호구 착용 삭제, 기준 8.4 물품소독관리 ME2)와 중복 - 판정기준 문구 수정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 세탁물 관리 규정에 세탁물 자체 처리 시 세탁실 관리 세부내용 포함 필요(세탁기, 건조기 관리, 화재 예방관리 필요함)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 세탁물 관리 점검표 수정 및 보완 -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로 변경
	8.4	물품 소독·관리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 소독일지 작성에 관한 검토 필요 - 목욕대야 소독~ → (개별 사용하는 경우 신생아 퇴원 후 소독) 추가 - 직원 1인 이상 관찰 → 관찰 혹은 질문 - 보호구 착용 중복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 세탁실 환경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세탁물관리 점검표가 수정 필요 - 청결세탁물을 개기 전 작업대는 소독을 해야 함 - 목욕대야를 포개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8.5	환경관리	2.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 신생아가 있는 공간에 음식이나 커피류가 없다는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포함
	8.6	급식관리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 식재료 검수일지는 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에 검수확인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필요(공산품 경우 반드시 원산지와 유통기간 있어야함) - 검수일지 보관 기간이 6개월이 너무 길다는 의견 있었음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 기록지를 작성] → [비치하고]가 적절함. 온도계 없이 온도 기록지 작성할 수 없음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 한다.	정규	- 평가 결과를 [상, 중, 하, 미해당]으로 판정 혹은 [유, 무, 미해당]으로 판정
	8.7	종사자 관리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 감염 노출사고 및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 → [감염 노출사고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근거서류 확인)]로 변경

'10. 산모 건강평가' 지표에서는 법정 서식 누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1. 모아애착'에서는 모아애착 평가기준, 모자동실 기준 완화 및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2. 부모교육' 지표에서는 부모교육, 입실교육, 퇴실교육을 일원화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버지 교육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Ⅵ-2-5〉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 산모 건강평가에 대소변이 있으나 법정 서식에 누락되어 검토가 필요함(서식 혹은 평가항목의 이해)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 모아애착 평가기준 논의 필요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 재실 기간 중 평균 모아동실 시간과 같은 명확한 기준 필요 - 산후조리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 하나임. 궁극적으로는 필수지침으로 유지하더라도 평가 첫 시기에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 재실기간 중 평균 모유수유 시간이 필요 - 필수이므로 모유수유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만 있어도 '중'을 받을 수 있도록 모유수유 산모 비율 삭제를 건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 부모교육, 입실교육, 퇴실교육을 일원화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 확인건수를 5건으로 통일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 아버지 참여가 어려운 사례가 있어 정규 문항으로 변경 건의 - 가족의 다양화 시대에 아버지로 한정된 지침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움

‘13. 신생아 확인’ 영역에서는 신생아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는 확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산모 팔찌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4. 신생아 건강평가’에서는 입·퇴실 평가를 필수 항목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건강상태 기록에 근무조마다 서명해야 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는 지표와 퇴실 시 교육한다는 지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15. 신생아 관리’ 영역에서는 모유 보관 시 기준 명시 및 추가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셀프 수유 점검, 산모 점검이 어려울 경우 직원에게 물어보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Ⅵ-2-6〉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평가 지표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컨설턴트 의견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 규정에 ‘신생아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다.’도 있어야 함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 식별’ → ‘확인’으로 용어변경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 산모 팔찌 추가 권유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 필수항목으로 상향 조정 필요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 근무조마다 서명 완화 필요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 퇴실 시 교육한다와 한 서식지를 쓰면서 평가를 반페이지씩 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
15. 신생아 관리	15.2	신생아 수유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 모유 보관 시 모유가 쏟아져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게 기준 명시 필요 - 모유보관 냉장, 냉동고 온도관리 내용 필요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 셀프수유 점검 필요 - 모유수유 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함 → 모유수유를 유축모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지침 수정이 필요함 - 모유나 분유가 바뀌지 않도록 준비된 모유, 분유병의 라벨링을 확인하는 지침이 필요
	15.3	안전 관리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재원 중인 산모 3인 혹은 산모에게 질문이 불가한 경우 직원에게 질문

나.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향후 개선방안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는 현 체계대로 6년 이상 수정 및 보완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지표가 매우 고도화된 상태이다. 또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본 평가가 도입되더라도 급격한 지표의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현 체계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턴트의 의견과 현장에서 청취한 지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인 인력 기준, 일부 감염 지표,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등은 차년도에 검토하여 반영하고, 본 평가 전 평가 지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산후조리원에 보급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집에는 일부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부에서 평가와 같이 지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지표의 큰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첫 번째 평가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지표를 변경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3. 향후 산후조리원 정책 추진 사항

지난 2023년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작성가이드 보급,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 방안, 우수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산모 수요에 맞춘 산후조리원 신규 서비스 개발·보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은 지난 6년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024년에 1주기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산후조리원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내용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평가 도입에 앞서 추가로 조사위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 제공 기준도 명확하게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의사가 진료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근거한 별표 3(노인주거복지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란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의사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의사 회진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사의 진료 범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요양원의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사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

용을 참고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서 산후조리원 내 의사 진료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Ⅵ-3-1〉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7조(의사활동) 내용

제7조(의사 활동) ① 의사는 입소노인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p.146.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3).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장례·산후조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김영우(2017).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이지스퍼블리싱.

박미경·조민효(2019).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8(1), 37-69.

보건복지부(2023). 202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2022).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측정 분석 프레임 연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위원회(20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2.

보건복지위원회(20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보건복지위원회(20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1.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0호 (2022. 12. 23. 개정)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조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0호 (2022. 12. 23.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a).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3b). 2023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유치원 평가 가이드북.

서영준·이광수·유기봉·송현종·임민경(2019).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측정 분석 프레임 연구(2단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여성가족부(2017a). 부모교육 매뉴얼 총론.

여성가족부(2017b). 부모교육 매뉴얼 제5권 영아 부모.

여성가족부(2017c). 부모교육 매뉴얼 제10권 아버지.

여성가족부(2017d). 부모교육 매뉴얼 제11권 가족특성별.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어린이집 평가 인증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2013). 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이정아·조숙인·배윤진·김희수(2023).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이정림·권미경·조미라·김자연·최은경·김지연·윤소정·엄지원(202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이정림·엄지원·김희선(2020).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손인숙·최병민·엄지원·조미라·김희선(2018).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이재희·구자연·엄지원·손인숙·최병민·김다은·김한솔(2020).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이재희·구자연·조미라·엄지원·강규돈·김다영(2021).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자료(2022. 1.~2023. 9.)

【온라인 자료】

강원도삼척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www.ksmc.or.kr/page/guide/page_06.php (2023. 11. 20. 인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gypc.or.kr/?WS=420 (2023. 11. 20. 인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pocheon-mom.or.kr/ (2023. 11. 20. 인출)

경상남도 블로그. 행복한 출산환경, 금줄 주렁주렁 경남 1호 밀양 공공산후조리원(2022. 12. 12.). https://blog.naver.com/gnfeel/222953107350 (2023. 11. 20. 인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www.xn—ob0ba50hi02atqiilds8ibodr8m8o0a.kr/ (2023. 11. 20.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현황.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 6. 기준) 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7835 (2023. 11. 20. 인출)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jjsmc.or.kr/board/gcontent/contentview.php?content_id=gonggongsanhu (2023. 11. 20. 인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홈페이지. https://www.sdm-mom.or.kr/ (2023. 11. 20. 인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http://mom.songpa.go.kr/careCenter/guide.asp (2023. 11. 20. 인출)

양주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yg-ppc.org/theme/yanggu/sub/info2.php (2023. 11. 20. 인출)

완도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health/support/childbirth/carecenter (2023. 11. 20. 인출)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http://www.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com (2023. 11. 20. 인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koiha.or.kr/web/kr/assessment/accditation.do (2023. 12. 1. 인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Status.do (2023. 12. 20. 인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Step.do (2023. 12. 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V3U0S4U1C2A1Z1A3Z0H3F2E8D9Z3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G3O0N4M1N4L1U0S5Q8P0Q9Z6X5F1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F2J1B1T2X9Z1Z4M5B9G5N3U8I9L1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S2O0A8H2T6T0K9J1Y9E4S2Y9L0O3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M3B0Z8A1Y7Z1X0F0G1E0F6D4C2C3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G2E0S6Z2R7N1H4N5R3O4U6T8X2N2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V2C1T2T0V5G1F4T2W6C5U6Q5P9U1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J2X0J8E1Y6B1Z5K2G3A0L9C5X3F3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S3R1P0Y3W0X1W2U0Q5P0O0P4N5C7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E2W0F6U2O8L1I6U4A0D3C5W9I8E6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2S0O6P2Y2S1G3M0J5E0V8K7A8V6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X2W0T9E2Y1N1E4A2U1H3N4D4E8W4 (2023. 12. 19.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H3G0F2N0M2J1S5M4S5S4Q1Z2Y7X6 (2023. 12. 19. 인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www.hdhosp.co.kr/public/bbs/content.php?co_id=service_guide (2023. 11. 20. 인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홈페이지. https://www.gjmed.or.kr/bbs/content.php?co_id=care1 (2023. 11. 20. 인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홈페이지. http://www.bitgaramhospital.co.kr/bbs/board.php?bo_table=table65&wr_id=8 (2023. 11. 20. 인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홈페이지. https://www.hdhosp.co.kr/public/ (2023. 11. 20. 인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chw-mom.org/sub10.html (2023. 11. 20. 인출)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chppcc.or.kr/ (2023. 11. 20.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kcpi/business/childcarecentaccredcourse.do (2023. 12. 5. 인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예방·사례정보,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https://www.kca.go.kr/odr

/cm/cm/boardsDtl.do (2023. 10. 31. 인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 (2023. 11. 8. 인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질병에 대한 배상 요구.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 (2023. 11. 8. 인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피해구제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 (2023. 11. 8. 인출)

【신문 기사】

경향신문(2022. 1. 26.). 화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1년 이상 거주 시, 2주 이용료 100% 감면. https://www.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201261553001 (2023. 11. 20. 인출)
경향신문(2023. 9. 18.). 소멸 위기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붐. https://www.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309182139015 (2023. 11. 20. 인출)
노컷뉴스(2023. 10. 16.). 전남도, 저출산 극복 위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https://www.nocutnews.co.kr/news/6028833 (2023. 12. 1. 인출)
메디컬투데이(2023. 10. 11.).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요금 326만원…공공 산후조리원 171만원.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5246420252 (2023. 12. 1. 인출)
스포츠서울(2023. 8. 31.). 화천군, 출산여성 평균 연령 30.9세로 전국 최저!.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44013?ref=naver (2023. 12. 1. 인출)
전국매일신문(2023. 11. 27.). 서대문구, 서북권 유일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 가득' 개원. ttps://blog.naver.com/seouldesks/223275807711 (2023. 12. 1. 인출)

【참고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타법개정]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6호, 2023. 6. 13.,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299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부록

부록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부록 2.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기관용 신청서)
부록 3.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조사표(기관용)
부록 4. 산후조리원 자체평가지(기관용)
부록 5.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컨설턴트용)
부록 6.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부록 7. 산후조리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부록 8. 컨설팅 참여 기관 만족도 조사
부록 9. 2022~2023년 평가기준집 비교

부록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I

평가 개요

01 평가항목의 기본 틀

02 평가항목의 이해

03 평가방법

04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구성

1. 평가항목의 기본 틀

▪ 평가항목은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질 관리 문화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평가항목의 이해

○ 평가대상

▪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평가항목의 분류

-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에서 항목 분류는 다음과 같다.
  - ▪ [정규]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 ▪ [필수]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하는 평가항목
  - ▪ [시범] : 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항목

○ 평가영역 구분

▪ 평가영역 구분별 설명

평가영역(S,P,O)		설명
S	System	구조: 규정(내규, 지침 등), 절차, 계획의 수립
P	Process	과정: 계획 수립 및 시행, 개별교육, 숙지, 인지, 수행정도 확인
O	Outcome	결과(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

▪ 미해당 항목

- 사전 제출한 자료 검토를 통해 '미해당' 항목으로 확인된 경우, 본 평가 시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하여 '미해당'으로 판단한다.
- '미해당'으로 판정된 평가항목은 결과판정을 위한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규정, 지침, 내규 및 절차

▪ 개념 정의

- 산후조리원 내부에서 정한 업무표준을 총칭하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원칙, 서비스제

공에 대한 원칙, 업무지침 등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의한 내부준칙을 말한다.
- 규정은 관련 법규나 국제표준 또는 공인된 지식체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 절차는 업무 혹은 서비스 과정(프로세스)을 정의한 것으로 해당 프로세스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상 산모의 법적 용어는 임산부이며, 신생아의 법적 용어는 영유아이다.

▪ 해당 규정(지침, 내규 등) 및 절차, 계획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하 평가항목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는 '무' 또는 '하'로 판정한다.

3. 평가방법

○ 평가장소

▪ 평가항목에서 제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후조리원 내 관련 장소에서 평가한다.

○ 평가대상

▪ 평가항목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직원, 산후조리업자, 산모에게 질문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관련 용어설명

평가방법	용어설명
DR(Document Review)	규정(내규, 지침 등) 및 절차 검토
Tracer - IT(Individual Tracer) - ST(System Tracer)	- 직원, 산모 면담조사 - 기록 검토 - 관찰 - 근거서류 및 관련자료 검토

4.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구성

○ 6개 대영역, 15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8개 평가항목(시범적용: 5개 평가항목)

* ME: Measure Element, 평가항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ME)	분류		
					필수	정규	시범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4		9	3	6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1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3	1	2	
		2.2	종사자 교육·계발	3	1	2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2		2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	4		15	6	9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ME)	분류		
					필수	정규	시범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1	3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5		5	
		4.2	소방안전관리	4	3	1	
		4.3	낙상예방관리	2	2		
Ⅲ. 운영 및 고객관리	2	6		16	5	10	1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2	3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2	2		
		5.3	문서관리	2		2	
		5.4	방문객관리	3	1	2	
		5.5	운영 철학	1			1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3		3	
Ⅳ. 감염예방관리	2	8		25	10	15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5	5		
		8.2	개인보호구 착용	2		2	
		8.3	세탁물관리	2		2	
		8.4	물품 소독·관리	3		3	
		8.5	환경관리	2		2	
		8.6	급식관리	6		6	
		8.7	종사자 관리	3	3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2	2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3	3		11	9	2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2		2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3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6	6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3	5		16	7	9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3	3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3		3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2		2	
		15.2	신생아 수유	5	1	4	
		15.3	안전관리	3	3		
6	14	30		92	40	51	1

Ⅱ

평가항목 충족기준의 이해

01 기본원칙

02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원칙

○ 산후조리원 평가에서는 평가항목 충족수준과 결과판정 수준을 산후조리원 간, 평가항목 간 평가결과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점수화 체계를 구성하였다.

- 평가항목의 객관적인 변별을 위해 항목별 평가방법 및 결과판정 기준을 제시함.
- 평가결과 등급판정 기준에는 전체 평가항목(Measure Element, ME), 각 영역별 평가항목(ME)에 대한 충족여부를 위한 기준을 포함함.

2.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점수	평가결과	점수
유	10점	상	10점
		중	5점
무	0점	하	0점

(*가점항목이 있을 경우 기준 충족시 해당 평가항목 5점 가산)

Ⅲ

평가항목의 이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Ⅲ 운영 및 고객관리

Ⅳ 감염예방관리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2. 인력 전문성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중영역	평가기준
1. 인력 적정성	1.1 법적인력기준을 준수한다.
2. 인력 전문성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1.1 인력 적정성]

기준 1.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수 또는 구성에 대해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 영역	분류	평가결과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DR	S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건강관리 인력(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구분	내용	비고
간호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함.
간호조무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음(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 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해당하는 전체 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함).	
건강관리책임자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하며,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지침(고시)」[별지 제1호 서식]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작성·비치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됨(산후조리원 근무시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위 불가).

○ 그 밖의 인력
- 취사부(조리원) 및 영양사
  • 임산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함.
- 청소 및 세탁담당자
  • 규모에 따라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음.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생아 입실자료 - 신생아 재원 관리 대장
  5)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호증

○ 판정기준

1) 법적 인력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춤 - 1명 이상의 상시근무 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었으나 상시근무 간호사 충족 못함	- 법적인력을 충족하지 못함

[2.1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기준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DR	P	필수	□유	□무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인사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직원 채용절차
- 자격조건(근무경력 등)
- 건강검진확인(근무예정자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잠복결핵검사)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 인사정보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정보(예: 면허, 교육 등) 갱신 및 관리
-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

2) [필수] 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모집/배치한다.

3)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정보 등)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종사자 보안 각서(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신청서 (산후조리원용)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 판정기준

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법정 건강검진(잠복결핵 검사 등),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 관련 여부 진단 및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일해)을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중 1개라도 실시하지 않음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없음 - 개인정보 보안각서를 받지 않음 위의 1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

3)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누락없이 작성되고 연도별로 관리함	- 종사자 관리대장이 일부 누락되고 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음 - 면허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 ·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다수의 직원의 인사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기준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자격유지 및 업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DR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 강사 등

2)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에게 시행해야하는 교육은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 교육 및 기타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내용: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방법: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산후조리업자*	- 연1회 이상. 연8시간 이상	-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건강관리인력	- 연1회 이상. 연4시간 이상	-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기타 인력	- 연1회 이상. 연1시간 이상	-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산후조리업자는 교육보고서를 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함

※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 산후조리원 필수교육의 교육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7호)

○ 법정의무교육

교 육	근거 법령	대상	주기	세부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연 1회	-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연 1회	-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 이행 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위생 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조리사 및 영양사	2년에 1회	-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소방 안전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산후조리업자 및 관리급 종사자	2년에 1회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산후조리업자 또는 관리책임자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 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규 직원	신규 입사 시	신규채용 시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신규자 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담당자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함.

○ 신규직원 교육

- 교육개요: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간호사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후 1주 이내 실시
-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조직 및 운영목표, 시설현황, 업무내용 및 업무절차

○ 기타 직무교육

-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낙상예방 교육, 모유수유 교육, 서비스 질 개선 교육 등

3)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 산후조리업자 또는 관리급종사자

- 근거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대상: 산후조리업자 및 관리급 종사자
- 주기: 2년에 1회
- 세부사항: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이수 근거서류: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0. 1. 16.〉

- 종사자 교육 대장(자체 교육 확인용)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근거 서류

○ 판정기준

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연간 교육계획에 필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	-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산후조리원 종사자 필수교육을 시행함 - 산후조리원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중 80% 이상 수행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신규 직원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관되어 있음	- 필수 교육을 시행하고 추가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 필수 교육을 시행하지 않음 -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중 50% 미만 수행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직무교육 또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자 교육 제외)을 계획하고 실제 실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5점 가산

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필수교육(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 · 위에 제시된 3개 기준 모두 충족(교육이수 수료증 확인)	- '유' 기준 1개 이상 미충족

[2.3 인력 전문성: 종사자간 의사소통]

기준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근무교대 시 정확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산모, 신생아의 정보를 공유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DR/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근무교대 시 종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정보공유 방법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

○ 정보공유 내용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기본정보
- 인계시점에서의 임산부(산모), 신생아 상태
- 필요 시 제공되어야 하는 처치 등

2) 직원은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 절차를 알고 있으며, 건강기록부와 근무교대일지를 이용하여 산모, 신생아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 교대 일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근무교대 시 종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공유 내용이 충실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2개 모두 충족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 공유 내용이 일부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이상	- 근무교대일지 작성하지 않고 건강기록부에 정보 공유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미만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4. 시설 안전성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중영역	평가기준
3. 시설 적정성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4. 시설 안전성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3.1 시설 적정성]

기준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의 시설 기준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한 시설을 갖춘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IT	S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IT	P	정규	□유 □무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IT	S	정규	□상 □중 □하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IT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세면대 또는 손 소독기(소독제) 등 손 씻기 시설을 갖춘다.
- 손 씻기 시설: 세면대, 손소독제 등
- 세면대(싱크대): 영유아(신생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신생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2) 영유아(신생아)실 내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3) 신규로 입실하는 신생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전관찰실을 둔다.
- 사전관찰실: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으로 분리하여야 함

(※ 2017. 7. 1.부터 시행)

4) 영유아(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 산후조리원 법적 설치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임산부(산모)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따름)

- 임산부(산모)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 임산부(산모)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산모)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 영유아(신생아)실

-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함)을 제외한 영유아(신생아)실의 면적: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공용면적 제외는 2017. 7. 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일반기준

-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참고: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은 1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제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2018.1.1. 이후 신고를 하는 산후조리원 적용).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산모)와 영유아(신생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산후조리원 도면
-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 적정성 확인(관찰)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 판정기준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 또는 손소독제)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	- 신생아실에만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없음 - 산후조리원 입구에만 손소독제가 있음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 간격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다.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지 않다.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사전 관찰실이 있으며, 출입문과 투명한 벽체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	- 사전관찰실이 있으나 칸막이로 일부만 막혀있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	- 사전 관찰실이 없음 -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4)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함	- 신생아실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음

[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기준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가스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유	□무	□미해당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전기·가스 설비 감시 및 관리
  -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등
○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 및 관리
  - 급수설비 위생 점검
  - 저수조 청결상태 점검, 수질검사(단독 건물인 경우)
  - 하수도 관리
  - 정수기 관리 등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2조 참조)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임

2)~5)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 판정기준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야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되어 있지 않음.)

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 - 법적 점검서류 있음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 - 법적 점검서류 있음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미해당
정규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있음 - 주기적인 가스점검 실시 - 점검표 3개 모두 충족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없음 -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점검표 2개 이하 충족 - 3개 중 1개 이상 해당	-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장을 운영하지 않음

4)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2개 항목 모두 충족	- 점검표 1개 항목 충족	- 미충족

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 - 에어컨 청소 필터교체, 환기시설 관리 점검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점검표 3개 항목 모두 충족	- 실내공기질 측정은 했으나 점검표 3개중 2개 이상 충족(근거서류 포함)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점검표 3개 중 1개 이하만 충족

※ 연면적 500㎡미만 산후조리원은 실내공기질 측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표 내의 항목 충족 여부와 점검 근거서류만 확인하고 판정함.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중점점검사항	이상 유무 확인	
		충족여부	조치결과
전기	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		
	3. 전선의 피복상태		
	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		
가스 시설	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		
	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		
	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		
급수	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		
	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		
실내 공기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		
	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		
	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혹은 주기적인 환기 (일 최소 2회, 한회 당 20분 이상)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기준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3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IT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예방점검 계획
-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 피난설비(완강기 혹은 구조대,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 피난경로(대피로) 점검(피난경로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비상구 점검(개방여부,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 신고체계(비상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편성
- 피난층 위치, 안전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설정
- 직원의 역할분담,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 유형별(산모, 신생아) 대피 계획 및 후송 계획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계획

- 소방안전 교육(최소 연 1회 이상)
  - 교육대상, 교육일정
  - 교육내용(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소방훈련(최소 연1회 이상)
  - 대상: 산후조리원 종사자(직원)
  - 훈련내용: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 비상대응훈련

2) [필수] 화재예방을 위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3) [필수] 계획에 따라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알고 있다.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체계: 응급벨, 인터폰(핸드폰은 제외함)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소방안전 관련 규정(또는 계획서)
- 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확인(연 1회)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화재예방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확인
- 소방훈련 근거서류(종사자 교육 대장으로 대체 가능)

○ 판정기준

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소방안전을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함	- 규정(또는 계획서)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또는 계획서)이 없음

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 현장 점검 시 이상 없음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현장 점검 시 3개 항목 이하 미흡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현장 점검 시 4개 항목 이상 미흡

■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 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 · 변형 · 손상 · 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 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 · 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화재 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 · 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 · 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 · 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3) 소방 교육 및 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최소 연 1회 이상 종사자 대상 소방 교육 및 훈련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 최소 연 1회 이상 종사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은 실시하지만 훈련은 실시하지 않음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	-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4)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유	무
정규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응급벨, 인터폰, 유선전화기(단축키 지정) 등)가 있음 (※ 연락체계로 핸드폰은 제외)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없거나, 연락체계로 핸드폰을 사용함

[4.3 시설 안전성: 낙상예방관리]

기준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낙상으로 인한 산모와 신생아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낙상예방활동
- 낙상예방교육(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잘 맞는 신발 착용 교육 등의 안내문 부착 등)
- 환경 및 시설점검(바닥 미끄럼방지, 문턱관리, 조명관리, 낙상예방 안내문 부착 등)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낙상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 내용
-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
- 낙상 예방 활동 근거 서류

○ 판정기준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규정이 없음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 낙상예방 활동에 대해 직원숙지 80% 이상 - 제시된 기준 중 3개 모두 충족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해 직원숙지 60% 이상 - 제시된 기준 중 2개이상 충족	- 미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없음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실, 산모실 실내바닥 미끄러움 상태			
2	산모, 신생아실 직원의 신발 바닥 확인 (산모와 직원의 신발바닥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거나 신었을 때 미끄럽지 않음)			
3	낙상예방 안내문(스티커) 부착 (산모실, 신생아실 모두 안내문 또는 스티커 부착)			
4	조명관리(야간 조명관리 등)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6. 고객관리

Ⅲ. 운영 및 고객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5. 운영관리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5.4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5.5 산후조리업자 또는 원장은 산후조리원 운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6. 고객관리	6.1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불만 및 고충을 관리한다.

[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기준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입·퇴실 수속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DR	S	필수	□유	□무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IT	P	필수	□유	□무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DR/IT	P	정규	□상	□중	□하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입·퇴실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 입·퇴실 수속 절차(방법), 입·퇴실 지연 시 관리방법 등

○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 입실생활 안내, 요금체계, 서비스 내용 등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 계획
- 감염예방 관리 계획
-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
- 낙상 예방 계획

○ 퇴실 시 산모 교육: 아기돌보기, 진료가 필요한 아기 이상 증상, 신생아 안전점검 등에 관한 퇴실

교육을 시행한다.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입실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마사지, 사진촬영 등의 부가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하며, 산후조리원과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함)

4)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5) 입·퇴실 수속 절차를 준수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입·퇴실 관련 규정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입소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고객용)

○ 판정기준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됨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산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고 있음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게시(비치)하고 있지 않음

4) 입실, 퇴실 시 산모교육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 교육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일부내용(4개 이상)에 대해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입실, 퇴실 시점에 산모에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퇴실시 신생아 확인절차를 준수함(확인 불가시 면담으로 확인) 100%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퇴실시 신생아 확인절차 준수함.	- 입·퇴실 수속절차(신생아 확인절차 포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2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기준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이송여부 결정기준
○ 이송절차
○ 보건소 보고 지침

2)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산모 및 신생아를 이송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하고, 이송된 산모 및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 최근 1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이송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지침(보고해야하는 사항, 보고 담당자, 보고시점 등 포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규정 내용이 2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침이 없음 (규정 내용이 1개 이하)

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확인 건수: 최근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보고방법, 보고사항) -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근거서류 확인) -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작성함	○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보고방법, 보고사항) -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숙지 6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감영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작성함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보고방법, 보고사항) -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숙지 60% 미만

[5.3 운영관리: 문서관리]

기준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문서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문서목록(산후조리원 자체 목록 지정)
○ 문서 기록방법
- 문서 기록, 수정 방법 및 기재내용
○ 문서의 대출, 열람(사본발급포함) 절차
※ 건강기록부: 임산부(산모) 또는 영유아(신생아)의 법적대리인이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4항)
○ 문서 보관방법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문서 접근권한 관리
- 문서 보관, 유지 및 파기방법 등

2) 건강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기록, 수정한다.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관중인 문서에 대한 관리규정(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이 없음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하지 않음

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최소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 5개 건강기록부 중에서 2개 항목 이하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하게 작성됨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수정펜 사용)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3개 항목이상 누락되어 있거나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4 운영관리: 방문객관리]

기준 5.4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보호자 및 상시출입자 관리
(※ 상시출입자 예: 사진사, 마사지사, 식재료납품업자 등)

○ 방문객 관리
- 출입절차 및 출입이 금지되는 사항
  • 위장관감염, 호흡기감염, 결막염, 기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산후조리원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 방문객 명부 작성
- 방문 허용 시간대(면회시간)
- 방문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 수칙
  • 감염예방 교육(예: 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등)
-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등

○ 손 씻기 시설 관리(세면대, 손소독제 등)

○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2) [필수]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을 입구에 게시하고, 산후조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산모 및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객에 대한 출입관리 및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방문객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입구에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은 출입 시 손 위생을 실시하도록 교육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확인

○ 판정기준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보호자(주출입자)는 산모가 지정한 1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방문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감염이 있는 자 • 화농성 질환 등 감염성 피부질환이 있는 자 •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질환이 있는 자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 • 최근에 예방접종(MMR, 수두, 폴리오)한 아동과 접촉한 자 • 산후조리원 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됨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없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지 않음

3)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평가일에 방문객 손 위생 수행 관찰(최소 5인): 100%실시	- 감염관리 활동 중 1개 수행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이상 - 제시된 2개 항목 중 1개 해당	- 감염관리 활동 중 1개 이하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미만

[5.5 운영관리: 운영 철학]

기준 5.5

산후조리업자 또는 원장은 산후조리원 운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업자 또는 원장은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감염 및 안전을 위한 운영 관리 및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	IT	S	시범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의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경영철학
○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개념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 직원 인터뷰(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 판정기준
1)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의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운영철학(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 직원 인터뷰)

구분	상	중	하
시범	-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음 (3개 모두 해당)	-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음 (2개 이상)	-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음 (1개 이하)

[6.1 고객관리]

기준 6.1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불만 및 고충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고객관리 활동과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산모, 방문객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2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정규	□유	□무	
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만족도 평가 및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만족도 조사
- 조사방법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활동

○ 불만 및 고충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방법, 처리 및 피드백 등)

2)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4)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을 절차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판정기준

1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 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모두 충족	- '상'의 기준 중 2개 충족함	- '상'의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2)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고충처리함, 안내문 등)	- 안내 없음

3)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관련 서류 있음	- 피드백 관련 서류 없음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9. 감염관리

Ⅳ. 감염예방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8. 감염예방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8.4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9. 감염관리	9.1 감염병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8.1 감염예방: 손 위생]

기준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종사자 및 산모는 손 위생 수행을 준수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IT	P	필수	□상	□중	□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질병관리본부(KCDC),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및 공인된 감염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한다.

○ 산후조리원 입구와 신생아실 입구에서 손 위생을 수행한다.

○ 손 위생 수행 대상: 직원

○ 손 위생 수행 시점(예시)

구분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
일상적인 활동	- 근무 시작 전·후, 음식 먹기 전·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고 난 후 - 오염물품을 만지거나 접촉 후(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오염세탁물 등)
신생아, 산모 간호	- 신생아 접촉 전·후 - 모유/분유 준비 전, 수유 전 - 기저귀 교환 전·후 - 상처 만지기 전·후, 혈액/체액에 노출된 후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손 위생] 참고

○ 손 위생 수행 방법
- 손 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액상비누 및 손 소독제 종류
- 손 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예: 세면대 옆 홍보자료 비치, 게시판 등에 손 위생 관련 자료 부착 등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 전·후, 산모와 신생아 간호 전·후 올바르게 손 위생을 수행한다.

3) 산모에게 신생아와 접촉 전·후, 수유 전 등 올바르게 손 위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4) 손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여 적절한 곳에 비치한다.

5)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보호자, 방문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손 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
-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 손 위생 교육 여부 확인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 판정기준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60%~80% 미만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

3) 산모 손 위생 교육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5명 확인) - 산모가 손 위생 시점 숙지 80% 충족(3명에게 질문)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60%이상 80% 미만(5명 확인)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60% 미만(5명 확인)

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 되어 있으며 개봉 후 6개월 이내 일 것 - 손 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인증서 확인)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 있음	- '상'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함	- '상' 기준 중 2개 이하 충족

5)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 비치(부착) •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 부착	- 홍보활동 2개 중 1개 실시함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없음

■ 손 위생이 필요한 활동 사례 - 산모 대상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음식 먹기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신생아 접촉 전·후				
4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5	기저귀 교환 전·후				

■ 손 위생 활동 점검표(직원)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근무 시작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음식 먹기 전·후				
4	신생아 접촉 전·후				
5	모유/분유 준비 전, 수유 전				
6	기저귀 교환 전·후				

[8.2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평가목적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 업무 중 감염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염소계 소독제 등) 등
- 기구, 물품 세척 시(젖병 포함)

○ 개인보호구 목록관리

2)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일회용 가운 등)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보호구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판정기준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장갑, 마스크, 가운을 착용해야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80%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미만

※ 직원 3명의 평균으로 충족률 산출

[8.3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

기준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목적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관리 및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세탁물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세탁물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세탁물관리(※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수집, 운반, 세탁, 보관은 *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분리하여,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오염세탁물: 피, 고름이 묻었거나 분비물에 의해 젖어 있는 세탁물

  *일반세탁물: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

- 세탁물
  -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의류: 산모복, 신생아복, 유니폼, 가운 등
  - 린넨류: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린넨류
  - 기타: 커텐, 씌우개류, 수집용기(햄퍼) 등
- 세탁물 보관 및 운반
  - 세탁물 수집: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수집용기(햄퍼), 수집장소 관리(소독, 세탁물 분류 등)
  - 세탁물 운반: 수집용기(햄퍼)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운반, 운반용기 관리(소독)
- 세탁물 처리(자체 또는 외부 위탁처리)
  - 자체처리: 세탁실 관리, 세탁방법(오염/일반세탁물 분리세탁, 세제선택 등)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 세탁된 세탁물 보관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전용 보관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2) 규정에 따라 오염된 세탁물을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 판정기준

1) 세탁물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5개 항목 이상 충족	- 점검표 4개 항목 충족	- 점검표 3개 이하 충족

■ 세탁물 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세탁물 수집용기 유무			
2	세탁물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여부			
3	세탁물 수집장소 관리상태(청소일지, 청결상태 확인)			
4	세탁물 분리 수집 여부(오염/일반세탁물 분리보관)			
5	세탁물 처리 상태(자체세탁, 외부위탁 확인)			
6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관리상태			

[8.4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

기준 8.4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기구 및 물품의 감염예방 활동을 통하여 기구 및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발생 위험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구 및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 수유물품(젖꼭지, 모유/분유병, 뚜껑 등)
- 기타(신생아실 및 산모개인실 요람, 목욕대야, 유축기, 좌욕기 등)
○ 세척/소독된 물품 보관 관리
○ 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물품소독제 사용)
○ 세척직원의 보호구 착용: 세척 시 보호 장구 착용(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등)

2-3) 규정에 따라 기구 및 물품을 세척, 소독, 보관하고, 직원은 세척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기구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보관장소
-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 세척직원 복장 확인
- 사용 중인 물품소독제 사용설명서와 인증서

○ 판정기준

1)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경우(자불: 열탕) 소독 또는 국내외 승인된 전용 소독제 사용) - 소독일지(신생아요람 관련사항 포함)를 작성하고 신생아요람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경우 - 목욕대야 소독은 중간수준 이상이며, 제품설명서에서 제시한 소독시간, 농도 등 준수함(직원 1인 이상 관찰) - 세척 시 필요한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고,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하여야 함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필수: 수유물품 소독여부는 충족해야함)	- 미충족

3)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신생아용품(기저귀, 물티슈, 비누, 목욕대야, 로션)은 신생아마다 개별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펌프용 비누, 펌프용 로션은 제외) - 목욕대야는 포개져 있지 않음(개별 포장 제외) - 유축깔때기, 좌욕대야는 산모마다 개별 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열탕소독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경우 제외)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8.5 감염예방: 환경관리]

기준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환경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위생관리
  - 청소 및 소독을 포함
  - 개인위생관리: 산모/신생아복, 직원유니폼 관리 등
  - 환경위생관리: 침상(린넨)관리, 청소, 소독 등 공용시설 등의 환경관리 등
○ 환경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환경소독제 사용)
○ 쓰레기통은 손으로 열지 않는 것(예, 발로 여는 쓰레기통 등)을 사용
○ 폐기물관리
  - 자체처리: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2) 개인 및 환경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환경위생관리 규정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설명서, 인증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항목 80% 이상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 점검표 항목 60% 이상~80% 미만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 미충족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미해당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수유준비 구역(장소) 관리				
5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6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7	좌욕실 관리				
8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9	손 씻기 시설의 청결도				
10	기구 세척 구역(장소) 관리				
11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12	페달을 밟아 뚜껑을 열 수 있는 폐기물통 사용				

[8.6 감염예방: 급식관리]

기준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평가목적

산모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식재료, 식기, 조리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3	식재료를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DR	P	정규	□유 □무 □미해당

평가항목의 이해

■ 조리장을 자체 운영하는 기관: 평가항목 6, '미해당'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조리장 위생 상태 관리
- 청소, 구역관리(오염/위생)
- 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소독 및 보관방법)
- 음식물 쓰레기 관리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 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등

○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 온도관리, 식재료 종류별 분리보관, 청소 등

○ 취사부(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 복장준수(위생모자,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등) 및 손 위생
- 유증상(설사, 고열 등) 직원 관리 등

○ 외부 위탁 시 관리
- 위탁업체 선정(위탁기관과의 계약서)
- 위생관리 계획 확인(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및 운영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위탁기관 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 등)
- 급식 절차 등

2) 조리장의 위생상태(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 오염구역/위생구역 구분, 음식물 쓰레기 관리 등)를 관리한다.

3) 식재료의 보관상태, 유통기한 등을 관리한다.

4) 조리장 냉장고 및 냉동고의 온도를 매일 점검(확인)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식재료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냉장고 및 냉동고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5) 조리장 직원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6) 조리장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상태 점검
-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표시 및 점검 유무 확인
- 조리장 종사자 복장(위생모,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착용 및 위생상태 점검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1)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단, 위탁하는 경우 위탁 시 관리내용을 포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작업 관리하고 있음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	-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에, 물기 없어야 함) - 모든 식재료는 밀봉을 하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함	-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5)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조리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8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80% 이상	- 일부 조리원이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6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 이상	- 조리원이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조리원 복장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60% 미만)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 미만

■ 조리원 손 위생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충족	미충족	미해당
1	조리실에서 작업 시작 전·후			
2	세척 안 된 식자재 및 오물 취급 후			
3	각기 다른 종류의 식재료 취급 및 조리 전			
4	생선, 날고기 등 취급 후			
5	음식을 만지기 전			
6	기구나 설비 사용 전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충족	미충족	미해당
7	화장실 출입 후			
8	쓰레기 취급 후			
9	신체 부위나 몸을 만진 후			
10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후			
11	소독제나 세척제를 만진 후			
12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한 후			

6) 외부위탁 시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등)이 이루어진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짐 - 급식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음	- 위탁업체 계약서가 없거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8.7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

기준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건강 유지와 업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직원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를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직원 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유	□무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IT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직원 안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건강관리 활동(※ 모자보건법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 직원 대상 예방접종 관리(인플루엔자, 백일해)
- 직원 건강검진(장티푸스,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 잠복결핵검진 등)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년 1회 정기적으로 관리(백일해는 미포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관리 지침
- 감염예방을 위한 점검활동(근무 시작 전 특정질병의 노출 경험 또는 보균상태 확인 등)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발생 시 절차, 직원의 근무 제한, 제한기간 등)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3) [필수]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제16조 제2항 관련)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근거서류 확인) - 종사자 위생관리점검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었는지 확인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음 - 종사자 위생관리점검표를 확인하였으나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100%	-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	-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

[9.1 감염관리]

기준 9.1

감염병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평가목적

감염병 발생(의심) 시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 질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을 보호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 및 관리 지침)
※ 참고: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지침을 따른다. 2019년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관리 매뉴얼 참조

○ 감염병 환자군의 정의(예: 인플루엔자,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 격리방법
- 직원대상 격리 관련 교육 및 보호구 착용
- 의료기관 이송계획 및 보건소 신고
- 격리물품 구비
- 신생아 추가 감염 확인 등

2)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별도의 격리실에 격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 판정기준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구체적인 조치 및 관리계획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확인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류가 있음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작성함 위에 제시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중'에 제시된 3개 기준 중 1개 이하만 충족되는 경우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1. 모아애착
12. 부모교육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중영역	평가기준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1. 모아애착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12. 부모교육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10.1 산모 건강평가]

기준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에게 적정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2)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 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산모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활력징후, 하혈유무, 유방사정, 부종, 대소변, 정서 상태(산후우울) 등
- 산후우울증 평가 시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권고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산후우울증 설문지

○ 판정기준

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80% 이상 기록 충족)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 일부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 이상~80% 미만 기록 충족)	-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를 시행함(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 있음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함. (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있으나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가 없음	-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았음.

[1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기준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모유수유와 애착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동실 운영
 - 사용기준, 시설과 환경관리, 주의사항, 사용설명과 동의 등
○ 모자동실 촉진 활동(교육)
○ 모유수유 촉진 활동(교육) 등

2) 계획에 따라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3) 계획에 따라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모아애착 증진 서식

○ 판정기준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모아애착 증진 서식을 작성하고 있음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계획이 없음

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5인을 선정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 80% 미만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미만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신생아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5점 가산

3)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5인을 선정하여 신생아 건강기록지를 이용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유수유가 금기인 경우, 산모가 거부한 경우는 제외)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 80% 미만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미만

※ 모유수유 촉진 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5점 가산

* 모유수유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신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_____)

[12.1 부모교육]

기준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목적

출산 후 산모의 적절한 건강관리 및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DR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부모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계획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예산 등

○ 교육내용

- 산모 건강관리방안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법
  - 산욕기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회음부 감염, 수술부위 감염, 자궁내막염, 복막염, 혈전성 정맥염 등의 예방방법 등)
  - 회음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 유선염의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응급상황(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등)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모유수유방법
•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 수유자세, 트림방법 등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배꼽관리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방법
  (예)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교육방법
- 1:1 교육, 책자교육, 사이버교육 등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활용

2~5) 계획에 따라 산모별, 교육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관리하며 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6) 아버지가 산후교육(산모의 산욕기 교육),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교육계획 또는 교육지침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강의료 지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판정기준

1) 부모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부모별, 교육별 계획 스케줄 • 이수자 관리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가 작성됨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계획이 없음

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안 • 산욕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패드교환 방법 및 좌욕방법 •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산모건강관리방안' 교육 영역 중 4개 이상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음(근거자료 있음) - 교육 이수자료가 있으나 일부 누락됨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교육내용 중 3개 이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돌봄'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생아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 신생아 수유자세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신생아 돌봄' 교육 영역 중 5개 이상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 이수자료가 있으나 일부 누락됨	- '신생아 돌봄'의 교육 영역 중 4개 이하의 영역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교육자료 없음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교육 자료가 없음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유	무
필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함 (교육 자료 근거서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4. 신생아 건강평가
15. 신생아 관리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중영역	평가기준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식별한다.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5. 신생아 관리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13.1 신생아 확인]

기준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식별한다.

평가목적

신생아 식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식별방법
- 식별정보와 인식표 활용
  - 식별정보: 이름(부/모 이름), 성별, 출생일시 몸무게, 출생일자 등 2가지 이상의 식별정보
  - 인식표: 팔찌, 발찌, 네임스티커 등
-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신생아 식별방법 적용
- 동명 2인의 산모가 재실하는 경우 구분을 위하여 (산모명) 아기, (성별), (출생일자), (출생시 몸무게) 순으로 이용하여 구분한다.

○ 신생아 식별이 필요한 시점
- 입·퇴실 시
- 신생아실 면회, 모자동실 이용, 수유 전, 목욕 시, 약품 투여 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등

2) [필수]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3) [필수]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산모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간호(조무)사 1인과 산모가 동시에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출입기록지(신생아 건강기록부 대치 가능)

○ 판정기준

1)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인식표 사용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해야 함	- 발찌 또는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만 사용 - 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만 2개 사용	- 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 1개 사용

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관찰건수 100% 충족) -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확인함	- 관찰건수 60% 이상 - 신생아 식별 시 산모이름만 확인함	- 관찰건수 60% 미만

[14.1 신생아 건강평가]

기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신생아의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3)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신생아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구토, 설사, 호흡수, 호흡양상, 체온, 피부발진, 배꼽상태, 눈 분비물, 황달, 예방접종여부 등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100%)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 이상 기록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위의 내용에 대해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1회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80% 이상 충족)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 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3)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혹은 퇴원교육 체크리스트의 건강사정 5건 확인, 80%이상 충족)	- 일부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 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15.1 신생아 관리: 위생관리]

기준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평가목적

출생 후 면역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관리
- 배꼽관리
- 눈 분비물 관리
- 피부상태 관리(기저귀 발진 등)
- 물품관리(수유물품, 목욕대야, 기저귀, 물티슈 등)
- 배설물 처리 등

○ 신생아 위생관리는 건강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재원 중 1일 1회 이상 실시

2) 신생아에게 감염성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신생아 용품은 개별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1일 6회 이상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음 - 모든 신생아의 배꼽상태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저귀가 배꼽을 덮지 않음 - 모든 신생아의 눈이 분비물이나 감염증상 없이 깨끗하거나, 감염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받은 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 재원중인 신생아 3인 선정하여 신생아기록지 확인) ⇒ 3개 모두 충족	- 3개 중 2개 충족함 - 3개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관찰되나 기록이 누락됨	- 미충족

[15.2 신생아 관리: 신생아 수유]

기준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평가목적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신생아에게 적절한 수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수유물품관리, 수유준비, 보관된 모유나 분유 사용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생아의 위장관감염 위험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IT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유의 보관 및 관리
- 냉장·냉동 보관기한, 보관상태 점검 등

○ 분유의 보관 및 관리(분유 선택기준)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
- 시원한 실내에 보관된 분유 등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방법
- 수유물품 사용방법, 모유(분유) 준비, 모유(분유)데우기 등
- 모유(분유) 수유 방법
- 수유 중 신생아 상태 관찰
- 수유 후 처리방법

○ 수유준비실 관리
○ 냉장·냉동고 관리

2)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하여 모유에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보관기한을 준수한다.

3) 분유 선택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분유를 선택하고 관리한다.

4) 수유를 준비하는 곳은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전파되지 않도록(목욕물이 튀지 않을 정도)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유준비 전용 싱크대에서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5) [필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하고, 수유 시 신생아 혼자서 젖병을 물지 않게 한다. 모유수유 시에는 신생아실과 구분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수유관리규정(지침)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 관찰

○ 판정기준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있음 - 보관기한을 준수함 • 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함(유축시간 기록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임) ⇒ 2개 모두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 보관 중인 모유가 산모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보관기한이 경과된 모유가 있음

3) 분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를 사용함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를 사용함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청결한 곳에 보관되어 있음 - 분유의 개봉일자가 라벨링되어 있음(분말분유는 3주, 액상분유는 제품 권장기간 이내 사용)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4) 수유준비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준비실(조유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목욕싱크나 신생아와 가림막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음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가 있음 - 모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음 - 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이고 70℃ 이상에서 조유 후 40℃로 식혀서 수유함 -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함 (관찰 불가 시 직원 숙지 확인) ⇒ 5개 모두 충족	- 5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5) 수유 실시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모유수유 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함 -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없음 -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는 버림	-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있음 -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를 보관함

[15.3 신생아 관리: 안전관리]

기준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체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이동 시 안전관리 및 산모에게 인계시 출생 정보 확인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신생아 수면자세 관찰(앙와위, 측위자세)
○ 요람 관찰(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나 인형이 없어야함)
○ 산모실에서 신생아 수면 시 교육(산모침대 사용하지 않기)
○ 신생아 호흡상태, 피부색 변화 관찰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필수] 직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안전관리 규정(지침)

○ 판정기준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안전관리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직원·산모 각각 3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안전관리 교육 근거자료 확인) - 다음의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 신생아의 이동 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80% 미만(안전관리 교육자료 확인) - 신생아의 안전관리 준수 내용 중 1개 항목 미흡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내용 중 2개 이상 미흡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80% 미만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23 최종안)

○ 6개 대영역, 14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2개 평가항목(시범적용: 1개 평가항목 포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정규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필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4.3	낙상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5.5	운영 철학	1.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	시범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1.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2.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필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14	30		92(필수 40, 정규 51, 시범 1)	

부록 2.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기관용 신청서)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1 산후조리원 컨설팅이란?

산후조리원 컨설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돌봄, 모아애착, 부모교육 및 감염예방 영역에서의 적정성과 건강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향후 실시될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산후조리원 현장의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된 준비를 돕고자 실시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2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의 4년간 1~3차 컨설팅 80개소, 1일 방문 컨설팅 157개소로 총 237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컨설팅을 수료했습니다.

구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
1~3차 컨설팅 사업	28개소	25개소	13개소	14개소	80개소
1일 방문 컨설팅 사업	20개소	34개소	54개소	49개소	157개소
계	48개소	59개소	67개소	63개소	237개소

3 산후조리원 컨설팅의 종류

컨설팅은 1~3차 총 3번의 개별산후조리원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1~3차 방문 컨설팅'**과 지역별 1일(6시간) 소그룹 교육으로 진행되는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기존 '1일 방문 컨설팅'은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으로 변경되었음.)

- **[1~3차 방문 컨설팅]** 1~3차 방문 컨설팅은 **컨설팅의 전체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 달 간격 총 3차의 컨설팅으로 구성됩니다. 1차에는 컨설턴트가 개별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며, 2차 컨설팅에서는 중간 점검 성격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3차 컨설팅은 컨설팅 이행 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은 일정상 전체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한 장소에서 하루 동안(6시간) 소그룹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평가 준비를 위한 방향 설정, 해당 산후조리원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대안 제시 등**으로 진행됩니다.

| 1~3차 방문 컨설팅 운영절차 |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참여 신청 접수 •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선정 및 통보 • 컨설팅 운영체계 안내	선착순 모집(20개소)
1차 컨설팅	• 시범평가 시행과 컨설팅 병행 •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과 전문가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부분 점검	컨설턴트 2명이 컨설팅 수행
2차 컨설팅	• 중간점검 및 피드백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3차 컨설팅	• 컨설팅 내용 이행여부 점검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사후관리	•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참여기관(1~3차 컨설팅 참여 기관만) 사후간담회 • 수기공모전(신청시 소정의 사은품 지급함) • 부모교육 자료 제공	향후 사업에 활용

|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 운영절차 |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참여 신청 접수 •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선정 및 통보 • 컨설팅 운영체계 안내	지역별 선착순 모집(60개소)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	•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 준비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안내	교육 강사 1명이 강의 수행
사후관리	• 컨설팅 만족도 조사	향후 사업에 활용

◉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방식은 신청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컨설팅 사무국 담당자: 02-398-7718, 773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044-202-3398

2023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신청서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수요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신청을 원하시는 산후조리원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화	02-398-7718(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	팩 스	02-398-7798
이메일	consulting@kicce.re.kr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		

1 산후조리원 기본정보

산후조리원명			
주 소			
대표자명			
운영형태	□단독 □ 체인 □ 병의원 직영(부설) □ 지자체 운영(공공) □ 기타( )		
산 모 실	일반실 ( )개	특실 ( )개	
연락처 (담당자)	성 함		
	전 화		
	휴대폰		
	e-mail		
과거 컨설팅 참여경험	□ 없음 □ 있음 ( ) ※ 경험이 있는 경우 연도와 받으신 컨설팅 종류(1-3차 방문 / 1일 방문)를 써 주십시오.		

2 산후조리원 컨설팅 참여 신청

◉ 2023년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하는 컨설팅 종류에 표시해 주십시오. 이전에 컨설팅에 참여했었던 조리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3차 방문 컨설팅 참여	( )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	( )

◉ **1~3차 방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해당하는 곳에 O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분	컨설팅을 희망하는 월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6월	( )
7월	( )
8월	( )
9월	( )

※ 컨설팅 시작일은 담당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해당하는 곳에 O 표시를 해주십시오.**

회차	날짜	컨설팅 기관 수	장소	컨설팅을 희망하는 날짜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1회차	7. 5.(수)	15	[**서울** : 아우름비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95 창성빌딩 2층	
2회차	7. 6(목)	5	[**대구** : 사회정보연구원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98-12, 3층	
3회차	7. 7(금)	10	[**창원** : 모모 모임공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14 삼광빌딩 11층	
4회차	7. 11(화)	15	[**서울** : 서울중앙우체국 리셉션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10층 리셉션센터 1006호	
5회차	7. 12(수)	10	[**오송** : 레스팅 플레이스(본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65	
6회차	7. 13(목)	5	[**광주** : 르호봇 광주 비즈니스 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상무타워 5층 컨퍼런스 2룸	

-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은 각 회차 중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소재 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산후조리원에서 담당자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을 신청해 주신 산후조리원에는 컨설팅 진행에 대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컨설팅 사무국 담당자: 02-398-7718, 773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담당자: 044-202-3398

부록 3.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조사표(기관용)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Ⅰ. 기본정보

기본정보	산후조리원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개설일	최초	년 월 일	현업자	년 월 일
산후조리업자	☐ 개인(명), 의사(명), 한의사(명), 조산사(명), 간호사(명), 간호조무사(명) ☐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 법인명( )			
운영형태	☐ 단독 ☐ 체인 ☐ 병의원 직영(부설) ☐ 지자체 운영(공공) ☐ 기타( )	이용요금 (기본요금)	☐ 일반실(만원) ☐ 특 실(만원) ☐ 기 타(만원)	

〈작성방법〉
1. 개설일(신고증에 기재된 날)
   : 최초 산후조리원 개설일과 지위승계 등으로 산후조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현업자 개설일 모두 기재
2. 이용요금: 일반요금은 단태아, 2주, 카드결제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실요금은 일반요금과 동일기준이되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비싼 방의 요금을 기재. 일반, 특실외의 요금체계가 있는 기관의 경우 기타란에도 기재

Ⅱ. 시설 및 이용현황

<table>
<tr><th colspan="9">1. 시설현황</th></tr>
<tr><td>위치</td><td>산모실</td><td colspan="3">(　　) 층</td><td>신생아실</td><td colspan="4">(　　) 층</td></tr>
<tr><td rowspan="2">산모실</td><td>정원</td><td colspan="2">1인실</td><td>2인실</td><td>3인실</td><td rowspan="2">신생아실</td><td>정원</td><td>A실</td><td>B실</td><td>C실</td></tr>
<tr><td>명</td><td colspan="2">명</td><td>명</td><td>명</td><td>(　)명
(　)㎡</td><td>(　)명
(　)㎡</td><td>(　)명
(　)㎡</td><td>(　)명
(　)㎡</td></tr>
<tr><th colspan="9">2. 이용현황</th></tr>
<tr><td colspan="9">※평가 직전 월 1개월 간 기준으로 작성</td></tr>
<tr><td>산모실에 신생아가 머무는 하루 평균 시간
(*100%를 기준으로 작성)</td><td colspan="8">※전체 신생아 수:　　명
☐ 4시간 미만(　　%)　☐ 4-7시간(　　%)　☐ 8-11시간(　　%)
☐ 12-16시간(　　%)　☐ 16시간 초과(　　%)</td></tr>
<tr><td>모유수유 비율</td><td colspan="8">☐ 완전모유(　　%)　☐ 모유+인공(　　%)　☐ 인공수유(　　%)</td></tr>
<tr><td colspan="9">※평가 직전 년도 12개월 간 기준으로 작성</td></tr>
<tr><td>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 수</td><td colspan="3">(　　) 명</td><td colspan="2">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수</td><td colspan="3">(　　) 명</td></tr>
</table>

〈작성방법〉
1. 산모실에 신생아가 머무는 하루 평균 시간
   : 평가 직전 월 1개월 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전체 신생아의 1일 평균 산모실에서 머무는 시간, 비율을 계산하여 기재
2. 모유수유 비율
   : 평가 직전 월 1개월 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전체 신생아의 수유형태 비율을 계산하여 기재
3.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 수
   : 평가월 전월까지 12개월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기재
   [예시] 2018년 평가기관의 경우 2017년 12개월간 매일 입실 중인 영유아(신생아)수를 합산한 후 12개월의 총 날짜 수(예: 365일)로 나누어 계산함
   - 12개월간 총 입실 영유아(신생아)수가 5,000명인 경우: 5,000명 ÷ 365일 = 13.7명(14명)
   ※ 소수점자리 올림: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4.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수
   : 평가일 직전 년도 12개월간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수를 기재하되, 입실일수와 상관없이 1일이라도 산후조리원을 이용(입실)했다면 해당 산모를 포함하여 기재

Ⅲ. 인력현황

작성기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종사자 수(평가 직전 년도 12개월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기준)				
구분	**계**	**인원 수(명)**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총계				

2. 간호(조무사) 근무현황(평가 직전 년도 12개월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기준)				
근무교대		**1조**	**2조**	**3조**
근무시간		~	~	~
근무인원 (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성방법〉
1. 종사자 수
   - 계약직: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산후조리원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임
   - 임시직: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임
   -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대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 기재
     (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정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

   [예시 1]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가 20명인 경우 : 11명
   - 간호사: 20명 ÷ 7명 = 2.9명(3명)
   - 간호조무사: 20명 ÷ 2.5명 = 8명

   ※ 소수점자리 올림: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예시 2] 간호사 정원의 30%범위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경우
   - 간호사 정원이 4명인 경우부터 1명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간호사 정원이 3명인 경우 대체 불가(3명 중 1명이면 33.3%이므로 범위 초과)

   [예시 3]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이 2명으로 계산된 경우
   - 간호사는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3교대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2명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3명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해야 함
   - 영양사: 평가일 직전 년도 12개월간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기재
     (1일 평균 입실 임산부(산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1명 두어야 함)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계산방식과 동일함
   - 취사부(조리원):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조리원)를 두어야 함
   - 미화원: 규모에 따라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음

산후조리원 인력 이동 현황 조사

1. 현재 원장의 재직기간은?

___년 ___개월

1-1. 전임 원장의 재직기간은?

___년 ___개월

2. 최근 퇴직 간호사(최근 기준 2명) 재직기간은?

간호사1	
간호사2	

3. 최근 퇴직 간호조무사(최근 기준 3명) 재직기간은?

간호조무사1	
간호조무사2	
간호조무사3	

부록 4. 산후조리원 자체평가지(기관용)

자체평가지

_____ 산후조리원

(주소) _____

1. 시설 적정성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유	□무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상	□중	□하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유	□무	

2. 손 위생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상	□중	□하
3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상	□중	□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 확인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상	□중	□하

4. 모자동실, 모유수유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상	□중	□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상	□중	□하

5. 부모교육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유	□무	

부록 5.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컨설턴트용)

2023년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

평가대상 산후조리원	
현장 평가자 성명	(서명)
현장 평가일자	년 월 일

[현장평가표 Ⅰ. 1.1] 인력 적정성 (보건소 실태조사서)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생아 입실자료 – 신생아 재원 관리 대장
  5)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증
- 실제 건강관리인력 운영현황 조사

※ 평가점수와 무관한 실태조사 용도임

I.1.1-1) 법적 인력기준 준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법적 인력기준 준수			

번호	구분	평가결과 (실태조사)		비고	
		충족	미충족	시정조치 받음	시정조치 해결
1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 실제 건강관리인력 운영현황 조사

분류	평가항목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실태조사	실제 건강관리인력 운영현황	명	명	명

[현장평가표 Ⅰ.2.1] 종사자 채용·유지 (종사자 인사정보)

○ 확인내용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종사자 보안 각서(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 직무기술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신청서(산후조리원용)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I.2.1-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인사관리의 규정 확인			

I.2.1-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 인력 모집 / 배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직원 채용 절차 준수		

I.2.1-3 인사 정보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현장평가표 Ⅰ.2.2] 종사자 교육·계발(년도별)

○ 확인내용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이수 근거서류: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0. 1. 16.〉
- 종사자 교육 대장(자체 교육 확인용)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근거서류

Ⅰ.2.2-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연간 직원 교육계획			

Ⅰ.2.2-2)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1) 산후조리원 필수 교육
2) 법정의무교육
3) 신규직원 교육
4) 기타 직무교육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 기타 직무교육 또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자 교육 제외)을 계획하고 실제 실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5점 가산

Ⅰ.2.2-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현장평가표 Ⅰ.2.3] 종사자간 의사소통

○ 확인내용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 교대 일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Ⅰ.2.3-1)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Ⅰ.2.3-2)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1) 건강기록부, 교대근무일지 확인

2) 직원 인터뷰: 근무 교대 시 정보 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근무 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확인			

[현장평가표 Ⅱ.3.1] 시설 적정성

○ 확인내용

- 산후조리원 도면
-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 적정성 확인(관찰)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Ⅱ.3.1-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세면대 또는 손 소독기(제) 등의 손 씻기 시설)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의 손 씻기 시설			

Ⅱ.3.1-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 간격 확인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한지 확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영유아실(신생아실)
-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함)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 영유아(신생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공용면적 제외는 2017. 7. 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신생아 요람사이 간격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Ⅱ.3.1-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사전관찰실 여부			

Ⅱ.3.1-4)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산후조리원명		개 설 일	최 초	
			현업자	
주 소 지		전화번호	( )	

Ⅰ. 일 반 사 항

산후조리업자	☐ 개인(명), 의사(명), 한의사(명), 조산사(명), 간호사(명), 간호조무사(명), 일반인(명), 기타(명) ☐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 법인명 ( )			
운 영 형 태	☐ 단독 ☐ 체인 ☐ 병의원 직영(부설) ☐ 기타( )	건 물 형 태	☐ 단독건물 ☐ 병의원건물 ☐ 복합건물	
		건 물 규 모	입주 구역	(층 수) _____층 (면 적) _____㎡
			전체 건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_____㎡
협력 의료 기관	의료기관명	급 실 시 설	☐ 직영 ☐ 위탁	
	종 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동 일 건 물 소 재 ☐ 유 ☐ 무	세 탁 실	☐ 직영 ☐ 위탁	
	거 리			
산후조리원 이 용 요 금	☐ 일반실(만원) ☐ 특 실(만원)	이 용 요 금 공 개 방 법	☐ 접수창구·안내실 등 게시 ☐ 책자 등 비치 ☐ 홈페이지 공개 (주소 : www.)	
산모실에 신생아가 머무는 하루 평균 시간	☐ 4시간 미만 ☐ 8-11시간 ☐ 4-7시간 ☐ 12-23시간 ☐ 24시간	가 입 보 험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명 :) ☐ 화재보험 ☐ 기타( )	

임 산 부 실	정원	1인실	2인실	3인실	영 유 아 실	정원	A실	B실	C실
	명	실	실	실		명	명 (㎡)	명 (㎡)	명 (㎡)

모유수유 비율	완전모유	모유+인공	인공수유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명
	%	%	%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6개월간)	명

종 사 자 수	구 분	계	간호사	간호 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조리원)	미화원	기타
	정 규 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임 시 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근 무 교 대		1조		2조		3조	
	근 무 시 간		~		~		~	
	근무인원	간 호 사	명		명		명	
		간호조무사	명		명		명	

〈작성 방법〉
1. 개설일(신고증에 기재된 날)
   ‣ 최초 산후조리원 개설일과 지위승계 등으로 산후조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현업자 개설일 모두 기재
2. 산후조리업자
   ‣ (개인) 해당 자격에 인원 수 기재, 자격 중 간호사와 조산사 둘 다 해당되는 경우는 조산사 란에 기재(간호사와 조산사 중복기재 불가), 열거된 자격 중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기타 란에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인원 수 기재
   ‣ (법인) 해당 법인 종류에 ○표시하고 법인명 기재
3. 건물형태/ 규모
   ‣ (건물형태) '단독건물'은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병의원건물'은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복합건물'은 타 용도 시설과 산후조리원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 한 건물에 병의원(약국포함)과 산후조리원, 타 용도시설(편의점, 은행 등)이 모두 같이 있는 경우는 복합건물에 해당
   ‣ (건물규모) 입주구역에는 산후조리원의 층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전체건물은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전체 층수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을 기재
4. 협력의료기관
   ‣ 협력의료기관은 산모, 신생아 이송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종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산후조리원 동일건물 소재유무, 산후조리원에서 협력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기재
5.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 일반요금('만원' 단위)은 단태아, 2주, 카드결제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실 요금은 일반요금과 동일기준이되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비싼 방의 요금을 기재
6. 이용요금 공개방법
   ‣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되, 산후조리원의 별도 홈페이지는 없으나 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조리원이 안내되는 경우 해당 산부인과 홈페이지 주소 기재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모두 이용요금을 공개해야함
7. 가입보험
   ‣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염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란에 체크하고 가입 보험사명을 기재,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보험일 경우 화재보험 란에 체크하고, 나머지 가입보험은 기타 란에 모두 기재
8. 영유아(신생아)실
   ‣ 정원에는 실당 정원을 합하여 기재/ A, B, C실당 정원을 각각 기재하고 해당 면적을 기재
9.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 점검당시 직전년도(전년도) 12개월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10.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 (반기 마지막날인 6월30일, 12월 31일 경과 후 기재)
   ‣ 6개월 동안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수를 기재하되, 입실일수와 상관없이 1일(중도 퇴실의 경우)이라도 산후조리원을 이용(입실)했다면 해당 산모를 포함하여 기재
     * 예시) 7.2일 1명, 7.6일 2명의 산모가 각각 2주간 이용 후 퇴실, 7.28일 입실 산모 1명이 일주일만 이용 후 중도 퇴실한 경우 7월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총 산모수는 4명(입실일수 계산×)
   ‣ 산후조리원은 월별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수를 기록관리
   ‣ 신규개설된 산후조리원은 개설시점부터 6.30일 또는 12.31일까지 이용산모수를 기재하고 해당기간도 같이 기재
11. 종사자수
   ‣ 종사자수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어도 포함하지 않음. 미포함(산후조리업자 제외)

[현장평가표 Ⅱ.4.1] 설비관리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Ⅱ.4.1-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규정			

Ⅱ.4.1-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전기설비 관리			

Ⅱ.4.1-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미해당
정규	가스설비 관리			

Ⅱ.4.1-4)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Ⅱ.4.1-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실내공기질 관리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중점점검사항	이상 유무 확인	
		충족여부	조치결과
전기	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		
	3. 전선의 피복상태		
	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		
가스 시설	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		
	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		
	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		
급수	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		
	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		
실내 공기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		
	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		
	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혹은 주기적인 환기 (일 최소 2회, 한회 당 20분 이상)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현장평가표 Ⅱ.4.2] 소방안전관리

○ 확인내용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확인(연 1회)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화재예방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확인
- 소방훈련 근거서류(종사자 교육 대장으로 대체 가능)

Ⅱ.4.2-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소방안전관리 규정(또는 계획서)			

Ⅱ.4.2-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화재 예방 점검 수행			

Ⅱ.4.2-3) 소방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소방 교육 및 훈련 수행 여부 및 화재나 재난발생 시 대처방안 직원숙지 여부			

Ⅱ.4.2-4)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응급상황 연락체계		

■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호 서식)

(소방)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 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 · 변형 · 손상 · 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 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 · 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화재 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 · 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 · 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 · 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현장평가표 Ⅱ.4.3.] 낙상예방관리

○ 확인 내용
-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
- 낙상 예방 활동 근거 서류

Ⅱ.4.3.-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낙상예방 규정 확인			

Ⅱ.4.3.-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실, 산모실 실내바닥 미끄러움 상태			
2	산모, 신생아실 직원의 신발 바닥 확인 (산모와 직원의 신발바닥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거나 신었을 때 미끄럽지 않음)			
3	낙상예방 안내문(스티커) 부착 (산모실, 신생아실 모두 안내문 또는 스티커 부착)			
4	조명관리(야간 조명관리 등)			

	실내바닥 미끄러움		신발바닥 미끄러움		낙상예방 안내문		조명관리 (야간조명)		비고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신생아실 1									
신생아실 2									
신생아실 3									
산모실 1									
산모실 2									
산모실 3									
수유실 1									
수유실 2									
수유실 3									

[현장평가표 Ⅲ.5.1] 입·퇴실관리

○ 확인내용

- 입·퇴실 관련 규정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입실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고객용)

Ⅲ.5.1-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Ⅲ.5.1-2)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책임보험 가입 여부		

Ⅲ.5.1-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게시(비치) 여부		

Ⅲ.5.1-4) 입실, 퇴실 시 산모 교육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1) 입실안내문의 산모 교육 내용 확인

2)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3) 아래의 표와 같이 임의로 산모 3명에게 교육 내용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실, 퇴실 시 산모 교육 시행 여부			

		평가결과	비고
책임보험가입		□ 예 □ 아니오	
약관, 이용요금표, 환불규정 비치		□ 예 □ 아니오	
산모 1	보안교육	□ 예 □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 예 □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 예 □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 예 □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 예 □ 아니오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예 □ 아니오	
	낙상예방 교육	□ 예 □ 아니오	
산모 2	보안교육	□ 예 □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 예 □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 예 □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 예 □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 예 □ 아니오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예 □ 아니오	
	낙상예방 교육	□ 예 □ 아니오	
산모 3	보안교육	□ 예 □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 예 □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 예 □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 예 □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 예 □ 아니오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예 □ 아니오	
	낙상예방 교육	□ 예 □ 아니오	

Ⅲ.5.5-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현장평가표 Ⅲ.5.2] 의료기관 연계·이송

○ 확인내용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 최근 1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Ⅲ.5.2-1)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Ⅲ.5.2-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확인 건수: 최근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번호	세부 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이송여부 결정기준		□ 있음 □ 없음	
	결정기준 준수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2	이송절차		□ 있음 □ 없음	
3	보건소장 보고지침		□ 있음 □ 없음	
	보고 여부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4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신생아 1	□ 있음 □ 없음 □ 해당없음	
		신생아 2	□ 있음 □ 없음 □ 해당없음	
		신생아 3	□ 있음 □ 없음 □ 해당없음	

[현장평가표 Ⅲ.5.3] 문서관리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Ⅲ.5.3-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Ⅲ.5.3-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확인 건수: 5건)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번호			평가결과	비고
1	신생아 건강기록부	신생아 1	□ 양호 □ 미흡	
		신생아 2	□ 양호 □ 미흡	
		신생아 3	□ 양호 □ 미흡	
		신생아 4	□ 양호 □ 미흡	
		신생아 5	□ 양호 □ 미흡	
2	산모 건강기록부	산모 1	□ 양호 □ 미흡	
		산모 2	□ 양호 □ 미흡	
		산모 3	□ 양호 □ 미흡	
		산모 4	□ 양호 □ 미흡	
		산모 5	□ 양호 □ 미흡	

[현장평가표 Ⅲ.5.4] 방문객관리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확인

Ⅲ.5.4-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Ⅲ.5.4-2) 방문객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방문객 관리 여부			

번호			평가 결과	비고
1	방문객 관리대장 유무		□ 있음 □ 없음	
	관리대장 내용	방문일시	□ 있음 □ 없음	
		방문자 이름	□ 있음 □ 없음	
		연락처	□ 있음 □ 없음	
2	방문객 출입관련 안내문		□ 있음 □ 없음	

Ⅲ.5.4-3) 방문객 감염 관리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번호			평가 결과	비고
1	방문객 준수	방문객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4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5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2	방문객 세면대		□ 있음 □ 없음	
	방문객 손 위생	방문객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4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5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현장평가표 Ⅲ.5.5] 운영 철학

○ 확인내용

-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 및 직원 인터뷰(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Ⅲ.5.5-1) 산후조리업자의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운영철학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 직원 인터뷰)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시범	산후조리업자의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			

[현장평가표 Ⅲ.6.1] 고객관리

○ 확인내용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Ⅲ.6.1-1)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결과	비고
만족도 평가도구		□ 있음 □ 없음	
만족도 평가실시	산모 1	□ 예 □ 아니오	
	산모 2	□ 예 □ 아니오	
	산모 3	□ 예 □ 아니오	
만족도 분석결과 활용사례		□ 있음 □ 없음	

Ⅲ.6.1-2)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Ⅲ.6.1-3)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현장평가표 Ⅳ.8.1] 손 위생

○ 확인내용

- 손 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
-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 손 위생 교육 여부 확인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Ⅳ.8.1-1) 손 위생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손 위생에 대한 규정			

Ⅳ.8.1-2) 직원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직원 손 위생 수행 여부			

■ 손 위생 활동 점검표(직원)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근무 시작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음식 먹기 전·후				
4	신생아 접촉 전·후				
5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6	기저귀 교환 전·후				

Ⅳ.8.1-3) 산모 손 위생 교육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산모 손 위생 교육 수행 여부			

■ 손 위생이 필요한 활동 사례-산모 대상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음식 먹기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신생아 접촉 전·후				
4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5	기저귀 교환 전·후				

Ⅳ.8.1-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Ⅳ.8.1-5)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현장평가표 Ⅳ.8.2] 개인보호구 착용

○ 확인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Ⅳ.8.2-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Ⅳ.8.2-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No.	점검사항 (관찰)	점검결과 *		비고
		충족	미충족	
1	업무 중 감염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2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3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염소계 소독제 등) 등			
4	기구, 물품 세척 시(젖병세척 포함)			

* 관찰로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여부 확인, 직원 3명의 평균으로 충족률 산출

[현장평가표 Ⅳ.8.3] 세탁물 관리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Ⅳ.8.3-1) 세탁물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세탁물에 대한 규정			

Ⅳ.8.3-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세탁물 관리 여부			

■ 세탁물 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세탁물 수집용기 유무			
2	세탁물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여부			
3	세탁물 수집장소 관리상태(청소일지, 청결상태 확인)			
4	세탁물 분리 수집 여부(오염/일반세탁물 분리보관)			
5	세탁물 처리 상태(자체세탁, 외부위탁 확인)			
6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관리상태			

[현장평가표 Ⅳ.8.4] 물품 소독·관리

○ 확인내용

- 기구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보관장소
- 신생아 소독 점검표
- 세척직원 복장 확인
- 사용 중인 물품소독제 사용설명서와 인증서

Ⅳ.8.4-1)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Ⅳ.8.4-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Ⅳ.8.4-3)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구분		평가결과	비고
신생아용품 개별보관	기저귀	□ 예 □ 아니오	
	물티슈	□ 예 □ 아니오	
	비누	□ 예 □ 아니오	
	로션	□ 예 □ 아니오	
	목욕대야	□ 예 □ 아니오	
신생아요람 소독	소독일지(관련내용포함)	□ 있음 □ 없음	
	소독	□ 예 □ 아니오	
목욕대야 소독	소독지침	□ 있음 □ 없음	
	지침 준수	□ 예 □ 아니오	
수유물품 소독	소독전 세척	□ 예 □ 아니오	
	소독	□ 예 □ 아니오	
	건조 후 보관	□ 예 □ 아니오	
산모용품 개별사용	유축깔때기	□ 예 □ 아니오	
	좌욕대야	□ 예 □ 아니오	
물품소독제 인증서 유무		□ 있음 □ 없음	

[현장평가표 Ⅳ.8.5] 환경관리

○ 확인내용

- 환경위생관리 규정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설명서, 인증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Ⅳ.8.5-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Ⅳ.8.5-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미해당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수유준비 구역(장소) 관리				
5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6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7	좌욕실 관리				
8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9	손 씻기 시설의 청결도				
10	기구 세척 구역(장소) 관리				
11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12	페달을 밟아 뚜껑을 열 수 있는 폐기물통 사용				

[현장평가표 Ⅳ.8.6] 급식관리

○ 확인내용

-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상태 점검
-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표시 및 점검 유무 확인
- 조리장 종사자 복장(위생모,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착용 및 위생상태 점검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Ⅳ.8.6-1)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Ⅳ.8.6-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Ⅳ.8.6-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식재료 관리상태				

Ⅳ.8.6-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Ⅳ.8.6-5)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 조리원 손 위생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충족	미충족	미해당
1	조리실에서 작업 시작 전·후			
2	세척 안 된 식자재 및 오물 취급 후			
3	각기 다른 종류의 식재료 취급 및 조리 전			
4	생선, 날고기 등 취급 후			
5	음식을 만지기 전			
6	기구나 설비 사용 전			
7	화장실 출입 후			
8	쓰레기 취급 후			
9	신체 부위나 몸을 만진 후			
10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후			
11	소독제나 세척제를 만진 후			
12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한 후			

Ⅳ.8.6-6) 외부 위탁시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미해당
정규	외부 위탁시 관리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식품위생 법정기준 준수 (점검결과)		□ 예 □ 아니오	
2	유통기한 준수	식품 1	□ 예 □ 아니오	
		식품 2	□ 예 □ 아니오	
		식품 3	□ 예 □ 아니오	
3	정수기 점검(점검일지)		□ 예 □ 아니오	
4	조리도구·행주	소독방법	□ 준수 □ 미준수	
		건조상태	□ 예 □ 아니오	
5	냉장·냉동 온도확인	온도계 비치	□ 예 □ 아니오	
		적정온도 유지	□ 예 □ 아니오	
6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유무	□ 있음 □ 없음	
		청결상태	□ 예 □ 아니오	
7	취사자 복장 및 청결		□ 예 □ 아니오	

[현장평가표 Ⅳ.8.7] 종사자 관리(최근 1년간)

○ 확인내용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제16조 제2항 관련)
〈신설 2020. 1. 16.〉

Ⅳ.8.7-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건강검진	장티푸스 외	□ 예 □ 아니오	
		잠복결핵검진	□ 예 □ 아니오	
2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 예 □ 아니오	
		백일해	□ 예 □ 아니오	
3	종사자 감염성 질환 관리 지침		□ 있음 □ 없음	
4	지침 내용	근무 제한	□ 예 □ 아니오	
		제한 기간	□ 예 □ 아니오	
		조치	□ 예 □ 아니오	

Ⅳ.8.7-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Ⅳ.8.7-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숙지 여부		

[현장평가표 Ⅳ.9.1] 감염관리

○ 확인내용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Ⅳ.9.1-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Ⅳ.9.1-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구분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비고
		① 격리방법	② 직원대상 격리 관련 교육 및 보호구 착용	③ 의료기관 이송계획 및 보건소 신고	④ 격리물품 구비	⑤ 신생아 추가 감염 확인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직원의 내용 숙지 여부	직원 1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직원 2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직원 3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현장평가표 V.10.1] 산모 건강평가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산후우울증 설문지

V.10.1-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V.10.1-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재원 중 산모 산후우울증 평가 및 기록 여부			

[현장평가표 V.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 확인내용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모아애착 증진 서식

V.11.1-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모아애착 증진 서식			

V.11.1-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신생아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5점 가산

구분		평가결과	비고
모자동실 촉진 교육이나 활동		□ 있음 □ 없음	
모자동실 이용시간	신생아 1	( ) 시간	
	신생아 2	( ) 시간	
	신생아 3	( ) 시간	
	신생아 4	( ) 시간	
	신생아 5	( ) 시간	
	6시간 이상	( ) %	80% 이상이면 '상'

V.11.1-3)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 모유수유 촉진 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5점 가산

* 모유수유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신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_____)

구분	모유수유 횟수					모유수유 촉진활동	비고 (*에 해당하는 번호 기입)
신생아 1						□ 있음 □ 없음	
신생아 2						□ 있음 □ 없음	
신생아 3						□ 있음 □ 없음	
신생아 4						□ 있음 □ 없음	
신생아 5						□ 있음 □ 없음	
모유수유 1일 8회 이상				( )%		80% 이상이면 '상'	

* 모유수유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신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

[현장평가표 V.12.1] 부모교육

○ 확인내용

- 교육계획 또는 교육지침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강의료 지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V.12.1-1) 부모교육 계획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부모교육 계획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확인			

V.12.1-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V.12.1-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V.12.1-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V.12.1-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V.12.1-6) 아버지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아버지 교육 시행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교육내용			교육방법		
			설명	시범	기타
산모 건강 관리	산모 위험 상황의 증상과 대처방안 *위험상황: 감염, 출혈, 우울				
	산욕기 감염성 질환과 예방 관리				
	회음 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영양 섭취				
신생아 돌봄	신생아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신생아 수유 자세, 트림 방법				
	신생아 목욕 방법				
	신생아 기저귀 교환 방법				
	신생아 배꼽 관리 방법				
	신생아 상호촉진방법				
	영아돌연사 예방 방법				
부	산후 돌봄 및 신생아 돌봄 방법				

날짜	교육자 서명	부모 서명	

[현장평가표 Ⅵ.13.1] 신생아 확인

○ 확인내용

- 신생아 출입기록지(신생아 건강기록부 대치 가능)

Ⅵ.13.1-1)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Ⅵ.13.1-2) 신생아 인식표 사용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인식표(팔찌 혹은 발찌) 여부			

Ⅵ.13.1-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전달 시 식별 정보 확인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인식표	식별정보(2가지)	□ 예 □ 아니오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해야 함.
		항상 착용	□ 예 □ 아니오	
2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신생아 1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2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3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4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5	□ 적합 □ 부적합	

[현장평가표 Ⅵ.14.1] 신생아 건강평가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Ⅵ.14.1-1)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Ⅵ.14.1-2)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Ⅵ.14.1-3)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현장평가표 Ⅵ.15.1] 위생 관리

○ 확인내용

-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Ⅵ.15.1-1)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Ⅵ.15.1-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구분		평가결과	비고
위생지침	지침 보유	☐ 예 ☐ 아니오	
신생아 1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 예 ☐ 아니오	
	기저귀 발진	☐ 정상 ☐ 비정상	
	배꼽 상태	☐ 정상 ☐ 비정상	
	눈 상태	☐ 정상 ☐ 비정상	
신생아 2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 예 ☐ 아니오	
	기저귀 발진	☐ 정상 ☐ 비정상	
	배꼽 상태	☐ 정상 ☐ 비정상	
	눈 상태	☐ 정상 ☐ 비정상	
신생아 3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 예 ☐ 아니오	
	기저귀 발진	☐ 정상 ☐ 비정상	
	배꼽 상태	☐ 정상 ☐ 비정상	
	눈 상태	☐ 정상 ☐ 비정상	

[현장평가표 Ⅵ.15.2] 신생아 수유

○ 확인내용

- 수유관리규정(지침)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 관찰

Ⅵ.15.2-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Ⅵ.15.2-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Ⅵ.15.2-3) 분유 관리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분유 관리			

Ⅵ.15.2-4) 수유준비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수유준비			

Ⅵ.15.2-5) 수유 실시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수유 실시		

구분		평가결과	비고
산모별 모유 냉동 보관		□ 예 □ 아니오	
모유보관기간 (72시간 미만)	모유 1 ( )시간	□ 적합 □ 부적합	
	모유 2 ( )시간	□ 적합 □ 부적합	
	모유 3 ( )시간	□ 적합 □ 부적합	
냉동모유 가열 방법		□ 정상 □ 비정상	
분유 물의 가열 방법		□ 정상 □ 비정상	
셀프 수유 여부		□ 없음 □ 있음	

[현장평가표 Ⅵ.15.3] 안전관리

○ 확인내용

- 신생아 안전관리규정(지침)

Ⅵ.15.3-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Ⅵ.15.3-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직원·산모 각각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구분		평가결과	비고
예방방안 숙지	직원 1	□ 예 □ 아니오	
	직원 2	□ 예 □ 아니오	
	직원 3	□ 예 □ 아니오	
신생아 수면자세		□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 □ 엎드린 자세	
신생아 요람내 시트		□ 정상 □ 비정상	
신생아 수면장소	산모 1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	
	산모 2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	
	산모 3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	

Ⅵ.15.3-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구분		평가결과	비고
대처방안 숙지	직원 1	□ 예 □ 아니오	
	직원 2	□ 예 □ 아니오	
	직원 3	□ 예 □ 아니오	
	직원 4	□ 예 □ 아니오	
	직원 5	□ 예 □ 아니오	

부록 6.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대상기관명	산후조리원명 (지역)		
조사기간	2023-00-00	보고일자	2023-00-00

구분	조사위원명	소속기관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1			
조사위원 2			

상기 조사위원은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 1. 총평보고서

2. 팀별 항목별보고서

첨부 1. 총평보고서

총평 보고서

대상기관명	산후조리원명
조사기간	2023년 00월 00일 0AM ~ 0PM

1. 총평

2. 중영역별 조사위원 평가
* 조사결과가 무, 중, 하인 평가항목에 대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중영역	평가항목	내용
(1) 인력 적정성		
1.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2) 인력 전문성		
2.1.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2.1.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2.1.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2.2.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2.2.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2.2.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2.3.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2.3.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3) 시설 적정성		
3.1.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3.1.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3.1.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3.1.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4) 시설 안정성		
4.1.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4.1.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4.1.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4.1.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1.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4.2.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4.2.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4.2.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4.2.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4.3.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4.3.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5) 운영관리		
5.1.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5.1.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5.1.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5.1.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5.1.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5.2.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5.2.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5.3.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5.3.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5.4.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5.4.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5.4.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5.1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	
(6) 고객관리		
6.1.1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6.1.2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6.1.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8) 감염예방		
8.1.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8.1.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8.1.3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8.1.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8.1.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8.2.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8.2.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8.3.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8.3.2	세탁물을 관리한다.	
8.4.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8.4.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8.4.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8.5.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8.5.2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8.6.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8.6.3	식재료를 관리한다.	
8.6.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8.6.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8.6.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8.7.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8.7.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7.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9) 감염관리		
9.1.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9.1.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10) 산모 건강평가		
10.1.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0.1.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11) 모아애착		
11.1.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11.1.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1.1.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2) 부모교육		
12.1.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2.1.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12.1.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12.1.4	신생아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12.1.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12.1.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13) 신생아 확인		
13.1.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13.1.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13.1.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4.1.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4.1.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5) 신생아 관리		
15.1.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15.1.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15.2.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15.2.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15.2.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15.2.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15.2.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15.3.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15.3.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15.3.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첨부2. 항목별보고서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인력 적정성	1.1	필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DR	S	O				- 보건소 실태조사서 결과 확인 1) 종사자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생아 입실자료-신생아 재원관리 대장 5)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증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춤 - 1명 이상의 상시근무 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상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2.1.1	정규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인사관리규정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										
	2.1.2	필수	직원 채용 절차를 준수한다.	DR	P	O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 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종사자 보안 각서(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신청서 (산후조리원용)		- 법정 건강검진(잠복결핵검사 등),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 관련 여부 진단 및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일해)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2.1.3	정규	인사 정보를 관리한다.	DR	P	O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 갱신 서류 - 면허갱신 근거서류		-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누락없이 작성되고 연도별로 관리함										
종사자 교육·계발	2.2.1	정규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DR	S	O				- 연간 직원 교육 계획서		- 연간 교육 계획에 필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2.2.2	정규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DR	P	O				-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교육, 기타 직무교육		- 산후조리원 종사자 필수교육을 시행함 - 산후조리원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중 80% 이상 수행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신규 직원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관되어 있음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2.2.3	필수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DR	P	O				- 교육이수 근거서류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필수교육(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 * 위에 제시된 3개 기준 모두 충족 (교육이수 수료증 확인)										
종사자 간 의사 소통	2.3.1	정규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교대 시 종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2.3.2	정규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DR/IT	P	O		O		- 근무교대 일지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공유 내용이 충실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2개 모두 충족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1	필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IT	S		O			-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 입구에 세면대 설치 확인		-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 또는 손소독제)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										
	3.1.2	정규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IT	P		O			- 보건소 신고 인원(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에 적절한지 확인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함										
	3.1.3	정규	신생아실에 사전 관찰실이 있다.	IT	S	O	O			- 산후조리원 도면 - 사전관찰실		- 사전관찰실이 있으며, 출입문과 투명한 벽체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										
	3.1.4	정규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IT	P		O			- 신생아실 외부		- 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함										
4. 시설 안전성																						
설비 관리	4.1.1	정규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야 함)										
	4.1.2	정규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 서류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 - 법적 점검서류 있음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4.1.3	정규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 서류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있음 - 주기적인 가스점검 실시 - 점검표 3개 모두 충족										
	4.1.4	정규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 서류		- 점검표 2개 항목 모두 충족										
	4.1.5	정규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DR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 서류		- 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 - 에어컨 청소 필터교체, 환기시설 관리 점검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점검표 3개 항목 모두 충족										
소방안전관리	4.2.1	필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DR	S	O				- 소방안전관리 규정(또는 계획서)		- 소방안전을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함										
	4.2.2	필수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DR/IT	P	O	O			- 소방서 또는 대행업체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또는 자체점검 결과 확인: 화재 예방 안전 관리 및 안전시설 등의 세부 점검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 현장 점검 시 이상 없음										
	4.2.3	필수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DR/IT	P	O		O		- 소방 교육 및 훈련 근거서류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확인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4.2.4	정규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IT	P		O			- 산모에게 응급상황 연락 체계 설명	3건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응급벨,인터폰, 유선전화기(단축키 지정) 등)가 있음(※ 연락체계로 핸드폰은 제외										
낙상예방관리	4.3.1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 낙상 예방 규정		-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4.3.2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DR/IT	P		O			- 낙상 예방 안전점검표 - 낙상 예방 활동 근거 서류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해 직원숙지 80% 이상 - 제시된 기준 중 3개 모두 충족										
Ⅲ.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5.1.1	정규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DR	S					- 입퇴실 관련 규정		-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5.1.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DR	S	O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 책임가입증명서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5.1.3	필수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IT	P		O			-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산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고 있음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5.1.4	정규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DR/IT	P	O				○ 입실 시 산모 교육: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아래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 계획 - 방문객 관리 계획 - 감염예방 관리 계획 -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계획 - 낙상예방 계획 ○ 퇴실 시 산모 교육: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3건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 교육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5.1.5	정규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IT	P	O		O		- 입·퇴실관련 근거자료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고객용)	5건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내용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퇴실시 신생아 확인절차를 준수함 (확인 불가시 면담으로 확인) 100%										
의료기관 연계·이송	5.2.1	필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DR	S	O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		-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이송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지침(보고해야하는 사항, 보고담당자, 보고시점 등 포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5.2.2	필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DR/IT	P	O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3건	○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보고방법, 보고사항) -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 (근거서류 확인) -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감염 확산 보고서를 작성함										
문서관리	5.3.1	정규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문서관리 규정		- 보관중인 문서에 대한 관리규정(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5.3.2	정규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O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최소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록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5.4.1	정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보호자(주출입자)는 산모가 지정한 1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방문객 관리	5.4.2	필수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T	P	O	O			- 방문객 명부(대장)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산후조리원 입구 게시내용 확인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감염이 있는 자 • 화농성 질환 등 감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자 •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질환이 있는 자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 • 최근에 예방접종(MMR, 수두, 폴리오)한 아동과 접촉한 자 • 산후조리원 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5.4.3	정규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O	O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 - 방문객 감염예방 교육 근거자료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확인	5건	-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 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평가일에 방문객 손 위생 수행 관찰(최소 5인): 100%실시										
운영 철학	5.5.1	시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	IT	S			O		-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 직원 인터뷰		-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음(3개 모두 해당)										
6. 고객관리																						
고객 관리	6.1.1	정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P	O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퇴실한 산모 자료 확인	3건	-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 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 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모두 충족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6.1.2	정규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O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 근거 서류		-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고충처리함, 안내문 등)										
	6.1.3	정규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O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관련 서류 있음										
8. 감염예방																						
손 위생	8.1.1	필수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손 위생 대한 규정		-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8.1.2	필수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O	O		-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5건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8.1.3	필수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IT	P		O		O	- 손 위생 교육 여부 확인	5건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 (5명 확인) - 산모가 손 위생 시점 숙지 80% 충족(3명에게 질문)										
	8.1.4	필수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IT	P	O	O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 - 구매(입고)내역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되어 있으며 개봉 후 6개월 이내일 것 - 손 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인증서 확인)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 내역 근거서류 있음										
	8.1.5	필수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IT	P		O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 비치 (부착) •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 부착										
개인 보호구 착용	8.2.1	정규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DR	S	O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장갑, 마스크, 가운을 착용해야 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										
	8.2.2	정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T	P		O	O		- 보호구 착용 시점에 보호구 착용 - 기구물품 세척 시 보호구 착용	3건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 (80%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세탁물 관리	8.3.1	정규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		-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8.3.2	정규	세탁물을 관리한다.	IT	P	O	O			- 세탁물 관리 점검표		- 점검표 5개 항목 이상 충족										
물품 소독 ·관리	8.4.1	정규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		-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8.4.2	정규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IT	P		O			- 수유물품 소독 - 소독일지(신생아 요람 사항 포함) 작성 및 신생아 요람 정기 소독 - 목욕대야 소독(직원1인 이상) - 세척직원 보호장구 착용여부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경우(자불: 열탕) 소독 또는 국내외 승인된 전용 소독제 사용) - 소독일지(신생아요람 관련사항 포함)를 작성하고 신생아요람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경우 - 목욕대야 소독은 중간수준 이상이며, 제품설명서에서 제시한 소독시간, 농도 등 준수함(직원 1인 이상 관찰) - 세척 시 필요한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고,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하여야 함 ⇒ 4개 모두 충족										
	8.4.3	정규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IT	P		O			- 수유물품 보관상태 - 신생아용품 개별보관, 사용 - 목욕대야 보관상태 - 산모 유축 깔때기, 좌욕대야 개별 보관, 사용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신생아용품(기저귀, 물티슈, 비누,목욕대야, 로션)은 신생아마다 개별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펌프용 비누, 펌프용 로션은 제외) - 목욕대야는 포개져 있지 않음(개별 포장 제외) - 유축깔때기, 좌욕대야는 산모마다 개별 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열탕소독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하는 경우 제외) ⇒ 4개 모두 충족										
환경 관리	8.5.1	정규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고,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8.5.2	정규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O	O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 설명서, 인증서		- 점검표 항목 80% 이상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급식 관리	8.6.1	정규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DR	S	O				- 조리장에 대한 위생 관리 규정		-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단, 위탁하는 경우 위탁시 관리내용을 포함)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8.6.2	정규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IT	P		O			- 식기, 조리기구 보관상태 - 위생/오염구역 구분 - 음식물쓰레기 관리		-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 보관함에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작업 관리하고 있음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										
	8.6.3	정규	식재료를 관리한다.	IT	P	O	O			- 식재료 검수일지 - 유통기한 준수 여부 - 식재료 개봉일자 라벨링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8.6.4	정규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IT	P		O			-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 식재료 보관상태 - 냉장/냉동고 청결 상태		-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에, 물기 없어야 함) - 모든 식재료는 밀봉을 하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함										
	8.6.5	정규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IT	P		O			- 취사자 복장상태 - 취사자 손 위생여부 - 유증상 직원 관리방법 숙지여부		- 모든 조리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8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80% 이상										
	8.6.6	정규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DR	P	O				- 위탁기관: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등)이 이루어진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짐 - 급식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음										
종사자 관리	8.7.1	필수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직원 안전에 대한 규정		-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8.7.2	필수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O				- 건강검진, 예방접종확인서 - 감염노출사고,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 -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표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근거서류 확인) - 종사자 위생관리점검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사자 위생관리가되었는지 확인함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8.7.3	필수	직원은 감염노출 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IT	P			O		-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3건	-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100%										
9. 감염관리																						
감염관리	9.1.1	필수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DR	S	O				- 감염성 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구체적인 조치 및 관리 계획 포함되어 있어야 함)										
	9.1.2	필수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IT	P	O		O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자료 -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조치 및 점검표	3건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류가 있음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산모 건강 평가	10.1.1	정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모든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80% 이상 기록 충족)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10.1.2	정규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확인) - 산후우울증 설문지	5건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을 평가 시행함 (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 있음										
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11.1.1	필수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O				- 모아 애착을 위한 계획 - 모아애착 증진 서식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모두 포함 되어야 함 - 모아애착증신 서식을 작성하고 있음										
	11.1.2	필수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 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중 선정)	5건	-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산모실 이용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80% 이상(※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5인 선정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11.1.3	필수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 모유수유 촉진 교육 근거 자료, 신생아 건강기록부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 확인	5건	-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5인을 선정하여 신생아 건강기록지를 이용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유수유가 금기인 경우, 산모가 거부한 경우는 제외)										
12. 부모교육																						
부모교육	12.1.1	필수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O				- 교육계획 및 교육 지침 - 교육 이수자 관리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부모별, 교육별 계획 스케줄 • 이수자 관리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가 작성됨										
	12.1.2	필수	산모의 건강관리 방안을 교육한다.	DR	P	O				- 건강관리방안 내용 교육 여부 - 교육이수 기록지 - 교육일정 제공	3건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안 • 산욕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패드교환 방법 및 좌욕방법 •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12.1.3	필수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DR	P	O				- 신생아 돌봄 방법 내용 교육 여부 - 교육이수 확인 - 교육일정 제공	3건	- '신생아 돌봄'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생아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 신생아 수유자세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12.1.4	필수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DR	P	O				- 신생아 상호작용 촉진 교육 여부 - 교육이수 확인 - 교육일정 제공	3건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12.1.5	필수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DR	P	O				- 영아돌연사 예방 교육 여부 - 교육이수 확인 - 교육일정 제공	3건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12.1.6	필수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DR	P	O				- 교육근거 자료	3건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함 (교육 자료 근거서류)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신생아 확인	13.1.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식별 규정		-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13.1.2	필수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IT	P		O			- 식별정보와 인식표 착용 여부 - 신생아 건강기록부		-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 함										
	13.1.3	필수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IT	P		O			- 신생아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 확인 여부	5건	-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 (관찰건수 100% 충족) -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확인함										
14. 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건강 평가	14.1.1	정규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100%)										
	14.1.2	정규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위의 내용에 대해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1회 이상)(※ 평가일로부터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80%이상 충족)										
	14.1.3	정규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모든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혹은 퇴원교육 체크리스트의 건강 사정 5건 확인, 80% 이상 충족)										
15. 신생아 관리																						
위생관리	15.1.1	정규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위생 관리 지침		-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15.1.2	정규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IT	P	O	O			-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 기저귀교환(1일6회 이상) - 배꼽상태 - 눈 분비물, 청결 상태 - 눈 위생 실시	3건	- 모든 신생아에 대해 1일 6회 이상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음 - 모든 신생아의 배꼽상태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저귀가 배꼽을 덮지 않음 - 모든 신생아의 눈이 분비물이나 감염증상 없이 깨끗하거나, 감염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받은 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재원중인 신생아 3인 선정하여 신생아기록지 확인) ⇒ 3개 모두 충족										
신생아 수유	15.2.1	정규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수유관리 규정		-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15.2.2	정규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O			- 냉장/냉동 중인 모유 보관상태 - 보관기한 준수		-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산모별로 분리,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있음 - 보관기한을 준수함 • 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함(유축시간 기록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임) ⇒ 2개 모두 충족										
	15.2.3	정규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O			- 분유 유효기간 관리 - 분유통 관리상태 - 분유 보관장소 - 분유 개봉일자 라벨링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를 사용함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를 사용함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청결한 곳에 보관되어 있음 - 분유의 개봉일자가 라벨링되어 있음(분말분유는 3주, 액상분유는 제품 권장기간 이내 사용) ⇒ 4개 모두 충족										
	15.2.4	정규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IT	P		O	O		- 수유준비실(별도 공간 분리)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 여부 - 모유 데우는 방법 - 분유 조제 방법 - 수유직전 분유준비		- 수유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목욕 싱크나 신생아와 가림막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음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가 있음 - 모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음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 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이고 70℃ 이상에서 조유 후 40℃로 식혀서 수유함 -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함 (관찰 불가시 직원 숙지 확인) ⇒ 5개 모두 충족										
	15.2.5	필수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IT	P		O			- 모유수유 실시(수유실, 산모실) - 신생아self수유확인 - 수유 후 남은분유(모유)처리		- 모유수유 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함 -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없음 -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는 버림										
안전관리	15.3.1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안전관리 규정		-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15.3.2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O	O	O	- 신생아 안전관리 규정	3건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안전관리 교육 근거자료 확인) - 다음의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 신생아의 이동 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 이름, 성별, 출생 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 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15.3.3	필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IT	P			O			5건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부록 7. 산후조리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5-1. 1~3차 컨설팅

컨설팅 결과보고서(시범평가 결과보고서에서 '하' 또는 '무'인 영역 중심으로)

대상기관명	○○산후조리원(서울)		
조사기간	2023. 09. 03	보고일자	2023. 09. 10

〈1차 컨설팅〉

소영역	구분	미비점	개선과제/합의사항
(예시) 1.1 인력의 적정성	규정	1. 2.	1. 2.
	관찰사항	1. 2.	1. 2.
5.1 입·퇴실관리	규정	1. 2. 3.	1. 2. 3.
	관찰사항	1. 2. 3.	1. 2. 3.

2차 컨설팅 일자		방문 컨설턴트명 (분야)	

〈2차 컨설팅: 중간점검〉

소영역	구분	개선사항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3차 컨설팅 일자		방문 컨설턴트명 (분야)	

〈3차 컨설팅: 최종점검〉

소영역	구분	개선사항	종합의견(추후 관리계획 포함)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부록 8. 컨설팅 참여 기관 만족도 조사

2023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만족도 조사

Ⅰ. 응답자 일반 정보

1.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지역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인천 □ ④ 충청권 □ ⑤ 강원권 □ ⑥ 전라권 □ ⑦ 경상권 □ ⑧ 제주 (※ 산후조리원 소재 지역 기입)
1) 직책	□ ① 원장 □ ② 건강관리책임자 □ ③ 간호사 □ ④ 기타( )

2. 산후조리원 근무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경력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_____ 산후조리원 / _____ 직책 / ___년 ___개월

Ⅱ. 컨설팅 운영평가

1. 컨설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대체로 만족 □ ④ 매우 만족

2. 컨설팅의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 정도에 V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컨설팅 세부내용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별로 만족하지 않음	3 대체로 만족함	4 매우 만족함
1) 컨설팅 내용				
2)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3) 규정 및 서식사례집				
4) 컨설팅 소요 시간				
5) 컨설팅 방역지침				
6) 컨설팅 주기				
6-1) 금년에는 한 달(또는 한달 미만) 간격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팅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달 □ ② 2달 □ ③ 3달 □ ④ 기타( )			
7) 컨설팅 횟수				
7-1) 금년에는 총 3차의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팅 횟수는 어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기타 (___회)			

3. 다음은 컨설팅 운영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컨설팅 운영 개선	1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3 운영 및 고객관리	4 감염예방 관리	5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6 신생아 돌봄서비스
1)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은 무엇입니까?						
2)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5.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를 받은 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특정 평가 등급 이상 또는 기준 점수 충족 시), 어떤 인센티브를 희망하시는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안내

본 조사의 수행 기관인 사회정보연구원에서는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응답 여부와 내용 확인 및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조사 기간 종료 후 전량 폐기되며 귀하께서는 본 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9. 2022~2023년 평가기준집 비교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1.1 인력 적정성</td><td>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생아 입실자료 – 신생아 재원 관리 대장

</td><td>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생아 입실자료 – 신생아 재원 관리 대장
5) 간호사, 간호조무사 면허증

</td></tr>
<tr><td>2.1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td><td>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DR	P	필수	□유 □무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DR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인사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직원 채용절차
- 자격조건(근무경력 등)
- 건강검진확인(근무예정자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잠복결핵검사)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 인사정보관리

</td><td>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DR	P	필수	□유 □무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인사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직원 채용절차
- 자격조건(근무경력 등)
- 건강검진확인(근무예정자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잠복결핵검사)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 인사정보관리

</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정보(예: 면허, 교육 등) 갱신 및 관리
-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
○ 직무기술서 작성 및 관리
- 직무 내용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자격요건 등
※ 설비/소방담당, 산모교육 담당, 감염관리 담당, 급식관리 담당, 문서관리 담당, 자체점검 담당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필수] 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모집/배치한다.
3)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정보 등)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4) 직무기술서는 직무내용 및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기술서는 산후조리원의 규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 보완한다.</td><td>-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정보(예: 면허, 교육 등) 갱신 및 관리
-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

2) [필수] 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모집/배치한다.

3)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정보 등)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td></tr>
<tr><td>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td><td>평가항목의 이해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예산 등

○ 법정의무교육
<table>
<tr><th>교육</th><th>근거 법령</th><th>대상</th><th>주기</th><th>세부사항</th></tr>
<tr><td>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td><td>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td><td>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td><td>연 1회</td><td>-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td></tr>
<tr><td>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td><td>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td><td>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td><td>연 1회</td><td>-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td></tr>
</table></td><td>평가항목의 이해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 강사 등

○ 법정의무교육
<table>
<tr><th>교육</th><th>근거 법령</th><th>대상</th><th>주기</th><th>세부사항</th></tr>
<tr><td>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td><td>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td><td>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td><td>연 1회</td><td>-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td></tr>
<tr><td>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td><td>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td><td>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td><td>연 1회</td><td>-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td></tr>
</table></td></tr>
</table>

소분류	2022년					2023년 변경사항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위생 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조리사 및 영양사	2년에 1회	-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위생 교육	식품 위생법 제56조	조리사 및 영양사	2년에 1회	-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소방 안전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산후조리업자 및 관리급 종사자	2년에 1회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소방 안전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산후조리업자 및 관리급 종사자**	**2년에 1회**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종사자	매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산후조리원 대상 포함)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실내공기 질관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산후조리업자 또는 관리책임자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실내공기 질관리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산후조리업자 또는 관리책임자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 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규 직원	신규 입사 시	신규채용 시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신규자 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규 직원	신규 입사 시	신규채용 시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신규자 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담당자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담당자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함
	○ 신규직원 교육 - 교육개요: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간호사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후 1주 이내 실시 -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조직 및 운영목표, 시설현황, 업무내용 및 업무절차					**○ 신규직원 교육** **- 교육개요: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간호사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후 1주 이내 실시** **-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조직 및 운영목표, 시설현황, 업무내용 및 업무절차** **○ 기타 직무교육** **-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낙상예방 교육, 모유수유 교육, **서비스 질 개선 교육 등** **3)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 기타 직무교육
-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서비스 질 개선 교육 등

3)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4)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교육을 시행(지원)한다.

5) 신규직원 채용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6) 산후조리원별 방침에 따라 기타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td><td>※ 산후조리업자 또는 관리급종사자
- 근거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대상: 산후조리업자 및 관리급 종사자
- 주기: 2년에 1회
- 세부사항: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td></tr>
<tr><td></td><td>평가방법
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연간 교육계획에 필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계획에는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td><td>-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td><td>-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td></tr>
</table>
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필수교육(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음</td></tr>
</table></td><td>평가방법
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연간 교육계획에 필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td><td>-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td><td>-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td></tr>
</table>
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필수교육(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
· 위에 제시된 3개 기준 모두 충족(교육이수 수료증 확인)</td><td>- ‘유’ 기준 1개 이상 미충족</td></tr>
</table></td></tr>
</table>

소분류	2022년	2023년 변경사항
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평가항목의 이해** 1)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 - 시행시기 및 예산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계획 등 ○ 전기·가스 설비 감시 및 관리 -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등 ○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 및 관리 - 급수설비 위생 점검 - 저수조 청결상태 점검, 수질검사 - 하수도 관리 - 정수기 관리 등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참조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임 2)~5)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항목의 이해** 1)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전기·가스 설비 감시 및 관리 -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등 ○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 및 관리 - 급수설비 위생 점검 - 저수조 청결상태 점검, 수질검사**(단독 건물인 경우)** - 하수도 관리 - 정수기 관리 등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2조** 참조)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임 2)~5)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 판정기준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 판정기준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야 하고 관리 계획서 구비)</td><td>-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리 계획 없음)</td></tr></table></td><td>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야함.)</td><td>-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되어 있지 않음.)</td></tr></table></td></tr>
<tr><td>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td><td>평가항목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tr><td>1</td><td>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필수</td><td>□상 □중 □하</td></tr><tr><td>2</td><td>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td><td>DR/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tr><td>3</td><td>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td><td>DR/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tr><td>4</td><td>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td><td>IT</td><td>P</td><td>정규</td><td>□유 □무</td></tr></table></td><td>평가항목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tr><td>1</td><td>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td><td>DR</td><td>S</td><td>필수</td><td>□상 □중 □하</td></tr><tr><td>2</td><td>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td><td>DR/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tr><td>3</td><td>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td><td>DR/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tr><td>4</td><td>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td><td>IT</td><td>P</td><td>정규</td><td>□유 □무</td></tr></table></td></tr>
<tr><td></td><td>평가방법
○ 판정기준
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필수</td><td>- 소방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함</td><td>-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td></tr></table>
3) 소방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td><td>평가방법
○ 판정기준
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필수</td><td>- 소방안전을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함</td><td>- 규정(또는 계획서)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또는 계획서)이 없음</td></tr></table>
3) 소방 교육 및 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td><td>-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td><td>-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 교육 실시하지 않음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최소 연 1회 이상 종사자 대상 소방훈련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td><td>- 최소 연 1회 이상 종사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은 실시하지만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td><td>-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td></tr>
</table>
</td></tr>
<tr><td>4.3 시설 안전성: 낙상예방관리</td><td>
평가방법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예방교육, 점검서류 등)</td><td>-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예방교육, 점검서류 등)</td><td>- 미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없음</td></tr>
</table>
</td><td>
평가방법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 낙상예방 활동에 대해 직원숙지 80% 이상
- 제시된 기준 중 3개 모두 충족</td><td>-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해 직원숙지 60% 이상
- 제시된 기준 중 2개이상 충족</td><td>- 미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없음</td></tr>
</table>
</td></tr>
</table>

Ⅲ. 운영 및 고객관리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td><td>
평가항목의 이해
1) 입·퇴실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 입·퇴실 수속 절차(방법), 입·퇴실 지연 시 관리방법 등
○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 입실생활 안내, 요금체계, 서비스 내용 등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td><td>
평가항목의 이해
1) 입·퇴실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 입·퇴실 수속 절차(방법), 입·퇴실 지연 시 관리방법 등
○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 입실생활 안내, 요금체계, 서비스 내용 등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 계획
- 감염예방 관리 계획
-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
- 낙상 예방 계획
○ 퇴실 시 산모 교육: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td><td>-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 계획
- 감염예방 관리 계획
-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
- 낙상 예방 계획
○ 퇴실 시 산모 교육: 아기돌보기, 진료가 필요한 아기 이상 증상, 신생아 안전점검 등에 관한 퇴실 교육을 시행한다.</td></tr>
<tr><td></td><td>평가방법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td></tr>
</table></td><td>평가방법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퇴실시 신생아 확인절차를 준수함(확인 불가시 면담으로 확인) 100%</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퇴실시 신생아 확인 절차 준수함.</td><td>- 입·퇴실 수속절차(신생아 확인절차 포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td></tr>
</table></td></tr>
<tr><td>5.2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td><td>평가방법
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 (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 (보고방법, 보고사항)
-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td><td>-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숙지 6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td><td>-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td></tr>
</table></td><td>평가방법
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확인 건수: 최근 3건)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 (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 (보고방법, 보고사항)</td><td>○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 (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 (보고방법, 보고사항)</td><td>○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 (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 (보고방법, 보고사항)</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td><td>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근거서류 확인)</td><td>보건소장에게 보고됨</td><td>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시기가 지연됨</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td><td>-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근거서류 확인)
-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감염 확산 보고서를 작성함</td><td>-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근거서류 확인)
-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감염 확산 보고서를 작성함</td><td>-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td></tr>
</table>
</td></tr>
<tr><td>5.3 운영관리: 문서관리</td><td>
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정규</td><td>□상 □중 □하</td></tr>
<tr><td>2</td><td>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td><td>DR</td><td>P</td><td>정규</td><td>□상 □중 □하</td></tr>
<tr><td>3</td><td>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상 □중 □하</td></tr>
</table>
</td><td>
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정규</td><td>□상 □중 □하</td></tr>
<tr><td>2</td><td>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td><td>DR</td><td>P</td><td>정규</td><td>□상 □중 □하</td></tr>
</table>
</td></tr>
<tr><td>5.4 운영관리: 방문객관리</td><td>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확인(포스터 부착 등)
</td><td>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확인
</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3)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 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손 위생 홍보활동(근거자료 확인)
- 평가일에 방문객 손 위생 수행 관찰(최소 5인): 100%실시</td><td>- 감염관리 활동 중 2개 수행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이상</td><td>- 감염관리 활동 중 1개 이하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미만</td></tr>
</table></td><td>3)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 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평가일에 방문객 손 위생 수행 관찰(최소 5인): 100% 실시</td><td>- 감염관리활동 중 1개 수행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 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이상
- 제시된 2개 항목 중 1개 해당</td><td>- 감염관리 활동 중 1개 이하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미만</td></tr>
</table></td></tr>
<tr><td>5.5 운영관리: 운영 철학</td><td>
[7.1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문화]

기준 7.1

리더십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의 개선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장의 리더십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td><td>IT</td><td>S</td><td>시범</td><td>□유 □무</td></tr>
<tr><td>2</td><td>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td><td>IT</td><td>P</td><td>시범</td><td>□유 □무</td></tr>
<tr><td>3</td><td>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td><td>DR/IT</td><td>O</td><td>시범</td><td>□유 □무</td></tr>
</table></td><td>
[5.5 운영관리: 운영 철학]

기준 5.5

산후조리업자 또는 원장은 산후조리원 운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업자 또는 원장은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감염 및 안전을 위한 운영 관리 및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다.</td><td>IT</td><td>S</td><td>시범</td><td>□상 □중 □하</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
<td></td>
<td>

평가항목의 이해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

○ 모자동실

○ 신생아 및 방문객 감염 관리

2) 직원과의 의사소통

○ 직원과 원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여부 확인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회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원장 인터뷰(모자동실, 신생아감염관리에 대한 질의)
- 직원 인터뷰

○ 판정기준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원장 인터뷰)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시범</td><td>-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있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음</td><td>-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없음
(모자동실을 시행하지 않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음</td></tr>
</table>

</td>
<td>

평가항목의 이해

1)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의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경영철학

○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개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 직원 인터뷰(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 판정기준

1)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의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운영철학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 직원 인터뷰)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시범</td><td>-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음(3개 모두 해당)</td><td>-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음(2개 이상)</td><td>- 모자동실, 감염 및 안전, 직원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음(1개 이하)</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2) 직원과의 의사소통(직원 면담)
<table><tr><th>구분</th><th>유</th><th>무</th></tr><tr><td>시범</td><td>-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있음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고 있음(처리결과 근거서류 확인)</td><td>-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없음을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함</td></tr></table>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원장 인터뷰)
<table><tr><th>구분</th><th>유</th><th>무</th></tr><tr><td>시범</td><td>-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근거서류 확인)</td><td>-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음</td></tr></table></td><td></td></tr>
<tr><td>6.1 고객관리</td><td>[6.1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기준 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질 관리 활동과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산모, 방문객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평가항목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tr><td>1</td><td>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td><td>DR</td><td>S</td><td>시범</td><td>□상 □중 □하</td></tr><tr><td>2</td><td>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td><td>DR</td><td>P</td><td>시범</td><td>□상 □중 □하</td></tr><tr><td>3</td><td>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td><td>DR</td><td>O</td><td>정규</td><td>□상 □중 □하</td></tr></table></td><td>[6.1 고객관리]
기준 6.1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불만 및 고충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고객관리 활동과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산모, 방문객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평가항목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tr><td>1</td><td>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td><td>DR</td><td>P</td><td>정규</td><td>□상 □중 □하</td></tr><tr><td>2</td><td>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td><td>DR</td><td>P</td><td>정규</td><td>□유 □무</td></tr><tr><td>3</td><td>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td><td>DR</td><td>P</td><td>정규</td><td>□유 □무</td></tr></table></td></tr>
</table>

소분류	2022년	2023년 변경사항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정규	□유 □무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제별 질 관리 활동 계획

- 핵심지표 선정
  - 모자동실시간, 모유수유율, 손 위생 수행률, 감염발생양상, 안전사고발생 양상 등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선활동 관리

○ 만족도 조사 계획

- 대상, 횟수(연 1회 이상), 시기, 조사 형식(설문지) 등
- 조사결과 관리(조사결과 분석, 개선활동,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등)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2) 산후조리원에서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 성과를 관리한다.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4)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5)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을 절차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

평가항목의 이해

1) 만족도 평가 및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만족도 조사

- 조사방법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활동

○ 불만 및 고충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방법, 처리 및 피드백 등)

2)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4)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을 절차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판정기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한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시범</td><td>-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질 관리는 최소 1개 이상 실시</td><td>-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질 관리, 만족도 평가 계획이 없음</td></tr>
</table>
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시범</td><td>○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이상)의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핵심지표〉
- 모자동실시간
- 신생아실 이용시간
- 모유수유율
- 감염발생 양상
- 안전사고발생 양상</td><td>○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모니터링은 시행했으나 개선활동을 수행하지 않음</td><td>- 계획은 있으나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질 관리 활동 계획이 없음</td></tr>
</table>
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모두 충족</td><td>- ‘상’의 기준 중 2개 충족함</td><td>- ‘상’의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td></tr>
</table>
</td><td>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판정기준
1)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 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모두 충족</td><td>- ‘상’의 기준 중 2개 충족함</td><td>- ‘상’의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td></tr>
</table>
2)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고충처리함, 안내문 등)</td><td>- 안내 없음</td></tr>
</table>
3)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관련 서류 있음</td><td>- 피드백 관련 서류 없음</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4)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고충처리함, 안내문 등)</td><td>- 안내 없음</td></tr>
</table>
5)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관련 서류 있음</td><td>- 피드백 관련 서류 없음</td></tr>
</table></td><td></td></tr>
</table>

Ⅳ. 감염예방관리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8.1 감염예방: 손 위생</td><td>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2</td><td>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3</td><td>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4</td><td>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5</td><td>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able>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손 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td><td>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2</td><td>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3</td><td>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4</td><td>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5</td><td>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able>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손 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산모)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3) 산모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 최소 3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필수</td><td>-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td><td>-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 80% 미만</td><td>-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td></tr></table></td><td>-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 손 위생 교육 여부 확인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3) 산모 손 위생 교육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필수</td><td>-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5명 확인)
- 산모가 손 위생 시점 숙지 80% 충족(3명에게 질문)</td><td>-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60%이상 80% 미만(5명 확인)</td><td>-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의 비율이 60% 미만(5명 확인)</td></tr></table></td></tr>
<tr><td>8.2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용</td><td>평가방법
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75%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75%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50%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50%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50%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50% 미만</td></tr></table>※ 직원 3명의 평균으로 충족률 산출</td><td>평가방법
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80%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미만</td></tr></table>※ 직원 3명의 평균으로 충족률 산출</td></tr>
<tr><td>8.6 감염예방: 급식관리</td><td>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td><td>-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td><td>-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td></tr></table></td><td>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작업 관리하고 있음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td><td>-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td><td>-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td><td>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 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에, 물기 없어야 함)</td><td>-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td><td>-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td></tr>
</table></td><td>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 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에, 물기 없어야 함)
- 모든 식재료는 밀봉을 하거나 뚜껑을 덮어 보관함</td><td>-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td><td>-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td></tr>
</table></td></tr>
<tr><td>8.7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td><td>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2</td><td>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td><td>DR/IT</td><td>P</td><td>필수</td><td>□유 □무</td></tr>
<tr><td>3</td><td>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td><td>IT</td><td>P</td><td>필수</td><td>□유 □무</td></tr>
</table>
평가방법
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해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100%)</td><td>-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한 직원의 숙지가 미흡함</td></tr>
</table></td><td>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r><td>2</td><td>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td><td>DR/IT</td><td>P</td><td>필수</td><td>□유 □무</td></tr>
<tr><td>3</td><td>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td><td>IT</td><td>P</td><td>필수</td><td>□상 □중 □하</td></tr>
</table>
평가방법
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100%</td><td>-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td><td>-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2022년</th><th>2023년 변경사항</th></tr>
<tr><td>13.1 신생아 확인</td><td>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식별방법
- 식별정보와 인식표 활용
• 식별정보: 이름,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출생일자 등
• 인식표: 팔찌, 발찌, 네임스티커 등
-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신생아 식별방법 적용
- 동명 2인의 산모가 재실하는 경우 구분을 위하여 (산모명) 아기, (성별), (출생일자), (출생시 몸무게) 순으로 이용하여 구분한다.
○ 신생아 식별이 필요한 시점
- 입·퇴실 시
- 신생아실 면회, 모자동실 이용, 수유 전, 목욕 시, 약품 투여 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등

</td><td>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식별방법
- 식별정보와 인식표 활용
• 식별정보: 이름**(부/모 이름)**, 성별, 출생일시 몸무게, 출생일자 등 **2가지 이상의 식별정보**
• 인식표: 팔찌, 발찌, 네임스티커 등
-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신생아 식별방법 적용
- 동명 2인의 산모가 재실하는 경우 구분을 위하여 (산모명) 아기, (성별), (출생일자), (출생시 몸무게) 순으로 이용하여 구분한다.
○ 신생아 식별이 필요한 시점
- 입·퇴실 시
- 신생아실 면회, 모자동실 이용, 수유 전, 목욕 시, 약품 투여 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등

</td></tr>
<tr><td>15.2 신생아관리: 신생아 수유</td><td>

평가방법

4) 수유준비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수유준비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음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가 있음
- 모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음
- 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임
-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함 (관찰 불가 시 직원 숙지 확인)
⇒ 5개 모두 충족</td><td>- 5개 중 3개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td><td>

평가방법

4) 수유준비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수유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목욕싱크나 신생아와 가림막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음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가 있음
- 모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음
- 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이고 70℃ 이상에서 조유 후 40℃로 식혀서 수유함
-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함 (관찰 불가 시 직원 숙지 확인)
⇒ 5개 모두 충족</td><td>- 5개 중 3개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td></tr>
</table>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